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연구

박진아·최효미·최윤경

연구보고 2020-17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연구

저 자 박진아, 최효미, 최윤경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17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연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67-8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과 수요는 함께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은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2013년 3~5세 누리과정이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도입된 시점 이후 정점을 찍었고 이후 영유아수 감소로 인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무상보육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실수요자의 12시간 이용 시간이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2016년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였고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체계 개편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2019년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본격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12년 무상보육 이후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제도 변화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어린이집 비용의 지원방식과 분담체계 개편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착되지 못하고 어린이집이 긴급 돌봄 위주로 돌아감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분석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비용지원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이용행태 변화와 요구 조사를 통해 현재 수준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비용을 추정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분담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앞으로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본 보고서를 읽고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내용	17
3. 연구방법	17
4. 연구의 범위	18
5. 선행연구	19
II.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현황	29
1. 중앙 정부 사업	31
2. 지방 정부 사업	43
3. 보육재정	60
4. 해외 보육 비용지원 정책	65
III. 재정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실태 분석	77
1.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	79
2. 어린이집 이용 행태 변화	84
3. 소결 및 시사점	103
IV.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정책 요구	105
1. 어린이집 이용 실태	107
2.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124
3. 보육의 질 요구 수준	140
4. 보육비용 대비 질적 수준 평가 및 보육료 부담 수준	150
V.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부담 체계 개선방안	161
1. 기본방향	163
2. 모형 및 비용 추정	165

3.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 개편	169
4. 어린이집 비용 부담 체계 개편	171
참고문헌	173
Abstract	179
부록	181
어린이집 비용지원에 관한 부모 의견 조사표	181



표 목차

〈표 Ⅰ-3-1〉 부모 요구 조사 완료 표본	18
〈표 Ⅰ-4-1〉 국가 표준 보육 시간(안)	21
〈표 Ⅰ-4-2〉 교사 근로 시간(안)	22
〈표 Ⅰ-4-3〉 보육 시설 운영 시간(안)	22
〈표 Ⅰ-4-4〉 자격 기준의 정의 및 유형(안)	23
〈표 Ⅰ-4-5〉 인센티브의 정의 및 유형(안)	23
〈표 Ⅰ-4-6〉 본인 부담의 정의 및 유형(안)	24
〈표 Ⅱ-1-1〉 어린이집 비용지원 체계	32
〈표 Ⅱ-1-2〉 기관보육료(2019~2020)	33
〈표 Ⅱ-1-3〉 연장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2020년 3월 1일 이후)	34
〈표 Ⅱ-1-4〉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2019~2020)	35
〈표 Ⅱ-1-5〉 돌봄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 금액(2020년 기준)	36
〈표 Ⅱ-1-6〉 가정양육수당 연령별 지원 금액 현황(2013~2019년)	38
〈표 Ⅱ-1-7〉 인건비 지원 기준 (2020년)	38
〈표 Ⅱ-1-8〉 특수한 보육 상황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 (2020년 기준)	40
〈표 Ⅱ-1-9〉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2020년 기준)	41
〈표 Ⅱ-1-10〉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2020년 기준)	42
〈표 Ⅱ-1-11〉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2020년 기준)	43
〈표 Ⅱ-2-1〉 시·도 보육료 상한액: 2020	44
〈표 Ⅱ-2-2〉 시·도 부모보육료 지원 개요	45
〈표 Ⅱ-2-3〉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차액 지원 현황	45
〈표 Ⅱ-2-4〉 2020년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47
〈표 Ⅱ-2-5〉 기타 필요경비 지원	49
〈표 Ⅱ-2-6〉 시·도 보육교직원 수당 개요	50
〈표 Ⅱ-2-7〉 보육교직원 월정액 수당 지원 현황	51
〈표 Ⅱ-2-8〉 간헐적 수당	55
〈표 Ⅱ-2-9〉 기타 인력 지원	56
〈표 Ⅱ-2-10〉 급식관련 인력 지원	56
〈표 Ⅱ-2-11〉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58
〈표 Ⅱ-2-12〉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58

〈표 II-3-1〉 연도별 유아교육·보육 예산	60
〈표 II-3-2〉 중앙 정부 보육사업 예산 추이	61
〈표 II-3-3〉 중앙 정부 보육사업별 비중	62
〈표 II-3-4〉 보건복지부 사업 부문 국고보조사업 매칭 지방비	63
〈표 II-3-5〉 지방 정부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규모	64
〈표 II-3-6〉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65
〈표 II-4-1〉 3세 미만 아동의 월평균 비용 및 규제	67
〈표 II-4-2〉 ECEC 무료 전환 시기와 주당 보장 시간	68
〈표 II-4-3〉 OECD 회원국의 평균 임금에서 보육료 순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2018년)	69
〈표 II-4-4〉 스웨덴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보육·교육 지원	71
〈표 II-4-5〉 2020년 스웨덴 preschool 및 pedagogical care 이용 시 부모부담액 ...	72
〈표 II-4-6〉 핀란드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보육·교육 지원	73
〈표 II-4-7〉 2020년 핀란드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종일제 이용 시 부모 부담액 산출방식: 최연소 자녀 기준	74
〈표 II-4-8〉 노르웨이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보육·교육 지원	75
〈표 III-1-1〉 연도별 어린이집 공급 현황	79
〈표 III-1-2〉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81
〈표 III-1-3〉 연도별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률	83
〈표 III-1-4〉 연도별 어린이집 연령별 이용률	84
〈표 III-2-1〉 어린이집 영유아 등원 시각	84
〈표 III-2-2〉 어린이집 영유아 하원 시각	85
〈표 III-2-3〉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변화	86
〈표 III-2-4〉 아동 연령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균	87
〈표 III-2-5〉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변화	89
〈표 III-2-6〉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평균	90
〈표 III-2-7〉 어린이집 이용 이유	92
〈표 III-2-8〉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93
〈표 III-2-9〉 어린이집 개선사항	94
〈표 III-2-10〉 2018년 어린이집 개선사항	94
〈표 III-2-11〉 어린이집 유형 및 모취업 여부별 월평균 보육비용	96
〈표 III-2-12〉 영유아 연령별 월평균 보육비용	98
〈표 III-2-13〉 보육연령별 월평균 추가비용	99

〈표 Ⅲ-2-14〉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 정도	100
〈표 Ⅲ-2-15〉 비용 미지원 시 어린이집 이용 의사	101
〈표 Ⅲ-2-16〉 질 높은 기관 이용을 위한 비용 추가 의사 및 가능한 부담 비용 ...	102
〈표 Ⅳ-1-1〉 이용중인 어린이집 유형	107
〈표 Ⅳ-1-2〉 연장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여부	108
〈표 Ⅳ-1-3〉 어린이집 등원시각	109
〈표 Ⅳ-1-4〉 어린이집 하원시각	110
〈표 Ⅳ-1-5〉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111
〈표 Ⅳ-1-6〉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	112
〈표 Ⅳ-1-7〉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지만 현재만큼 이용하는 이유 ...	113
〈표 Ⅳ-1-8〉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지만 현재만큼 이용하는 이유 ...	114
〈표 Ⅳ-1-9〉 어린이집 평균 희망 이용시간	115
〈표 Ⅳ-1-10〉 어린이집 이용 비용	116
〈표 Ⅳ-1-11〉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실태	117
〈표 Ⅳ-1-1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	117
〈표 Ⅳ-1-13〉 가구소득 대비 어린이집 비용 부담 정도	118
〈표 Ⅳ-1-14〉 어린이집 이용 전반적 만족도	119
〈표 Ⅳ-1-15〉 어린이집 개선 사항(1+2순위)	120
〈표 Ⅳ-1-16〉 개인대리양육 이용 여부	121
〈표 Ⅳ-1-17〉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제공자	122
〈표 Ⅳ-1-18〉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이용 시간대	123
〈표 Ⅳ-1-19〉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 및 월평균 이용비용 ...	123
〈표 Ⅳ-1-20〉 어린이집과 개인대리양육 동시 이용 이유	124
〈표 Ⅳ-2-1〉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인지 여부	125
〈표 Ⅳ-2-2〉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조건 인지 여부	126
〈표 Ⅳ-2-3〉 연장보육에 해당하는 자격여부	127
〈표 Ⅳ-2-4〉 자격이 있음에도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27
〈표 Ⅳ-2-5〉 어린이집 이용시간 충분 정도	128
〈표 Ⅳ-2-6〉 기본보육 이용시간 초과 실태	129
〈표 Ⅳ-2-7〉 기본보육시간의 변화에 대한 생각	130
〈표 Ⅳ-2-8〉 기본보육시간 변화에 찬성하는 이유	131
〈표 Ⅳ-2-9〉 기본보육시간 변화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132
〈표 Ⅳ-2-10〉 연장보육 자격의 적절성	133

〈표 V-2-11〉 연장보육을 지원하는 시간당 지원 보육료의 적절성	134
〈표 V-2-12〉 심과 놀이 중심의 연장보육활동의 적절성	135
〈표 V-2-13〉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영향	136
〈표 V-2-14〉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겹쳐지는 것에 대한 타당성	137
〈표 V-2-15〉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겹쳐질 시 적당한 시간	138
〈표 V-2-16〉 기본보육시간 도입 후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변화 정도	139
〈표 V-3-1〉 어린이집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1+2순위)	141
〈표 V-3-2〉 어린이집 운영시간 고려사항	141
〈표 V-3-3〉 어린이집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	143
〈표 V-3-4〉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	143
〈표 V-3-5〉 어린이집 비용 고려사항	145
〈표 V-3-6〉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	146
〈표 V-3-7〉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147
〈표 V-3-8〉 담임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148
〈표 V-3-9〉 교사 대 아동 수에 대한 적절성 평가	148
〈표 V-3-10〉 교사 대 아동 수 감소를 위한 추가비용 부담 의사	150
〈표 V-4-1〉 정부 보육비용지원 대비 질적 수준 평가	151
〈표 V-4-2〉 차등조건 없는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	151
〈표 V-4-3〉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부담 의향 및 부담 수준	152
〈표 V-4-4〉 가장 적절한 보육료 부담 기준	154
〈표 V-4-5〉 무상지원되는 기본보육시간의 적절성	155
〈표 V-4-6〉 무상지원되는 기본보육의 하루 평균 적절한 시간	156
〈표 V-4-7〉 연장보육 이용금액 자부담 전환 시 이용 여부 및 부담 의향 평균 비용	156
〈표 V-4-8〉 기본보육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할 때의 이용 여부와 평균 희망 이용 시간	158
〈표 V-2-1〉 2020년 인건비 기준 8시간 표준보육비용	165
〈표 V-2-2〉 2020년 인건비 기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12시간 표준보육비용	166
〈표 V-2-3〉 2020년 인건비 기준 교사대 아동비를 조정한 8시간 표준보육비용	167
〈표 V-2-4〉 2020년 인건비 기준 담임교사 2인 배치한 12시간 표준보육비용	169



그림 목차

[그림 II-1-1]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2
[그림 II-1-2]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2020년)	40
[그림 II-4-1] 영아 부모에게 제공되는 ECEC 비용지원 방식	66
[그림 II-4-2] 유아 부모에게 제공되는 ECEC 비용지원 방식	66
[그림 III-1-1] 연도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비중	80
[그림 III-1-2] 연도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이용자 비중	82
[그림 III-2-1] 모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희망이용시간(2018년)	91
[그림 IV-1-1] 어린이집 불만족 이유(1+2순위)	120
[그림 IV-2-1] 질 높은 연장보육을 위한 시간당 지원 단가	135
[그림 IV-2-2]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 대비 어린이집 만족 수준	140
[그림 IV-3-1] 어린이집 운영시간 고려사항	142
[그림 IV-3-2] 어린이집 비용 고려사항	144
[그림 IV-3-3]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적정 교사 대 아동 수	149
[그림 IV-4-1] 보육료 부담 의향이 있는 이유	153
[그림 V-2-1]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시간	168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2년 0~2세 무상보육 실시와 2013년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의 전면적이 무상보육 정책 도입됨.
 - 무상보육 도입으로 어린이집 실수요자의 12시간 이용 시간이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2016년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였고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체계 개편을 다각도로 모색함.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와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한 보육지원체계 개선을 정책과제로 제안함(보건복지부, 2017).
 - 또한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고려하여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획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2. 27).
- 무상보육 도입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년 도입함.
 -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나 휴계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7. 3).
-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이 휴계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계시간 보장이 의무화 됨.
 - 정부에서는 보육교사의 휴계시간을 확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조교사를 확대하였고 2020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19).

-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일련의 정책 변화로 인해 어린이집에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12년 무상 보육 이후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제도 변화에 따라 추가 소요 되는 어린이집 비용의 지원방식과 분담체계 개편을 제안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어린이집 비용지원정책 현황을 검토함.
- 주요 국가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사례를 검토함.
- 어린이집 이용 부모 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비용지원방식이 이용시간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과 보육비용 분담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통계자료 분석 및 시뮬레이션
- 전문가 자문회의
-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

라.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그동안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적정수준의 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비용의 분담체계를 연구하고자함.
 - 일반적으로 분담체계라는 용어를 재정 측면에서 해석하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분담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집 비용지원을 함에 있어 비용의 분담을 국가와 사회, 이용자 간에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함.

2. 재정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실태 분석

가.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

- 어린이집은 2000년 1만 9,276개소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전면적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3년 4만 4,770개소로 최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임.
 - 2019년 기준 어린이집은 3만 7,371개소였다. 지난 20년 동안 어린이집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원인은 가정 어린이집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게 나타남.
 - 전체 어린이집 중 민간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6.5%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33.6%에 이름.
 -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5% 전후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재정 투자가 집중되면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9년 기준 11.6%까지 증가함.
- 어린이집 이용자 수는 2000년 68 만6,000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4년도에 149만 6,671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9년 기준 136만 5,085명임.
 -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자 수는 2019년 기준 민간 어린이집이 66만 4,106명으로 가장 많으며, 가정 어린이집(27만 3,399명), 국공립 어린이집(23만 2,123명) 순
 -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자 비중은 민간 어린이집이 50% 전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2년도 가장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후 감소세를 보이는데 반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자 비중은 2000년 이후 살짝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함.

나. 어린이집 이용 행태 변화

- 어린이집 이용시간
 -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균은 매해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7시간~8시간 사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04년에는 이용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 사이 고르게 분포하는데 반해, 2018년 7시간을 전후한 시간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6~9시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04년 46.6%였으나 2018년에는 전체의 78.2%에 달하는 한편, 2015년은 8시간 이상 이용자 비중 22.9%로 직전 조사인 2012년 결과(31.0%)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6~7시간 이용자 비중이 36.0%로 크게 증가함.
- 이는 맞춤형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외벌이 가구의 영아 자녀 중심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추측됨.

□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0세는 2012년도 7시간 57분에서 2015년 8시간 30분, 2018년 9시간 3분으로 지속적으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1세는 2012년에 8시간 11분에서 2015년 8시간 18분, 2018년 8시간 26분으로 약간 길어지기는 하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2세는 2012년도 8시간 11분에서 소폭 감소하여 2015년에는 7시간 54분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8시간 21분으로 1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3세의 경우 2012년 8시간 29분, 2015년 8시간 30분, 2018년 8시간 27분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4세는 2012년 8시간 54분, 2015년 8시간 18분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8년 8시간 52분으로 2012년 수준을 보임.
- 마지막으로 5세는 2012년도 8시간 22분, 2015년 8시간 42분, 8시간 45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어린이집 이용 이유와 만족도

- 어린이집 이용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04년 부모 대리보호가 40.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이 29.0%, 전인적 발달이 24.7%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유가 53.7%로 나타남.
- 2009년에는 부모의 대리보호와 사회성 발달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의 대리보호는 2004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반면, 발달에 대한 요구는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인적 발달과 함께 고려하였을 경우 아동 발달에 대한 수요가 5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2012년, 2015년, 2018년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에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요구가 2012년

54.8%, 2015년 60.5%, 2018년 55.0%로 나타나 가장 주요한 이유가 아동의 전인적 및 사회성 발달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모의 취업여부나 가구 특성과 무관하게 영유아기 어린이집이 증가한 것과 연관된 현상으로 풀이됨. 즉, 2004년의 경우 모의 취업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이 많았다면, 전면적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2년 이후 외벌이 가구의 아동들도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요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어린이집 항목별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4년 교사가 7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이 73.5점으로 다음 순위로 나타난 반면 부모참여가 66.8점, 부모교육 및 상담이 66점으로 하위의 만족도를 보임.
- 이후로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 연도 내에서 항목별 만족도의 순서가 크게 변동되지는 않고, 교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 내용 등이 매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2004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로는 교사, 안전관리,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 투자의 증가가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내포된 결과로 보여짐.

□ 어린이집 개선사항 요구는 다음과 같음.

- 2004년과 2009년에는 비용에 개선요구가 각 13.9%, 21.5%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과 2015년에는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에 대한 개선요구가 각 15.2%, 1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과 2015년에는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다음으로는 주변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즉, 2012년 이후 비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개선 요구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2012년을 전후한 전면적 무상보육의 실시에 따른 변화로 여겨짐.
- 단, 2012년 이후 비용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비용에 대한 개선요구는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주변환경 다음 순위를 보이는 항목으로 여전히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가 높은 항목임.

3.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정책 요구

가. 어린이집 이용 실태

□ 어린이집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조사 참여자는 1,513명으로 민간 41.2%, 국공립 25.9%, 가정 20.0%, 직장 5.7%, 사회복지법인 4.3%, 법인단체 2.7%, 부모협동 0.2% 이용하며, 49.6%는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시간연장형 2.4%, 둘 다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48.8%였음.
- 등원시간은 9시01분~9시30분이 32.1%, 8시31분~9시 24.1%순 이었으며, 하원시간은 15시01분~16분이 32.7%, 16시01분~16시30분이 14.7%, 16시 31분~17시가 14.7% 순으로 나타남. 평균 이용시간은 7.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63.1%가 이용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희망 이용시간은 8.2시간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 비용 지출 및 부담 정도는 다음과 같음.

- 총 비용은 89,934원, 추가보육료는 14,789원, 필요경비 26,108원, 시간연장비용은 13,020원, 특별활동 45,653원으로 나타남. 이용 비용 부담 여부는 평균 2.6점으로 평균적으로 보통에서 별로 부담 안된다는 정도의 응답
- 특별활동 이용 평균 과목 수는 3.7개로 체육활동, 미술/음악, 영어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다음과 같음.

- 3.2점 정도의 만족도를 보임. 불만족 이유는 특별활동의 비다양성, 실내외 환경의 열악함, 교사 불만족, 보육프로그램 불만족 순으로 나타남. 개선사항으로는 보육프로그램 다양화, 교직원 역량 강화, 내부환경개선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에 개인대리양육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음.

- 개인대리양육은 14.3%만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 제공자는 조부모 돌봄 75.6%, 여가부 아이돌보미 16.1%, 민간육아돌보미 12.9% 순으로 나타남.
- 이용 시간은 하원 후 퇴근 전이 48.6%, 출근 후 등원 전이 31.4% 순으로 나타남. 제공자에 따른 이용시간 및 비용은 조부모 14시간, 484,390원, 민간육아돌보미 12.4시간, 617,321원, 여가부 아이돌보미 6.7시간, 209,543원 순으로 나타남.

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 보육지원체계개편 제도 인지 및 이용은 다음과 같음.

- 68.6%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36.6%가 자격조건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1.0%가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함.
- 개편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 충분 여부에 대해서 84.1%가 이용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함. 25.2%는 보육료 지원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으며, 25.2%는 월 1회 이하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80.4%의 응답자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찬성하며, 근거로는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장시간 보육 감소로 서비스 질 제고, 16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 크지 않음 순으로 나타남. 반대 사유로는 돌봄 공백 발생 우려, 연장보육에 남는 아이가 적어져서 아이가 싫어할까봐 순으로 나타남.

□ 연장보육 자격 및 비용의 적절성

- 연장보육 자격의 적절성에 대해 모든 자격 조건에서 60%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임금근로자 97.7%, 장애부모 96.5%, 입원·간병 96.5% 등 전반적으로 연장보육 자격 조건에 대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직급여수급자와 구직등록자 다른 자격조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응답자의 68.6%가 연장보육 시간당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적정 금액으로 평균 0세반과 장애아반은 시간당 5,584원, 영아반 4,634원, 유아반 3,831원 정도로 나타남.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이용시간 및 만족도 변화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이용시간이 단축된 경우가 14.4%, 연장되었다는 경우가 15.5%, 변화없는 경우가 70.1%로 나타남.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1시간 겹쳐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58.3%는 타당하다고 응답함.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평균 29.9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함.
- 개편 이후 질적 수준 변화에 대해 79.1%가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편 이후의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8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보육의 질 요구 수준

- 어린이집 선택 시 보육의 질 55.5%, 접근성 48.9%, 인지도 32.2% 순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시간을 고려할 때, 연장보육 이용 가능 여부(59.9%), 등원시간(24.7%), 시간연장 이용 가능 여부(14.2%) 순으로 나타났음. 접근성 판단 시, 집과의 거리(89.5%), 차량운행 여부(8.0%) 순으로 나타남. 보육프로그램 판단 시, 체계성, 특별활동 프로그램, 교재교구 다양성, 차별성 순으로 나타남. 비용적 측면에서는 특별활동비 부담 수준(53.8%), 부모 부담 보육료(35.6%), 부대비용(6.8%) 순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의 질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는 건강·안전 27.4%, 실내외 환경 19.0%, 교사 자격 18.1%, 원장 자질, 18.0% 순으로 나타남.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자격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보육프로그램 충실화, 안전 강화 순으로 나타남.
 - 건강과 안전이 보육의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려사항이나 질적 향상에서는 낮은 요구를 보여 어느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교사 자격개선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질 개선 요구는 보육의 질적 판단의 측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담임교사가 갖춰야 하는 역량으로는 75%가 아동과 상호작용, 18.1% 온정성과 인내심 순으로 응답함.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절성은 0세는 과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3세와 4세는 60% 이상이 많다고 응답함. 적정 교사 대 아동은 0세반은 2.4명, 1세반은 3.4명, 2세반은 4.8명, 3세반 7.3명, 4~5세반 10.1명으로 전연령에서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라. 보육비용 대비 질적 수준 평가 및 보육료 부담 수준

-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비교하여 보육서비스와 환경의 질적 수준이 적절한지 세부항목에 따라 적절성을 평가함. 8개 세부항목에서 보육비용 대비 적절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남. 교사 수, 어린이집 보조인력 수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음.
- 차등조건 없는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0~2세와 3~5세 각각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81.9%, 85.7% 수준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제고를 위한 추가 부담 의향을 물어본 결과 61.2%가 부담 의사를 보였고, 월 최고 7만 8천원 수준으로 나타남.

- 보육료 부담 기준으로는 이용시간에 따른 부담이 63.3%로 나타남. 또한, 무상 지원시간 7시간의 적절성에 대해서 69.3%이 적절하다, 26%가 짧다고 응답함. 적절하지 않은 경우 평균 8.2시간이 적절하다고 나타남.
- 연장보육 이용 금액이 부모 자부담으로 전환되더라도 53.6%가 연장보육의 이용금액이 자부담으로 전환되더라도 연장보육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8만 6천원까지 부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무상 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고 자격 제한 없이 이용 시간만큼 부모가 부담한다면 56.4%는 무상 지원 시간만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39.0%가 비용부담하여 추가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며, 평균 1.7시간을 이용할 것으로 응답함.

4.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 체계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도입되었으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육시간의 구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함.
 -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그동안 12시간 운영시간 안에서 모호했던 이용시간의 구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함.
- 본 연구는 새로운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도입되는 첫해에 정책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과 이에 대한 분담 체계를 논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함.
 -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성과 측정이 어려운 시점으로 보육시간과 비용지원 등 현재의 체계 내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선행연구와 이용자 요구 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요

소를 고려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지원과 분담 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 모형 및 비용 추정

□ 비용지원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 단기적으로는 2020년 시작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방식이 유지된다고 가정
- 중장기적으로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요소로 교사를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변화시켰을 때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누리과정과 오후 방과 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유치원의 운영 체계를 반영하여 보육비용을 추정

□ 표준보육비용 산정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지원체계를 기준으로 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이후 중장기(안)에서 교사 배치 변화에 따른 비용 차이를 파악하고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원방식의 일부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중장기적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였을 때와 유치원과 같이 4~5시간의 누리과정 담당교사와 오후 방과 후 과정 교사를 배치하는 12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담임교사 2인을 배치하는 안을 고려함.

다.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 개편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은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던 방향에서 차등 없이 비용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용 자격 여부에 따른 비용지원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현재의 지원 방식에서 장시간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취업여부와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지원 방식을 다르게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라. 어린이집 비용 분담 체계 개편

- 중앙 정부의 보육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67%가량 분담하고 지방정부에서 33% 분담하는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3~5세 유아의 차액보육료 지원이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구조임.
- 비용지원 방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무상보육 시행 이후 수요자의 요구 변화를 살펴봤을 때, 비용지원 방식을 이용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이용하는 시간만큼 부모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함.
- 부모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현재 수준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보장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부에서는 지금의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기관 지원을 하고 부모에게는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 부담을 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보육지원체계에서의 8시간 기본보육시간을 확보해주고 이후 연장보육 이용은 자격 조건이 아닌 이용 시간으로 전환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설계함.
- 현재의 보육지원체계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용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연장반 담임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구조이나 안정적인 운영과 역량 있는 교사 수급을 위해 연장반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의 연장반 교사 인건비를 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는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분담을 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같은 방식의 보육과정 운영 체계로 개편하여 유아학비 지원 방식에 따른 분담 방식을 제안함.
- 유치원은 교육과정 시간은 누리과정 지원금 24만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7만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책정하는 원비에서 추가부담금을 부모가 부담함.
- 지원방식은 누리과정 지원금은 부모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나 방과후 과정 지원은 기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용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 지원에 따라 유치원 원비가 과도하게 인상되어 부모 부담금이 늘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를 시행중임.

- 따라서 유치원의 지원 방식을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간을 5시간으로 설정하여 추가 배치되는 교사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분담은 부모가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처럼 어린이집 비용 분담에 부모 자부담을 도입하고 비용지원의 기준을 이용시간에 따라 설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보편적 지원 체계 안에서 이용시간에 따른 부모 자부담 설계가 도입된다면 정부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도입하여야 할 것임.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의 범위
- 05 선행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0~2세 무상보육 실시와 2013년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확대되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의 전면적인 무상보육 정책이 도입되었다¹⁾. 무상보육 도입으로 어린이집 실수요자의 12시간 이용 시간이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2016년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였고²⁾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체계 개편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³⁾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와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또한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고려하여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획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2. 27). 이처럼 무상보육 도입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년 본격 도입하였다⁴⁾.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7. 3).

-
- 1) 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종합)(2012. 12. 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14722> (2020. 2. 28 인출)
 -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2016.04.2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014> (2020. 2. 28 인출)
 -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어린이집, 어떻게 바뀌었나(2020.06.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3447> (2020. 10. 30. 인출)
 - 4) 네이버 포스트, 보건복지부, 눈치보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2019.04.09.).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045707&memberNo=31572221&vType=VERTICAL> (2020. 2. 28 인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 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8년 7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중에 있다⁵⁾.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다⁶⁾.

2018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결과, 어린이집의 중간경력자인 보육교사의 1일 총 근무시간은 8시간 22분으로 2015년 대비 32분 감소하였으나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의 합은 평균 44분으로 법정 의무 휴게시간인 1시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박진아, 2019:2).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7:30~19:30까지 12시간을 의무로 하고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운영시간의 차이가 보육시간 내에서 아이들과 업무로부터 분리된 휴게시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최효마·조미라·예한나, 2018). 정부에서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조교사를 확대하였고 2020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19).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일련의 정책 변화로 인해 어린이집에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린이집의 인력 배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도 핵심적인 사항으로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도입과 함께 향후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이로 인한 투입 재정의 증가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소요되는 추가 재정의 분담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12년 무상보육 이후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제도 변화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어린이집 비용의 지원방식과 분담체계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5)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270> (2020. 2. 28 인출)

6) 뉴시핌, ‘특례업종 제외’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더 뽑는다(2018. 6. 2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21000226> (2020. 2. 28 인출)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어린이집 비용지원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어린이집의 비용지원 체계 및 지원 단가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 부모의 비용분담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주요 국가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사례를 검토하였다. 주요 국가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및 분담체계 방안 모색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이용 부모 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비용지원방식이 이용시간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넷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비용지원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섯째,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과 보육비용 분담체계의 개편방안을 도출한다.

3. 연구방법

상기한 연구내용의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별로 연구내용의 진행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연구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국가의 비용지원체계를 조사하고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비용지원체계 개편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통계자료 분석 및 시뮬레이션

통계자료는 2012-2015-2018 보육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석 기간의 정

부 정책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행태 및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설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여 비용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분담 정도를 제안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방법, 설문지 내용 검토를 위해 어린이집 현장 전문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체적인 연구결과 정리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라.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

영유아 부모 1,513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본보육시간의 적절성과 국가지원시간 조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 의사 등 국가지원 시간 설정에 따라 부모의 비용 부담 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표 I-3-1〉 부모 요구 조사 완료 표본

단위: 명

보육연령 기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조사 완료 표본	205	277	338	229	232	232	1,513

설문조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1,500명을 목표로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표본을 할당하고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소득수준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조정하여 진행하였고 최종 1,513명의 부모 대상 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적정수준의 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비용의 분담체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분담체계라는 용어를 재정 측면에서 해석하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분담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비용지원을 함에 있어 비용의 분담을 국가와 사회, 이용자 간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5.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비용지원체계 변화 과정에서의 연구와 보육의 질 관련 연구에 대해 정리하였다. 최근 20년 사이에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의 큰 변화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시작되는 2020년 시점에 어린이집 비용지원과 이에 대한 분담체계 개편 논의의 시작을 보육의 질 측면에서 제안하기 위해 보육의 질과 관련된 연구를 정리·요약하였다.

가. 어린이집 지원체계 개편 연구

우리나라 보육 정책에 있어서 수요자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5년까지 만 0~4세 시설 보육료 지원 기준은 법정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나, 2007년 차상위로 확대되었고, 2009년에는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2011년에는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신윤정·오신휘, 2017: 10). 이후 2012년부터는 전체 만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의 전계층 지원이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4).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보육지원체계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이 제시되었다(신윤정·오신휘, 2017: 10). 이로 인해서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도입되어 자격기준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형(6시간)으로 구분하게 되었다⁸⁾. 이러한 보육체계 개편의 흐름에 따라 실시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한국경제(2012. 7. 22). 만 0~2세 양육수당 모든 계층에 지급...보육료는 맞벌이 등 선별 지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2072244051> (2020. 6. 21. 인출)

8) 쿠키뉴스(2015. 12. 15).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맞춤반/종일반 운영.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333289> (2020. 6. 21. 인출)

김현숙(2006)은 2006년 영아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07년 유아에게 확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기본보조금의 성격과 한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에 제공되나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제공됨에 따라서 보조금의 형태가 특성상 수요자 및 공급자보조금의 형식을 모두 지닌 이중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김현숙, 2006: 32-33)⁹⁾. 이에 따라 김현숙(2006: 45-50)은 서비스 개선과의 직접 연계가 약한 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비형평성, 시설 미이용 가구와의 형평성, 유치원을 수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 외에도 실제 집행 시 어려움 등도 지적하면서 기본보육료의 도입 전면 재검토를 제안하고, 도입 시 차선택도 제시하고 있다(김현숙, 2006).

김현숙·서병선(2008)은 보육료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의 항목별 단가를 산정하고, 부지구입비, 차량유지비, 임대료 등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부가 보육료 지원제도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급식비, 소모품비, 난방비, 제세공과금 등을 조정하여 종일제에 비용의 80~85%의 수준에서 연장제(반일제) 보육비용을 제안하여,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보육료 부과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김현숙·서병선, 2008: 55-56). 또한, 종사자의 경력 차이, 정부지원시설의 시설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김현숙·서병선, 2008: 59). 마지막으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을 반영하여 지역별 비용을 산정하였는데, 부지구입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 보육비용의 차이를 검토하고, 지자체별 보육지원을 확인하여 이중적인 수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김현숙·서병선, 2008: 59-63). 표준보육비용 산정 이외에도 기존의 영아 기본보조금이 차등보육료 재원에 통합되고,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도입되지 않아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일원화된 보조금의 형태를 감안하여 중앙 정부의 보육예산

9) 정부의 보조금의 방식은 수요자보조금과 공급자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김현숙, 2006: 32). 수요자 보조금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서비스의 공급은 시장의 경쟁적 공급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노동 참여 증대로 세수가 증가하게 되어 정부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어 정부의 입장에서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Robins, 1991, 김현숙, 2006: 32에서 재인용). 한편 공급자보조금은 아동 정원 혹은 교사 인건비에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시설 공급 증가 및 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설 간 경쟁 약화로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투여한 금액에 비해 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설운영자의 비용절감 노력 감소로 인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김현숙, 2006: 32-33).

을 추정하였다(김현숙·서병선, 2008: 128-129).

신윤정·오신휘(2017)는 맞춤형 보육 제도의 도입으로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현황과 대국민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표준 보육 시간제’와 ‘선택 기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개선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신윤정·오신휘, 2017: 121). 먼저, ‘표준 보육 시간제’는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 내에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공하고, 교사의 근로 시간을 규정하며 보육 시간에 대한 국가 보장 수준을 마련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보육 시설 운영 시간’, ‘국가 표준 보육 시간’, ‘보육교사 근로 시간’의 개념을 규정하고, 각각의 안을 제안하였다(신윤정·오신휘, 2017: 121-136).

〈표 I-4-1〉 국가 표준 보육 시간(안)

정의	국가가 기본으로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영아 4시간, 유아 6시간	영유아 8시간	영유아 12시간
유형	영아 4시간, 유아 6시간	영유아 8시간	영유아 12시간
근거(출처)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8시간 보육료 확보	학부모의 보육에 대한 욕구를 국가가 책임 지원
실행 가능성	- 이용 시간 삭감에 따른 학부모 반발 - 보육료 삭감에 따른 시설장 반발	- 맞춤형 이용 부모들의 지지 - 시간연장보육 서비스가 확보 시 맞벌이 부모의 지지 - 8시간 보육료 보장 시 시설장지지 - 영아의 가정 내 양육 저하에 대한 비판 -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 당국의 비판	- 학부모와 시설장 지지 - 과거 무상보육으로 회귀 - 예산 당국의 비판 - 실제로 12시간 이용 보장 어려움
행정 편의성	자격 기준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 가중	자격 기준 파악 불필요	자격 기준 파악 불필요
예산 확보	예산 절감	예산 증가	예산 증가
제도 수용성	매우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자료: 신윤정·오신휘(2017).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0.

〈표 I-4-2〉 교사 근로 시간(안)

정의	교사의 시설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교사가 시설에서 근로하는 총 시간		
유형	근로시간 8:30~17:30	근로시간 9:00~17:00 + 보조교사	근로시간 9:00~17:00 + 초과 근로
근거(출처)	근로기준법 제50조	보조교사 추가 투입인력으로 활용	보육사업안내
실행 가능성	- 급식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보육교사 반대 - 8시 30분 이전, 5시 30분 이후 추가 인력 배치 혹은 초과 근무 필요	- 8시간 표준 보육료가 추가 인력 고용할 수 있도록 현 실화 필요함	- 시간제 교사 고용보다 비 용 절감 - 보육교사 업무량 과중 및 질저하 우려
행정 편의성	변화 없음	추가 인력 관리에 따른 비용	초과 근로 수당 지급 모니터링 필요
예산 확보	현행 유지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예산 마련 필요	추가 인력 투입보다 예산 절감
제도 수용성	낮음	높음	보통

자료: 신윤정·오신휘(2017).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3.

〈표 I-4-3〉 보육 시설 운영 시간(안)

정의	보육 시설이 문 여는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법정 운영 시간	
유형	12시간 운영	단시간 운영
근거(출처)	월~금: 12시간(7:30~19:30) 토: 8시간(7:30~15:30) (2017년 보육사업안내)	- 관련 규정 없음 - 종일제 이용 아동과 단시간 이용 아동 분리 보육하여 운영의 효율화 도모
실행 가능성	- 기존 방식으로 문제 없음 - 다만, 12시간 시설 운영의 현실화 필요	- 단시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경우 실행성 낮음 -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간제 보육 실행 가능성 클 것
행정 편의성	- 12시간 운영 감시 감독 위한 행정 비용	- 새로운 시설 규정 마련에 따른 행정 비 용 소요
예산 확보	- 12시간 운영 현실화 시 재정 지원 요구 가해질 우려	- 수요 적을 경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요구 - 시간제 보육 확대 시 민간 시설 지원 예산 - 종일반 혹은 맞춤형 아동이 시간제로 이동 시 보육료 예산 감소
제도 수용성	높음	낮음(단시간 보육 시설) 높음(시간제 보육 시설)

자료: 신윤정·오신휘(2017).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6.

다음으로 ‘선택 기제’는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시장 기제의 도입으로, 보육 서비스에서의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보육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신윤정·오신휘, 2017: 137-139). 신윤정·오신휘(2017)는 ‘인센티브’, ‘본인 부담’, ‘자격 기준’의 안을 통해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표 I-4-4〉 자격 기준의 정의 및 유형(안)

정의	특정 집단에게 특정한 보육 서비스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 부여하는 것		
유형	자격 기준 없음	종일제 자격 기준 부여	현행 보다 완화된 자격 기준 부여
내용	- 자격 기준 미부여 - 이용 시간을 전자 출석부로 체크	- 8시간 이상 이용에 대해 종일제 자격 기준 부여	- 영아 4시간 및 유아 6시간 서비스 이용에 대해 완화된 자격 기준 부여
근거(출처)	- 부모의 합리적 선택 유도	- 장시간 보육 시간을 이용해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관리	- 보육 서비스 이용에 융통성 부여
실행 가능성	- 학부모 및 시설장의지지 - 전문가 및 예산 당국 반발	- 학부모 반발 예상	- 학부모 및 시설장 반대
행정 편의성	- 자격 기준 폐지에 따른 행정 비용 감소 - 전자 출석부 도입을 위한 행정 비용 발생	- 자격 기준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소요	- 자격 기준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소요
예산 확보	- 부모들의 보육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예산 증대	- 재정 증가 없음	- 과도한 보육 서비스 이용 방지하여 보육 예산 절감
제도 수용성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높음

자료: 신윤정·오신휘(2017).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1.

〈표 I-4-5〉 인센티브의 정의 및 유형(안)

정의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적정 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제		
유형	현금 지급: 양육수당	현금 지급: 부모보육료	현물 지급
내용	- 0세: 20만원(보육 시설 미이용 시), 15만원(4시간 시설 이용), 10만원(6시간 시설 이용) - 1세: 15만원(보육 시설 미이용 시), 10만원(4시간 시설 이용 시), 8만원(6시간 이용 시) - 2세: 10만원(보육시설 미이용 시), 8만원(4시간 보육시설 이용 시), 6만원(6시간 보육 시설 이용 시)	- 부모보육료 지급 후 이용시간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 현금 지원 - 이용 시간당 차감액수는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산정	- 부모보육료 지급 후 이용시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육 바우처로 지급 - 보육바우처는 개인 돌봄 미 등 기타 보육 서비스, 영유아 교구재, 영유아 식품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정의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적정 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제		
근거(출처)	- 가정 내 양육 도모	- 시설 양육과 가정 내 양육 간의 형평성 도모	- 부모들의 무분별한 현금 사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실행 가능성	- 학부모 호응 - 보육료 비현실화 시 시설장 반발 - 추가적 예산 증대에 따른 재정 당국의 반발	- 현금 지원액수 증가에 따른 학부모지지 - 부모보육료 빼앗긴다는 시설장 반대	- 현금보다 호응도 낮을 것 - 부모보육료 빼앗긴다는 시설장 반대
행정 편의성	- 현행 전자 시스템 사용	- 이용 시간 관리 등 추가적 행정 비용 소요	- '보육 바우처' 관리 비용
예산 확보	- 단시간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육료 미삭감 시 추가 예산 증액	- 양육수당 폐지에 따른 재정감소분과 부모 보육료 현금 지급에 따른 재정 증가분 비교하여 예산 규모 추정 필요	- 보육 바우처 관리를 위한 행정 비용
제도 수용성	높음(학부모) 낮음(시설장)	높음(학부모) 낮음(시설장)	낮음

자료: 신윤정·오신휘(2017).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4.

〈표 I-4-6〉 본인 부담의 정의 및 유형(안)

정의	국가가 특정한 욕구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할 때 수요자들이 욕구를 스스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정책 타겟팅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	
유형	본인 부담 지불 후 지원	시간연장 본인 부담
내용(안)	- 장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 부과하고 추후 환급 - 지원 방식: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맞벌이 부부 지원, 본인 부담액 상한제 등	-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시간 연장 서비스 지원 - 단, 이용 시간 오후 5시부터 앞당겨 운영
근거(출처)	-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욕구를 가진 대상에 대한 지원	-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보육 욕구 충족
실행 가능성	- 학부모들의 반발 예상으로 실행 가능성 낮음	- 아동의 적정 규모 확보 시 실행 가능
행정 편의성	- 본인 부담 환급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 비용 소요	- 장시간 이용 아동 관리 위한 행정 비용 소요
예산 확보	- 본인 부담 환급에 따른 예산 증가	-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제도 수용성	낮음	높음

자료: 신윤정·오신휘(2017).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7.

신윤정·오신휘(2017)는 표준 보육 시간제와 '선택 기제'의 안을 고려하여 '영유아 8시간 국가 표준 보육 시간제'를 제안한다. 이는 국가는 누구나 8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8시간 미만 이용자에게는 양육수당 대신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차감하고 남은 부모 보육료를 지급하고, 8시간 이상 이용자에

게는 추가 이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한 후 소득에 따라 환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신윤정·오신휘, 2017: 148). 도입 시 8시간 이상 사용자들의 본인 부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추후 환급하는 방식과 자유로운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면 저항이 약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신윤정·오신휘, 2017: 149).

나. 보육의 질의 개념 및 요소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보육정책의 한계 및 개선 필요 사항으로 어린이집 적정 이용 보장의 한계, 양적·질적 측면의 낮은 어린이집 공공성, 보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미충족 등을 들어 ‘보육의 질 제고’를 향후 보육 정책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들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8-11). 특히, 무상보육 도입 이후 보육예산이 급증하였으나 재정부담으로 추가적 질 제고에 의한 투자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8).

1) 보육의 질과 구성요소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 보육의 질은 인지, 사회, 정서, 건강 등을 비롯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박경일·이은희·정수진, 2009: 144; Ceglowski, & Bacigalupa, 2002 :87-88), 미국 NAEYC(1982)는 우수한 유아보육·교육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다(안현미·박소영, 2010: 23에서 재인용) 따라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였을 때,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질 좋은 보육에 대한 정의와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파악하여야 한다.

보육의 질에 대해서는 일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구성 요소 또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으로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로 구조적 측면, 과정적 측면, 서비스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혜금, 2010: 136; 박경일 외, 2009: 145-147; 안현미·박소영, 2010: 24-26).

보육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구조적 질’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학급의 크기, 교사 교육 및 훈련 수준, 교사의 경력, 교사의 이직률, 보육시설의 실내외 환경 등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요인들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과정의 질’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 환경의 구성, 운영내용, 보육과정, 교사 교육, 부모의 참여, 교사와 아동 및 교사와 부모 간 상호작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김혜금, 2010: 136; 박경일 외, 2009: 145). 이는 보육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발달적합한 행동과 온정적이고 양육적이며 민감한 보호 등의 과정적 차원을 의미한다(박경일 외, 2009: 145). 마지막은 이용자 개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서비스의 질’로 부모 욕구 충족적 측면에서의 시설의 배치 및 분포, 이용가능성, 운영시간 등을 포함한다(김혜금, 2010: 136; 박경일 외, 2009: 148).

2) 보육의 질에 대한 인식차이

한편 연구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질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전문가 간의 인식이 차이가 있었다. Larner와 Phillips(1994)는 질 좋은 보육에 대해서 부모와 전문가의 생각이 다름을 지적하고, 부모들은 교사의 자격이나 학력과 같은 수량화된 구조적인 질보다는 아동과 교사 상호작용과 같은 과정적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일 외, 2009: 149, 재인용). Ceglowski와 Bacigalupa (2002: 88-89)는 Katz(1993)의 보육의 질에 대한 4가지 관점에 따라 전문가의 관점, 부모의 관점, 교직원의 관점, 아동의 관점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 부모, 교직원, 아동 각각은 보육에 대한 요구와 가치의 차이로 인해서 보육의 질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의 보육의 질은 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학급의 크기, 물리적 환경, 교사 교육 및 훈련 수준, 교사의 경력, 교사의 이직률 등의 ‘구조적인 질’에 대한 것이며, 지금까지의 보육의 질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전문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지배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부모와 교직원의 관점에서의 보육의 질은 건강과 안전, 교사의 온정적인 성격, 부모-교사 간 상호작용, 유연성 있는 사용시간 등의 ‘과정적 질’ 및 ‘서비스의 질’의 측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와 교직원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김혜금(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시설장에 비해서 전

반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만족도의 하락을 야기하므로, 보육시설의 질과 관련한 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현미·박소영(2010: 57-58)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의 부모 인지도를 살펴보았는데 부모는 서울형어린이집의 핵심지원인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인지하기 보다는 현·간판 등 가시적인 환경변화로 서울형어린이집을 인지하는 경우가 67.9%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부모가 느끼는 질적 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부모의 보육시설의 만족도 및 요구도를 토대로 부모가 인식하는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Tuner와 Smith(1983)의 연구와 Bogat와 Gensheimer(1986), Fuqua와 Labensohn(1986) 등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부모는 구조적, 과정적, 서비스의 질의 모든 질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혜금, 2010: 137에서 재인용).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미화(2013: 7)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의 기관 선택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접근성(42.9%)’, ‘원장 및 교사의 자질 우수(37.0%)’, ‘프로그램의 질(30.0%)’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의 질’의 측면이 ‘접근성’이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영경·정지나·이영(2008)는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보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를 확인하였다. 부모들은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 교사의 자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비용 감소 및 교재교구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보육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비취업모는 교사 대 영아 수 감소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 질이 더 나은 시설이 있다면 보육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화(2013: 9)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32% 부모가 기관의 질적수준을 위한 추가비용을 부모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박경일 외(2009)에서 영아전담시설의 부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질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교사의 공감성, 물리적 환경, 안전성, 접근성, 전문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해외의 연구처럼 부모가 구조적, 과정적, 서비스의 질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과 이에 대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보육의 다양한 질적 측면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제시하고, 열린어린이집, 지원시간 다양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표준보육과정 개선, 적절한 지원을 위한 표준보육보육비용 재계측,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보수교육 관리, 처우개선, 평가인증 개선 등을 세부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2-3). 이에 비추어볼 때, 정부는 보육의 질적 측면의 제고를 위해서 구조적, 과정적, 서비스 측면의 질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현미·박소영(2010)의 연구에서 드러나듯 보육서비스의 질적 변화에 대한 부모의 체감이 낮은 것을 고려하여 보육전문가와 부모의 보육의 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확인하고 세부적으로 지원하여야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듯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한 부모의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보육의 질적 보장을 전제로 국가와 부모 간의 비용 분담 체계의 개편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현황

- 01 중앙 정부 사업
- 02 지방 정부 사업
- 03 보육재정
- 04 해외 보육 비용지원 정책

II.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현황

1. 중앙 정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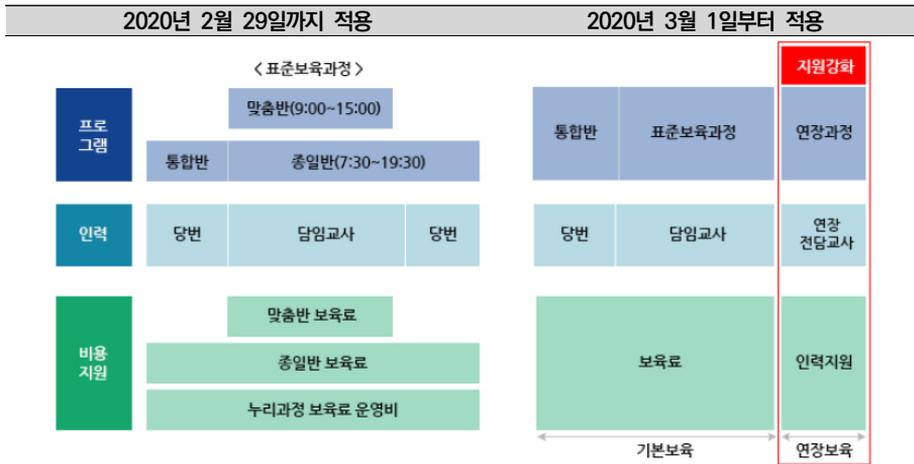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어린이집 비용 분담 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중앙 정부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린이집(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종의 비목에 따라 교사 인건비 지원, 인건비 및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 시설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 2019: 29). 이 중에서 보육 지원 체계 개편 등에 따른 비용 분담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분야는 기본 보육료 지원과 보육료 지원, 그리고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이다.

가. 중앙 정부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개요

2020년 어린이집 비용지원 체계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보육지원체계의 변화에 기인한다. 2020년 3월 1일 이후 새로운 보육지원 체계가 도입되면서 어린이집 영아반의 맞춤반과 종일반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2020년 보육지원체계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집 12시간(7:30~19:30) 운영 원칙은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9:00~16:00, 7시간)과 연장보육시간(16:00~19:30)으로 구분했다는 점이다(보건복지부, 2020a: 76). 보육지원 체계의 개편 안은 [그림 II-1-1]에 제시하였다.

이때, 기본보육시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게는 기관보육료를 지원한다. 한편,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보육을 위한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지원한다. 따라서, 동일한 운영시간에 대해 어린이집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1-1]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정책,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EB%B3%B4%EC%9C%A1%EC%A7%80%EC%9B%90%EC%B2%B4%EA%B3%84%20%EA%B0%9C%ED%8E%B8#hong (2020. 6. 13 인출)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표준보육과정과 연장 과정 등에 대한 비용지원 체계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표 II-1-1>과 같다. 0~2세 영아반의 경우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여부에 따라 기본보육시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이 이뤄진다. 반면 유아반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급된다. 한편, 부모 지원으로는 어린이집 유형에 무관하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과 지원 수준 등은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II-1-1> 어린이집 비용지원 체계

		0~2세 (영아반)		3~5세 (유아반)	
		정부지원 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정부지원 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기관 지원	기관보육시간 (9:00~16:00)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	
	연장보육시간 (16:00~19:30)	연장보육교사, 연장보육료		연장보육교사, 연장보육료	
부모 지원		보육료 지원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주: 1)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의 사용 범위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우선 활용 건임.
 2)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됨.
 자료: 보건복지부(2020a). 보육사업안내. pp. 287-291, pp. 340-352, pp. 408-413.

나. 기관보육료 및 연장보육료 지원

1) 기관 보육료

기관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 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 24조(비용의 보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기관)에 지원되는 보육료로, 2019년도까지는 이를 기본보육료라 하였다. 기관보육료의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어린이집¹⁰⁾이 아닌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0a: 408). 이때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포함하되,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반은 인건비를 지원받으므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2020: 408).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보육료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보육아동의 연령에 따라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높다(최효미 외, 2019: 31). 2020년 기준 기관보육료는 1인당 0세 50만원, 1세 27만2천원, 2세 18만4천원, 장애아 55만9천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a: 408). 기관보육료 지원 수준은 201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간 상향한 금액으로, 2019년에는 0세 48만5천원, 1세 26만4천원, 2세 17만8천원이었다(보건복지부, 2019a: 395).

〈표 II-1-2〉 기관보육료(2019~2020)

단위: 천원

연도	지원 금액			
	0세	1세	2세	장애아
2019	485	264	179	543
2020	500	272	184	559

자료: 1)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 395.

2)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 408.

2) 연장 보육료

새로운 보육지원체계의 도입으로 연장보육(평일 16:00~19:00)에 대해서 연장보육료가 추가적으로 지원되게 되었다. 2020년 3월 1일 이후 지원되는 연장보육

10)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

료는 영유아 연령과 교사대 아동비를 고려하여 지원되며, 교사 대 아동비가 1:3인 0세반은 시간당 3천원, 교사 대 아동비가 1:5인 영아반은 2천원, 교사대 아동비가 1:15인 유아반은 1천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a: 350). 한편, 장애아의 경우에는 교사대 아동비와 무관하게 시간당 3천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a: 350). 단, 연장보육료는 전자출결 시스템 상에서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30분 단위로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보육료를 산정한다(보건복지부, 2020a: 350).

〈표 II-1-3〉 연장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2020년 3월 1일 이후)

단위: 원

교사 대 아동비 반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시간당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 350

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2012년 전후 무상보육의 도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원칙적으로 보육료 지원과는 별개의 지원 정책이지만, 영유아 전체에 대한 보편적 무상보육 지원 체계와 함께 발전하여 온 제도로 어린이집의 비용 분담 체계를 논의할 때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므로 보육료 지원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1) 보육료 지원

2020년 현재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이러한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보조하는 비용지원이지만, 가정양육수당과는 달리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지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보육료 지원금은 2011년까지는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구분되었으며, 2012년 영아와 만5세에 대해 가구소득 기준이 사라졌고, 이후 2013년 이후로는 모든 연령의 모든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다(최효미 외, 2019: 44~45).

보육료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다만, 만2세 이하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종일반 기준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만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최효미 외, 2019: 46).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던 만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2020년에 24만원으로 2만원이 상향되었다.

한편, 2017년도 이후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따라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에 따라 맞춤반과 종일반의 보육료 지원금이 약간 차이를 보였다(최효미 외, 2019: 46). 2019년 기준 만0세가 맞춤반에 다니는 경우 35만4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며, 종일반에 다니는 경우에는 10만원이 많은 45만4천원이 지원되었다. 이때 보육료는 기본보육시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020년 보육료는 기존 맞춤반 영아를 기준으로 할 때는 크게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기존처럼 영아반을 종일반과 맞춤반을 구분하여 운영되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0세 종일반 기준 2019년 45만4천원인 보육료(보건복지부, 2019a: 332)가 2020년에는 47만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보건복지부, 2020a: 341~342). 그런데, 2020년 3월 1일부터 기본보육시간의 도입됨에 따라 보육료가 기본보육에 대해 지원됨에 따라 2019년에 만0세 맞춤반에 다니던 영아(35만4천원 지원)와 비교할 때,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세아는 12만4천원이 증가한 47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표 II-1-4〉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2019~2020)

단위: 천원

년도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19	종일반	454	400	331	220	220	220	
	맞춤반	354	311	258	-	-	-	
2020	2월29일 이전	종일반	470	414	343	220	220	220
		맞춤반	367	322	268	-	-	-
	3월 1일 이후	기본보육	470	414	343	240	240	240

자료: 1)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 332.

2)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 341~342.

보육료 지원금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돌봄 취약여부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보육아동의 특성에 따라 장애아 보육료와 다문화 보육료가 구분되어 지원되지만, 다문화 보육료는 일반 아동의 보육료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상태이다(보건복지부, 2020a: 353~357). 2020년 기준 장애아 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과 무관하게 2019년에 비해 1만6천원 증가한 47만8천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a: 355).

한편, 연장보육시간(19:30)을 초과한 시간에 이뤄지는 보육, 즉 연장형 보육에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 등이 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기존의 시간 연장 보육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2020년 연장보육시간의 도입에 따라 명칭이 야간연장 보육으로 변경되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60시간 상한으로 일반 아동 시간당 3,200원이 지원되며, 장애아동은 4,200이 지원된다. 2019년에 비해 지원 단가는 시간당 100원이 인상되었다(보건복지부, 2019a: 348).

한편, 야간12시간 보육은 기존의 야간보육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보육료 지원금과 동일한 보육료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a: 341)¹¹⁾. 주간 보육을 모두 이용하고 야간 보육까지를 이용하는 24시간 보육의 경우에는 이용 시간이 긴만큼 만0세반 70만5천원을 지원하며, 만1세반 62만1천원, 만2세반 51만4,500원, 만3세반~만5세반은 33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a: 341). 마지막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제공되는 휴일보육은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363).

<표 II-1-5> 돌봄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 금액(2020년 기준)

서비스내용	지원 단가 및 지원 한도
장애아 보육료	· 0~5세 동일하게 478,000원 · 교사대아동비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보육료 상한액 적용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시간은 평일 19:30~24:00이며, 토요일은 15:30~24:00임. ·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이용 시간은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지원 단가는 일반아동 시간당 3,200원(지원 한도액 192,000)이며, 장애아동은 4,200원(지원 한도액 252,000임)

11) 다만, 야간12시간보육과 24시간 보육은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관 지원이 있음.

서비스내용	지원 단가 및 지원 한도					
야간12시간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실시 가능 · 기준 시간은 19:30~익일 7:30 ·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 · 지원금은 보육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470,000원	414,000원	343,000원	220,000원		
24시간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실시 가능 · 기준 시간은 7:30~익일 7:30 (주간 보육과 야간12시간 보육을 동시 이용 가능)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영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지원금은 보육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705,000원	621,000원	514,500원	330,000원		
휴일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일, 공휴일 7:30~19:30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 휴일어린이집지정 기관인 경우 일보육료×100% 					

주: 야간연장 보육은 기존의 시간연장 보육에 해당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 341, pp. 361~363

2)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와는 달리 영유아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보육료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3년 무상보육과 함께 전 연령 모든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된 이후 지원금은 조금도 상향조정되지 않았다(보건복지부, 2020a: 364; 최효미 외, 2019: 48-49).

다만, 가정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돌봄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지원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촌양육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이 별도로 존재한다. 농어촌양육수당은 12~24개월 미만 17만7천원, 24~36개월미만 15만6천원, 36~48개월미만 12만9천원, 48~84개월미만 1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 364). 한편,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경우 지원되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인 경우 20만원, 36~84개월인 경우에는 1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a: 364).

〈표 II-1-6〉 가정양육수당 연령별 지원 금액 현황(2013~2019년)

단위: 천원

구분	12개월 미만	12개월~ 24개월미만	24개월~ 36개월미만	36개월~ 48개월미만	48개월~ 84개월미만
(일반가구)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농어촌양육수당		177	156	129	100
장애아동양육수당	200			100	

주: 84개월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 364.

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금

1) 인건비 지원

영아반의 경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는 데 반해,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속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이다(보건복지부, 2020a: 377).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원장 인건비 80%,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 시간제 보육교사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대체 교직원 인건비 지원, 농어촌 등 취약 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중소도시·대도시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20a: 378~381). 지원 인력별로 인건비 지원 기준과 지원 수준은 〈표 II-1-7〉과 같다.

〈표 II-1-7〉 인건비 지원 기준 (2020년)

구분	지원 조건	지원 수준
원장	·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또는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함	· 원장 인건비의 80%
영아반 교사	· 0세반 아동 3명 기준 재원 아동이 최소 2명인 반 교사 · 1세반 아동 5명 기준 재원 아동이 최소 3명인 반 교사 · 2세반 아동 7명 기준 재원 아동이 최소 4명인 반 교사	·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 3세반 아동 15명 기준 재원 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 교사 · 4세이상반 아동 20명 기준 재원 아동이 최소 11명인 반 교사	· 인건비 30%
시간제 보육교사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월 시간제 보육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	· 이용건수 20건 이상, 아동 2명 이상, 40시간 이상 70% · 이용건수 30건 이상, 아동 4명

구분	지원 조건	지원 수준
	· 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별도의 시간제보육교사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이상, 80시간 이상 100%지원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 혼합반 운영시 낮은 연령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임)	· 작동
·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 교직원을 채용한 경우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 교직원을 채용한 경우	· 기존 대상자 기준 호봉 기준 지급 · 대체교직원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추가 인건비 지원	· 국공립, 법인등 어린이집 지원 대상에만 해당 · 농어촌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어린이집	· (예산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인, 조리원 1인 추가지원
· 중소도시·대도시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 평가 인종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 어린이집 ·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 1명에 한해 월 지급액의 100%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p. 378-381.

한편,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인력 투입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특수한 보육 상황에 대응하여 인건비가 지원되기도 한다. 먼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 인건비의 (월지급액의) 80%,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인건비의 80%, 치료사 인건비의 100%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386). 이에 더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와 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의 추가 지원되며, 연장반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에게는 15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386).

다음으로 정원 20%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389). 지원액은 정부지원 시설인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 지정 시설인 경우에는 1인당 167만8천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389).

만3세 미만의 영아를 20인 이상 보육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월 지

급액의 80%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조리원 1명에 대해서도 100%의 인건비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a: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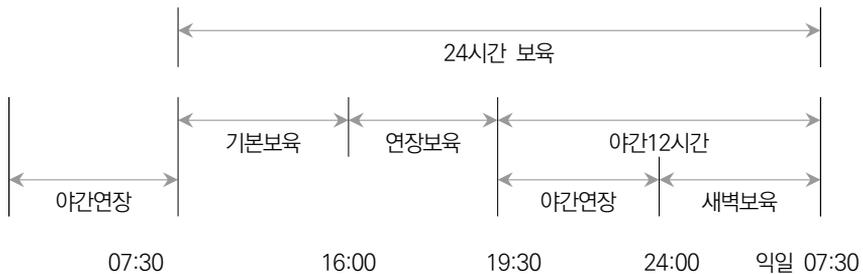
〈표 II-1-8〉 특수한 보육 상황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 (2020년 기준)

구분		인건비	수당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월 지급액의 80%	-
	보육교사·특수교사	월지급액의 80%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 한해 : 30만원 ·연장반 전담을 위해 신규채용된 자격소지자 : 15만원
	치료사	월지급액의 100%	30만원
	조리원	1명에 한해 월 지급액의 100%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 정부지원시설 월 지급액의 80% ·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전담교사 1인당 167만8천원 지원.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월 지급액의 80%	-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
	조리원	1명에 한해 월 지급액의 100%	-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p. 386~395.

2020년 3월 1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의 명칭과 개념이 약간 달라졌으며, 시간대별로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살펴보면 [그림 II-1-2]와 같다. 이처럼 이용시간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연장형 보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이 이뤄진다.

[그림 II-1-2]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2020년)



주: 그 밖의 연장보육: 24시간보육(기본보육+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새벽보육),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야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 396.

먼저, 야간 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로 채용된 야간 연장 보육교사에게는 정부 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인당 145만 7천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397). 야간연장반의 경우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보육교사가 평일 기준 19:30~21:30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해 월 45만 7천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398~399).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는 야간 연장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인당 145만 7천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402).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로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휴일 보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의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휴일 근무수당을 일일 53,8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405).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a: 405).

〈표 II-1-9〉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2020년 기준)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내용
야간연장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교사	·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45만7천원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 연장 보육을 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 야간 연장반 별 월 45만7천원 지원
24시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45만7천원
휴일 어린이집	휴일근무 보육교사	· 국공립·법인시설 및 직장 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 지정받은 시설 · 1인당 2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 일일 휴일근무수당으로 53,800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p. 396~405.

2) 연장보육 전담 교사 지원

한편, 2020년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시간을 운영하기 위해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지원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연장보육 수요에 따라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영아반 3명, 유아반 8명, 단 0세반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이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전자출결시스템을 적용한 어린이집에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a: 457). 연장보육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교사 자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연장반별로 교사 1인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457).

〈표 II-1-10〉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2020년 기준)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내용
연장보육 시간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상 어린이집 조건〉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연장반 영유아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로 교사 1인 지원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0만 2천원 및 전담수당 12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 457.

3)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외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교사겸직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도 실시 중에 있다. 먼저 담임교사지원비는 어린이집에서 받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 평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평일 4시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a: 445). 단,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20a: 445)¹²⁾. 담임교사지원비는 일 8시간 근무하는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는

12) 이 외에도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월 24만원, 일 4시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는 월 12만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446).

한편,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해서는 월 7만 5천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447).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0a: 447). 단,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20a: 447).

〈표 II-1-11〉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2020년 기준)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담임교사 지원비	평일 8시간 월15일 이상 근무한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4만원
	평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2만원
교사겸직 원장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는 사람, 평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월 7만 5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p. 446-447.

2. 지방 정부 사업

중앙에서 추진하는 보육 사업 이외에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시도 부담 또는 공동 부담으로 특수보육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는 2017-2018년 시도와 시군구의 특수보육시책 현황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시도와 시군구 단위에서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한 연구로 2절에는 선행연구의 분석 틀을 준용하여 2020년 지방 정부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사업 중 부모 대상의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직원 수당 및 기타 인력 지원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2012년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보육료 지원 단가 범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으나,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 유아반은 시·도에서 결정하는 보육료 상한액에 따라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다음 <표 II-2-1>은 2020년 시·도 보육료 상한액을 정리하였다.

<표 II-2-1> 시·도 보육료 상한액: 2020

단위: 원

구분	민간		가정	
	만3세	만4·5세	만3세	만4·5세
서울	388,800	370,860	388,800	370,860
부산	313,000	298,000	313,000	298,000
대구	313,000	297,000	319,000	307,000
인천	336,000	322,000	336,000	322,000
광주	305,000	293,000	321,000	309,000
대전	319,000	301,000	322,000	304,000
울산	314,000	298,000	330,000	311,000
세종	303,000	290,000	304,000	286,000
경기	329,000	306,000	332,000	332,000
강원	315,000	296,000	328,000	317,000
충북	316,000	296,000	323,000	316,000
충남	331,450	318,260 354,720	341,600	333,480 354,720
전북	295,000	282,000	297,000	284,000
전남	324,000	305,000	338,000	326,000
경북	319,000	301,000	319,000	301,000
경남	314,000	297,000	330,000	322,000
제주	303,790	295,020	318,200	305,170

- 자료: 1)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 11.
 2) 2020년 부산광역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370호), p. 1.
 3) 2020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195호)
 4) 인천광역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39.
 5) 2020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91호)
 6)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보육료 지원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154> (인출: 2020. 10. 31.)
 7) 울산광역시 2020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사항, p. 1.
 8) 2020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0-279호), p. 1.
 9) 2020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결정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0-188호), p. 1.
 10) 2020년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0-300호).
 11) 2020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문(안)(충청북도 공고 제2020-159호), p. 1.
 12) 2020년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0-138호), p. 1.
 13) 2020년 전라북도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전라북도 공고 제2020-184호), p. 2.
 14) 2020년도 전라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공고(전라남도 공고 제2020-207호), p. 1.
 15) 2020년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20-286호), p. 1.
 16) 2020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0-210호), p. 1.
 17)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523호) p. 1.

2020년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유아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24만원으로 시·도 보육료 상한액과 차이가 있다. 각 시·도에서는 보육료 상한액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24만원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모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도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이 차이가 있다. 2020년 시·도의 부모보육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지역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각 시·도의 보육료 상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인천과 울산의 경우 법정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 영유아에게는 차액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2-2〉 시·도 부모보육료 지원 개요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
보육료																	
보편적	○	○	○		○	○		○	○	○		○	○	○	○	○	14
선별적				○			○										2
기타필요경비	○	○		○		○				○					○		6

- 주: 각 시도 보육사업 관련 자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함.
 자료: 1) 서울특별시(2020).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 45.
 2) 부산광역시(2020). 2020 보육사업 시행계획, p. 8.
 3) 대구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p. 13.
 4) 인천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54.
 5) 광주광역시(2020).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2020년도 市 자체 보육사업 추진계획, p. 8.
 6) 대전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492 (정부지원보육료에 시 지원금을 더하여 산출)
 7) 울산광역시(2020). 2020년도 울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p. 17.
 8) 세종특별자치시(2020). 2020년도 보육시행 계획안, p. 10.
 9) 경기도(2020). 2020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p. 71.
 10) 강원도(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강원도 자체 보육사업) p. 4, 10.
 11) 충청남도(2020). 2020년 충청남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 안내, p. 14.
 12) 전라북도(2020). 2020년 전라북도 보육사업 지원계획, p. 4.
 13) 전라남도(2020). 2020년 어린이집 운영 도비 자체지원사업 추진계획, p. 12.
 14) 경상북도(2020). 2020년 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경상북도) p. 15.
 15) 경상남도(2020). 2020년 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경상남도) p. 1.
 16) 제주특별자치도(2020).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 p. 15.

〈표 II-2-3〉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차액 지원 현황

시·도	지원영유아	규모 (명)	주기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서울	전체		월	148,800 130,860 (원)	- 3세 148,800원, 4~5세 130,860원
부산	전체		월	58, 73	- 3세 73,000원, 4~5세 58,000원

시·도	지원영유아	규모 (명)	주기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대구	전체	7,356	월	29, 39, 45, 51	- 민간 3세 45천원, 4~5세 29천원 - 가정 3세 51천원, 4~5세 39천원 - 시비 60%, 구군비 40%
인천	일반		월		- 3~5세 38,000원
	법정저소득층		월		- 3세 96,000원, 4~5세 82,000원
광주	전체		월	53, 65, 79, 81	- 민간 3세 65천원, 4~5세 53천원 - 가정 3세 81천원, 4~5세 79천원
대전	전체	7,100	월	61, 64, 79, 82	- 민간 3세 79천원, 4~5세 61천원 - 가정 3세 82천원, 4~5세 64천원 - 시비 80% 구비 20%
울산	일반	7,100	월	58, 71, 74, 90	- 민간 3세 74천원, 4~5세 58천원 - 가정 3세 90천원, 4~5세 71천원 - 시비 50% 구·군비 50%
	법정저소득층	180	월	자부담분	- 시비 50% 구·군비 50%
세종	전체		월	63, 50	
경기	전체	112,963	월	89, 66, 92	- 민간 3세 89천원, 4~5세 66천원 - 가정 3~5세 92천원
강원	전체	7,264	월	66, 89, 92	- 민간 3세 89천원, 4~5세 66천원 - 가정 3~5세 92천원
충남	전체	16,572	월	자부담분	- 민간 3세 91,450원, 4세 78,260원, 5세 114,720원 - 가정 3세 101,600원, 4세 93,480원, 5세 114,720원
전북	전체		월	35	- 공공형 어린이집 제외 - 차액보육료가 35천원 미만 시 해당액만 지원 - 도비 30%, 시군비 70%
전남	전체	11,500	월	자부담분	- 민간 3세 84천원, 4~5세 65천원 - 가정 3세 98천원, 4~5세 86천원
경북	전체		월	자부담분	- 3세 72천원, 4~5세 56천원
경남	전체		월	자부담분	- 민간 3세 74천원, 4~5세 57천원 - 가정 3세 90천원, 4~5세 82천원
제주	전체	2,203	월	자부담분	- 민간 3세 63,790원, 4~5세 55,020원 - 가정 3세 78,200원, 4~5세 65,170원 - 공공형 어린이집 제외

주: 강원도는 2020년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0-300호)에 의한 보육료 상한액과 누리과정 지원금 차액을 계산하여 보육사업안내의 지원내용에 따라 계산함.

- 자료: 1) 서울특별시(2020).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 45.
 2) 부산광역시(2020). 2020 보육사업 시행계획, p. 8.
 3) 대구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p. 13.
 4) 인천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54.
 5) 광주광역시(2020).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2020년도 시 자체 보육사업 추진계획, p. 8.
 6) 대전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492. (정부지원보육료에 시 지원금을 더하여 산출)
 7) 울산광역시(2020). 2020년도 울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p. 17.
 8) 세종특별자치시(2020). 2020년도 보육시행 계획안, p. 10.
 9) 경기도(2020). 2020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p. 71.
 10) 강원도(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강원도 자체 보육사업) p. 4, 10.
 11) 충청남도(2020). 2020년 충청남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 안내, p. 14.
 12) 전라북도(2020). 2020년 전라북도 보육사업 지원계획, p. 4.

- 13) 전라남도(2020). 2020년 어린이집 운영 도비 자체지원사업 추진계획. p. 12.
- 14) 경상북도(2020). 2020년 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경상북도) p. 15.
- 15) 경상남도(2020). 2020년 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경상남도) p. 1.
- 16) 제주특별자치도(2020).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 p. 15.

정부는 보육료 이외의 보육활동에 필요한 기타필요경비는 수익자부담으로 수납하도록 하고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시·도에서 상한액을 결정하고 있다(표 II-2-4 참고). 연 1회 수납하는 입학금은 최소 8만 원에서 11만원 까지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유형 및 인건비 지원 시설 여부에 따라 상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표 II-2-4〉 2020년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단위: 천원

구분	입학준비금 (년) ¹	특별활동비 (월) ²	차량운행비 (월) ³	현장학습비 (분기) ⁴	행사비(년) ⁵	아침· 저녁 급식비 (월/식) ⁶	특성화비용 (월) ⁷
서울	전년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이내 자치구 결정 (최대수납 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정부지원)60 (정부미지원)90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최대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85%이내에 서 자치구 위임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최대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최대수납한도액은 1식 2,200원 이내)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최대수납한도액은 40,000원 이내)
부산	110	(국공립)70 (국공립 외)80	25	50	98	2(식)	-
대구	(국공립)90 (국공립외)100	(국공립)60 (국공립외)70	30	140	100	2(식)	60(분기)
인천	100	(정부지원)55 (정부미지원)60	30	0-1세: 월 85(단,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중 특별활동 참여자는 현장학습·행사비·시도특성화비용의 수납한도액 월 67) 2-5세: 현장학습·행사비·시도특성화비용의 수납한도액 월 77		2(식)	
광주	90	(국공립)50 (국공립외)55	25	50	80	1.3(식)	40
대전	95	60	25	60	90	1.8(식)	25
울산	100	85	25	60	100	1.9(식)	-
세종	(상해보험, 피복류)90 (전자출결)20	80	30	60	100	36.9(월)	30

구분	입학준비금 (년) ¹	특별활동비 (월) ²	차량운행비 (월) ³	현장학습비 (분기) ⁴	행사비(년) ⁵	아침· 저녁 급식비 (월/식) ⁶	특성화비용 (월) ⁷
경기	100	(국공립) 51.390 (민간가정) 80.000	26	(국공립) 105 (민간가정) 135	(국공립) 200 (민간가정) 312	(국공립) 40 (민간가정) 50	(국공립) 34.500 (민간가정) 60
강원	105	80	30	120(분기)	100	1.7(식)	40
충북	100	(정부지원)80 (정부미지원) 90	30	50	80	34(월)	특별활동비의 50%이내
충남	90	60	30	200	100	1(아침) 1.5(저녁)	30
전북	85	90	40	50	150	30(월)	30
전남	100	(국공립)70 (국공립외)80	30	50	(행사비) 90 (앨범비) 60	25(월)	250(년)
경북	100	80	23	180	100	25(월)	30
경남	95	(국공립, 민간가정) 60 (기타)65	24	40	90	30(월)	(국공립, 기타)23 (민간가정)30
제주	80	70	30	40(분기)	60(분기) 30(앨범비)	30(월)	20(월)

- 주: 1) 입학준비금: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표기가 된 시·도는 피복류비와 상해보험료를 구분함.
 2)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임.
 3) 차량운행비: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4)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으로 세부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됨.
 5)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됨.
 6) 아침 및 저녁 급식비
 7) 특성화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로, 필요한 경우 시·도별로 특성화 비용에 대한 한도를 마련함.

- 자료: 1)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 44.
 2) 2020년 부산광역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370호), p. 2.
 3) 2020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195호), p. 2.
 4) 인천광역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40.
 5) 2020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91호)
 6)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보육료 지원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154> (2020. 10. 31. 인출)
 7) 울산광역시 2020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사항, p. 2.
 8) 2020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0-279호), p. 2.
 9) 2020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결정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0-188호), p. 2.
 10) 2020년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0-300호), p. 1.
 11) 2020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문(안) (충청북도 공고 제2020-159호), p. 2.

- 12) 2020년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0-138호) p. 2.
- 13) 2020년 전라북도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전라북도 공고 제2020-184호) p. 2.
- 14) 2020년도 전라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공고(전라남도 공고 제2020-207호) p. 1.
- 15) 2020년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20-286호) p. 2.
- 16) 2020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0-210호) p. 2.
- 17)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523호) p. 2.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경북으로 평가인증어린이집 전체를 지원하는 부산을 제외하고 서울, 인천 등 지역에서는 법정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II-2-5〉 기타 필요경비 지원

시·도	대상	내역	규모 (명)	주기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서울	법정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수시	실비용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현장학습비 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용 지급
부산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연 1회	320 ~920	- 현원 20명 이하 320, 21~39명 520, 40~91명 720, 92명 이상 920천원 지원
인천	법정저소득층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1개월, 분기		- 특별활동비 55천원(정부지원), 60천원(미지원) - 현장학습비/행사비 0-1세 85천원, 2-5세 77천원 - 차량운행비 30천원
대전	법정 저소득층	입소료, 현장학습비	800	연 1회, 분기	95, 60	- 현장학습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강원	저소득층 등 대상 아동	입학준비금	3,377	연 1회		- 어린이집 이용 법정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 다자녀가정의 셋째 아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대상
경북	장애아동	입학준비금 및 기타 필요경비		연 1회	100	

자료: 1) 2020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 46.
 2) 2020 보육사업 시행계획(부산광역시) p. 63.
 3)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인천광역시) p. 52.
 4) 대전광역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506.
 5) 2020년 보육사업안내(강원도 자체 보육사업) pp. 4-5.
 6) 2020년 도 보육사업 안내(경상북도) p. 7.

나. 보육교직원 수당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담임교사의 평균 기본급은 168.6만원 정부수당 22.7만원 지자체 수당 19.6만원, 어린이집 수당 6.1만원으로 총액 21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중앙 정부에서는 담임교사지원비 24만원, 원장 겸직 교사 7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는 2020년부터 처우개선비 6만원을 추가지원하여 36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의 수당 수준은 유치원 교사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고 또한,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 간에도 금액 차이가 있어 지방 정부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명목의 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처우개선비 이외에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특별수당, 교통비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는데 모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17개 시·도 모두 특수보육시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II-2-6〉 시·도 보육교직원 수당 개요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
월정액																		
처우개선	○	○		○	○	○	○	○	○	○	○	○	○		○	○	○	
근속수당		○				○	○	○			○						○	
시간외수당						○	○				○							
영아반수당						○	○		○									
기타		○	○			○	○	○	○					○			○	
연 1~2회	○				○	○				○							○	

주: 각 시도 보육사업 관련 자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함.

- 자료: 1) 서울특별시(2020).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p. 55-56.
 2) 부산광역시(2020). 2020 보육사업 시행계획, pp. 52-53, 56.
 3) 대구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p. 20.
 4) 인천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63.
 5) 광주광역시(2020).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2020년도 시 자체 보육사업 추진계획, p. 5.
 6) 대전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p. 508, 511~515.
 7) 울산광역시(2020). 2020년도 울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pp. 19-20.
 8) 세종특별자치시(2020). 2020년도 보육시행 계획안, p. 16.
 9) 경기도(2020). 2020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pp. 95-104.
 10) 강원도(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강원도 자체 보육사업), pp. 11, 13.
 11) 충청북도(2020). 2020년 자체 보육사업(도비) 추진 지침, pp. 3-5, 8-10, 16-17.
 12) 충청남도(2020). 2020년 충청남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 안내, pp. 19-21.
 13) 전라북도(2020). 2020년 전라북도 보육사업 지원계획, p. 10.
 14) 전라남도(2020). 2020년 어린이집 운영 도비 자체지원사업 추진계획, pp. 5-7.
 15) 경상북도(2020). 2020년 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경상북도), pp. 11-13.
 16) 경상남도(2020). 2020년 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경상남도), pp. 3-4.
 17) 제주특별자치도(2020).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 pp. 5-8.

〈표 II-2-7〉 보육교직원 월정액 수당 지원 현황

시·도	대상	명목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서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0, 145, 195, 200	-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195천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145천원 - 민간 어린이집 교사 200천원 - 방과후교사 100천원 - 조리원(정부지원시설 현원 40인 이상, 장애아전문 전체) 145천원
	보육교사	중식비	25	-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야간보육교사, 1개월 이상 근무 대체교사 포함 -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됨
부산	직장어린이집 제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담임교사	장기근속 수당	30, 50	- 근속 3~6년 30천원, 7년 이상 50천원 - 평일 8시간 원칙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원장, 원장겸임 보육교사, 출산(육아)휴직 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대체(보조)교사 제외
	직장어린이집 제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복지수당	100, 150	- 근속 1년 미만 100천원, 근속 1년 이상 150원 - 평일 8시간 원칙,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 시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평일 6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30	- 평일 8시간 원칙,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자 - 1개월 이상 근무 대체교사, 시간연장, 24시 및 방과 후 보육교사 포함
대구	보육교사	교사수당	30 ~120	- 평일 8시간 원칙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등 - 담임수당 시비 50%, 구군비 50%
인천	보육교사 및 원장	처우개선비	90~310	- 영아반 교사, 170천원 - 누리반 교사, 170천원, 90천원 - 원장, 310천원
광주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0, 60, 110	- 정부미지원시설/장애아전문시설 1년 이상 근무자 110천원, 6개월이상 1년 미만 근무자 60천원 - 정부지원시설 6개월 이상 4호봉 미만 근무자 30천원 - 대표자 겸임 보육교사(가정어린이집 미적용),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 수당형 시간연장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은 제외 - 시비 50% 구비 50%
대전	전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5,70	- 보육교직원, 치료사, 취사인력, 야간연장 보조교사, 출산휴가 대체교사 - 시비 70% 구비 30%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장기근속 수당	30	- 원장, 겸직원장 및 취사인력, 간호사, 영양사, 야간연장 보조교사 등 제외 - 최초 입사 일로부터 3년 속한 다음 달부터 지원 - 종전시설 경력 불인정/ 재입사시 종전 경력 불인정 - 근무기간 출산 및 휴직기간 포함



시·도	대상	명목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직장 어린이집 제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30	- 1일 8시간 이상으로 초과근무하는 보육교직원 - 보육교직원, 원장, 대체교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취사인력 대상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2,325	- 시립어린이집 2개소 및 국공립 등 어린이집 20개소
	직장어린이집 제외 민간·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50	- 영아반, 만2~3세 혼합반 담당 보육교사, 해당 교사의 출산휴가 대체교사, 가정어린이집 겸임원장(단, 반별 영아 1명 이상 보육시 가능) - 시비 70% 구비 30%
	전체 어린이집 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50	- 의무배치 보육교직원 중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급자 이외의 보육교직원, 취사인력 - 시비 70% 구비 30%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30	- 의무배치 보육교직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취사인력, 야간연장 보조교사, 출산휴가 대체교사 - 시비 70% 구비 30%
울산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0	- 시비 50%, 구·군비 50%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	20, 30	- 3~5년 20천원, 5년 이상 30천원 - 시비 50%, 구·군비 50%
	0~2세반 및 장애아반 직원	지원비	50	- 시비 50%, 구·군비 50%
세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0, 150, 250	-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실제 근무한 자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대체교사, 월급여 시간연장반교사 지원가능 - 평가인증시설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및 대체원장, 시간제 근무자, 등하원시간대 운전원, 누리과정보조교사 등 비상근무자 제외
		장기 근속수당	50, 70	- 3년 이상 근무 50천원, 5년 이상 근무 70천원 -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실제 근무한 자 - 평가인증시설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및 대체원장, 시간제 근무자, 등하원시간대 운전원, 누리과정보조교사 등 비상근무자 제외
		시간외수당	20	-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고, 초과근무 한 담임교사 중 어린이집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받은 자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대체교사 지원 가능
		도시지역 근무수당	70	- 동지역 어린이집 근무 담임교사 중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자 - 평가인증시설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및 대체원장, 시간제 근무자, 등하원시간대 운전원, 누리과정보조교사 등 비상근무자 제외

II.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현황

시·도	대상	명목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경기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0, 110, 120, 150, 370, 400	-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150천원, 원장, 조리원 월 150천원, 치료사 월 400천원 (평가미인증 기관의 경우 30천원 감액) -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110천원 (평가미인증 기관은 50천원 감액)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0, 110, 170, 200, 420, 450	-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200천원, 치료사 450천원 (평가미인증 기관의 경우 30천원 감액) -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110천원 (평가미인증 기관은 50천원 감액)
	정부 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30, 80, 90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80천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30천원 - 월급형(육아종합지원센터, 제자체) 대체교사(관리자 제외) 정부지원 80천원 미지원 30천원 -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90천원
	영아반 담당교사	특수근무 수당	30, 50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50천원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 20시간 이수자 30천원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	특수근무 수당	50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장애아반 담당교사,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근무 특수교사, 치료사	특수근무 수당	100	- 보육교사 교육원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240시간 이수자/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유자격자로서 정규 인력으로 채용된 특수교사, 치료사 중 1
강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0	- 평일 8시간 원칙 근무,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 또는 특수교사)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30	- 만 0~2세 독립 또는 혼합반 담임교사 - 평일 8시간 원칙 월 15일 실제 근무자
충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0, 80, 130	- 농촌 정부미지원 시설 130천원, 농촌 정부지원 시설 80천원, 중소도시 60천원 - 원장,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 및 특수교사), 영양사, 간호사, 치료사, 정부지원 대체교사 중 평일 8시간 원칙,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20, 30, 40	- 3년 이상 5년 미만 정부지원시설 20천원, 미지원시설 30천원 - 5년 이상 정부지원시설 30천원, 미지원시설 40천원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 및 특수교사), 치료사 중 평일 8시간 원칙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자 - 시간제보육교사, 야간연장교사, 방과후교사, 24시간교사도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 수당	20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원장, 보육 및 특수교사)로 평일 8시간 원칙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자 - 교재교구 준비, 보육일지 작성 등 1일 8시간 이상으로 초과근무 하는 자

시·도	대상	명목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충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0, 130, 150	- 원장 150천원, 만0~2세반 교사 130천원, 만2~3세 혼합반 교사 100천원, 만3~5세반 교사 및 그 외 교직원 100천원 (교사겸직원장 포함) - 도비 30%, 시군비 70%
전북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0, 100	- 원장 50천원, 교사겸직원장 100천원, 담임교사(영어반, 방과후방 등), 치료사 100천원, 담임교사(유아반) 50천원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중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자 - 도비 30%, 시군비 70%
전남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20, 30, 50	- 정부지원시설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20천원, 3년 이상 근무자 30천원 - 정부미지원시설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30천원, 3년 이상 근무자 5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100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 - 시간제, 대체, 보조교사 등 제외 - 도비 40%, 시군비 60%
경북	국가자격증 소지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50, 100	- 보육교사, 원장,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육아종합지원센터직원 등 100천원. 신규 채용 연장보육전담교사 월 50천원 - 평일 8시간 원칙 월 15일 이상 근무자 - 보조교사, 운전기사, 사회복지사 등 제외
경남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0, 40, 90	- 정부지원 시설 20천원, 정부미지원 시설 40천원, - 정부미지원 시설 중 평가등급(A~C) 시설 50천원 추가 지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중 월 15일 이상 근무자 20천원
제주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 150, 200	- 도시지역 200천원, 농어촌지역 90천원, 원장/취사부/운전기사 150천원 - 주당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자 - 보조교사(누리과정 8시간 근무자 포함) 제외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50	- 같은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 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대상 - 원장, 대표자, 보조교사(누리보조교사 및 도우미 포함) 제외
	읍면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수당	100	-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보전	50	- 보육교사, 국고인건비 지원을 받는 24시간 어린이집 새벽근무 보육교사 - 원장 제외 - 규모는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를 포함한 것임

- 자료: 1) 2020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p. 55, 56
 2) 2020 보육사업 시행계획(부산광역시) pp. 52, 53, 56
 3) 2020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대구광역시) p. 20
 4)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인천광역시) p. 63
 5)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2020년도 市 자체 보육사업 추진계획(광주광역시) p. 5.
 6) 대전광역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p. 500, 511-515.

- 7) 2020년도 울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pp. 19-20.
- 8) 2020년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기준(세종특별자치시)
- 9) 2020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pp. 95-104.
- 10) 2020년 보육사업안내(강원도 자체 보육사업) pp. 11, 13.
- 11) 2020년 자체 보육사업(도비) 추진 지침(충청북도) pp. 3, 8, 16.
- 12) 2020년 충청남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 안내 p. 19.
- 13) 2020년 전라북도 보육사업 지원계획 p. 10.
- 14) 2020년 어린이집 운영 도비 자체지원사업 추진계획(전라남도)
- 15) 2020년 도 보육사업 안내(경상북도) p. 11-13.
- 16) 2020년 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경상남도) p. 3.
- 17)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도비) pp. 5, 6, 8.

매월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당 이외에 간헐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시도는 광주, 대전, 강원, 경남으로 광주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교직원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대전, 강원, 경남에서는 연 2회 명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명절수당은 설과 추석에 연2회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8〉 간헐적 수당

시·도	대상	내역	주기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광주	평가제 통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평가인증 지원	연 1회	200	-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간제교사, 육아·출산휴가 대체교사 - 영양사, 간호사, 운전기사, 보조교사, 1일 대체교사, 시간연장교사 등 제외 - 시비 50% 구비 50%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명절수당	연 2회	300	- 설, 추석 수당
대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연 1회	100	- '20.3.2.부터 5.10일 동일시설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 중 의무배치 보육교직원, 대체원장 및 대체교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취사인력 - 스승의날 수당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연 2회	500	- 명절 당일 재직 중이며, 30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 중 의무배치 보육교직원, 대체원장 및 대체교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취사인력 - 설, 추석 수당
강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연 2회	100	- 설, 추석 수당
경남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연 2회	50	- 설, 추석 수당

자료: 1)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2020년도 시 자체 보육사업 추진계획(광주광역시) p. 4.
 2) 대전광역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509.
 3) 2020년 보육사업안내(강원도 자체 보육사업) p. 12.
 4) 2020년 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경상남도) p. 5.

다. 기타 인력 지원

지방 정부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지원 인력 중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력으로는 급식 관련 인력과 보조교사/보육도우미 등이 있다.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급식관련 인력을 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하고 9개 시도에서는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관련 인력은 부산, 광주 등과 같이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지원하거나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표 II-2-9〉 기타 인력 지원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
취사 인력	0	0		0	0	0			0	0				0		0	0	10
대체교사	0	0				0		0	0									5
보조교사/도우미 등	0				0		0		0	0	0	0		0		0	0	9

주: 각 시도 보육사업 관련 자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함.
 자료: 1) 서울특별시(2020).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p. 50, 57.
 2) 부산광역시(2020). 2020 보육사업 시행계획. pp. 25, 69.
 3) 인천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p. 81, 88.
 4) 광주광역시(2020).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2020년도 市 자체 보육사업 추진계획. pp. 9-11.
 5) 경기도(2020). 2020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pp. 105-108.
 6) 대전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p. 495-497.
 7) 강원도(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강원도 자체 보육사업). p. 8.
 8) 전라남도(2020). 2020년 어린이집 운영 도비 자체지원사업 추진계획. pp. 10-11.
 9) 경상남도(2020). 2020년 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경상남도). pp. 7-8.
 10) 제주특별자치도(2020).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 pp. 6-7.

〈표 II-2-10〉 급식관련 인력 지원

시·도	대상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서울	전체 어린이집	1,798,400 (원)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조리원 파견
	신규 및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기관 별 인건비 100%	-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회 승인을 통해 신규 개원하는 어린이집 - 개소 당 1명 100% 지원 - 평일 8시간 근무
부산	정부미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250	- 민간, 정부미지원 중 영유아 현원 40미만 어린이집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 B등급 취득 - 정부지원,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제외
	공공형 어린이집	300	- 월 15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근무 시

시·도	대상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인천	공공형 어린이집	820, 1,030	- 조리원 인건비 지원 - 가정/일 4시간 근로기준 적용 - 민간/일 5시간 근로기준 적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10	- 개소당 조리원 1인 지원 - (40인 이상) 일 3시간 근로기준 적용 - (39인 이하) 일 2시간 근로기준 적용
광주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250	- 10일 이상 취사부 근무 시설에 대해 지급 - 지원액 50% 이상 자부담 권장 - 시비 70% 구비 30%
	평가인증유지 가정어린이집	230	- 월 13시간 이상(1일 3시간 이내, 월 5일 이상) 근무 시설 - 지원액의 50% 이상 자부담 권장 - 시비 70% 구비 30%
	평가인증유지 민간어린이집	150	- 현원 39인 이하 어린이집 월 13시간 이상(1일 3시간 이내, 월 5일 이상) 근무 시설 지급지원액 100% 이상 자부담 준수(현원 39인 이하 어린이집 50% 권장) - 시비 70% 구비 30%
대전	전체 어린이집	100, 600, 700, 800, 900	- 공공형 어린이집 40인 이상 900천원, 40인 미만 700천원 - 평가인증 어린이집 40인 이상 800천원, 40인 미만 600천원 - 미인증 어린이집 100천원 - 시비 80% 구비 20%
경기	전체어린이집	69	-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대상 - 규모는 대체교사 수를 포함한 것임 - 도비 30% 시군비 70%
강원	공공형 어린이집	400	-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전남	공공형 어린이집	429.5	- 조리원 겸임 원장 제외 - 월 50시간 이상, 주 5일 근무 원칙 - 도비 30%, 시군비 70%
	민간가정 어린이집	429.5	- 조리원 겸임 원장 제외 - 월 50시간 이상, 주 5일 근무 원칙 - 도비 30%, 시군비 70%
경남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30, 450	- 공공형 어린이집 450천원 - 평가 A~C등급 어린이집 330만원 - 1개소 당 1명
제주	민간·가정 어린이집	450	- 규모는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를 포함한 것임

자료: 1) 서울특별시(2020).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p. 50, 57.
 2) 부산광역시(2020). 2020 보육사업 시행계획. pp. 25, 69.
 3) 인천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p. 81, 88.
 4) 광주광역시(2020).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2020년도 市 자체 보육사업 추진계획. pp. 9-11.
 5) 경기도(2020). 2020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pp. 105-108.
 6) 대전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p. 495-497.
 7) 강원도(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강원도 자체 보육사업). p. 8.
 8) 전라남도(2020). 2020년 어린이집 운영 도비 자체지원사업 추진계획. pp. 10-11.
 9) 경상남도(2020). 2020년 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경상남도). pp. 7-8.
 10) 제주특별자치도(2020).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 pp. 6-7.

〈표 II-2-11〉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시·도	대상	규모 (명)	주기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서울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수시	2,243 /월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 최대 5일
부산	보육교사	70	수시		- 시간제 대체교사 68명, 관리요원 2명 - 1일 4시간, 주 20시간 지원(월~금 연속 근무) - 어린이집별 월 2회, 연중 20회 이내 - 총 예산 980.4백만원
대전	담임교사	80	수시	68,720 /일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대상 - 시비 50%, 구비 50%
세종	보육교사	45	수시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35명, 어린이집 개별채용 12명 - 예산 916,000천원
경기	보육교직원	24,205	수시	82 /일	- 보육교사 82천원 - 규모는 조리원 수를 포함한 것임 -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대상 - 도비 30% 시군비 70%

자료: 1) 2020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 49.
 2) 2020 보육사업 시행계획(부산광역시) pp. 62, 99.
 3) 대전광역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499.
 4) 2020년도 보육시행 계획안(세종특별자치시) pp. 15-16.
 5) 2020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pp. 105-108.

〈표 II-2-12〉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시·도	대상	내역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서울	국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1,002/월	- '19년 12월까지 시비보조 교사 지원 받은 어린이집 기준(조건 되는 경우 국비지원으로 전환)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규모는 '19년 12월 기준 인원 중 국비로 전환된 경우 제외 (국비지원 중복 불가)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 4대 보험 본인 부담 - 시비 50% 구비 50%
	국비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어린이집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501/월	- 취약보육/연장보육 지원받는 어린이집 우선 - 4대 보험 본인, 사용자 부담금 어린이집 부담 - 1개소 당 1명
	서울시 어린이집관리 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897/월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 4대보험 본인, 사용자 부담금 어린이집 부담 - 급식(조리)지원: 민간(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청소지원: 전체어린이집 - 1개소 당 1명

시·도	대상	내역	단가 (천원)	세부 지원기준
대전	전체 어린이집	보조인력	25,770/일	- 하루 3시간 근무 기준 - 1개소 어린이집에 6개월 지원
세종	평가등급 A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662	- 1일 4시간 이상 필수 근무, 초과 시 어린이집 자부담
강원	법정배치인력 기준 준수 어린이집	보조인력	자부담금	- 월 500천원 이내 자부담금 지원 - 일 2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 시 - 조리, 운전, 사무, 간호, 영양, 위생, 통학차량 보조인력 등
충북	전체 어린이집	보조교사	1,002/월	- 국비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제외
	전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927/월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결과 A, B등급, 정원충족률 50% 이상 - 근무중인담임교사가 임산부인 어린이집 우선 배정 - 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부담
충남	전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896, 1,344	- 1일 6시간 20일 근무(가정어린이집) 최대 1,344천원 지원 - 1일 4시간 20일 근무(그 외 어린이집) 최대 896천원 지원 - 도비 30% 시군비 70%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안전도우미	896	- 1일 4시간, 월 20시간 이상 근무 시 - 도비 30% 시군비 70%
전북	전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100, 200	- 기본 100천원, 가정어린이집 200천원,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200천원, 농어촌 정원 60인 이하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200천원, 농어촌특례로 원장 보육교사 겸직 민간 어린이집 200천원 - 지원일 기준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경북	전체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901,950 (원)	- 4대보험 본인 부담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시
제주	간호사 (간호조무사) 배치 어린이집	간호사 (간호조무사)	100	- 주당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자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전기사	450	- 규모는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를 포함한 것임

- 자료: 1) 2020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p. 51-52.
 2) 대전광역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 498.
 3) 2020년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기준(세종특별자치시)
 4) 2020년 보육사업안내(강원도 자체 보육사업) pp. 16-17.
 5) 2020년 자체 보육사업(도비) 추진 지침(충청북도) pp. 14-15.
 6) 2020년 충청남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 안내 pp. 16, 31.
 7) 2020년 전라북도 보육사업 지원계획 pp. 8-9.
 8) 2020년 도 보육사업 안내(경상북도) pp. 17.
 9)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도비) pp. 6, 15-16.

3. 보육재정

0~2세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제도가 안착된 이후인 2015년까지 연도별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3-1>과 같다. 2010~2015년 기간 동안 ECEC 분야의 재정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 지자체 특수시책을 포함하여 6조 1천 억 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2015년 13조 8천 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3~5세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수치로 2015년 기준으로 GDP 대비 1%에 근접하게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1> 연도별 유아교육·보육 예산

단위: 억 원,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금액(억원)	61,411	73,299	86,845	121,887	130,341	138,414
	1인당(원)	2,262,532	2,666,210	3,118,903	4,367,268	4,750,738	5,066,217
	증가율(%)	-	19.36	18.48	40.35	6.94	6.19
정부 사업	금액(억원)	49,404	57,568	76,956	111,524	119,497	123,046
	1인당(원)	1,820,165	2,094,004	2,763,755	3,995,957	4,355,490	4,503,718
	증가율(%)	-	16.52	33.68	44.92	7.15	2.97
지자체 특수시책	금액(억원)	12,007	15,731	9,889	10,363	10,844	15,368
	1인당(원)	442,367	572,206	355,148	371,311	395,248	562,498
	증가율(%)	-	31.02	-37.14	4.79	4.64	41.72
GDP 대비 ECEC 예산	비중	0.49	0.55	0.63	0.85	0.88	0.89

자료: 최성은(2019). 보육 및 자녀양육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재정포럼, 2019(7). p. 11.

가. 중앙 정부 사업 예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 보육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3-2>와 같다. 중앙 정부의 보육사업 예산은 2015년 3조 9,747억 원에서 매해 증가하여 2020년 5조 571억 원에 이르렀다. 보육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중앙 정부 전체 예산 3조 9천 7백억 원 중 3조 넘는 예산이 영유아 보육료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중앙 정부 보육사업 예산은 총 5조 5백억 원 수준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 4천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1조 4천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II-3-2〉 중앙 정부 보육사업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452	31,885	31,380	32,672	34,163	34,328
-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377	31,066	31,292	32,575	34,056	34,162
-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75	120	88	97	110	166
•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675	367	288	742	794	945
- 어린이집 기능 보강	340	64	64	58	105	197
- 어린이집 확충	334	302	224	684	688	748
• 어린이집 관리	266	309	248	260	320	426
- 보육사업 관리	14	78	33	40	38	40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9	113	95	89	118	165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0	27	27	28	28	25
- 보육실태조사	8	-	-	7	-	-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3	12	12	11	9	13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2	2	2	2	2	2
-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98	77	79	82	118	170
-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	-	-	-	7	11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62	-	-	-	-	-
• 어린이집 지원	7,354	8,655	9,577	10,487	12,497	14,872
- 공공형 어린이집	441	487	558	610	629	630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6,913	8,168	9,017	9,877	11,868	14,242
계	39,747	41,216	41,493	44,161	47,774	50,571

자료: 1) 최성은(2019). 보육 및 자녀양육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재정포럼, 2019(7). p. 12~13.
 2)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중앙 정부 보육사업 예산은 3~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제외된 수치이다.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2012년 무상보육 확대 및 2013년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점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이관되었다가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중앙의 재정분담 주체에 관한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2017년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규 도입되어 재이관되었고(최성은, 2019: 12) 3년 한시로 도입된 특별회계는 2019년 연장되어 현재 어린이집 3~5세의 누리과정 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다.

보육 예산 전체에서 사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2015년 79.1%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후 전체 사업예산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예산 비중은 매해 조금씩 감소하여 2020년 67.9%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투입되는 재정은 2015년 전체 예산의 17.4%에서 2020년 28.2%까지 증가하였다.

〈표 II-3-3〉 중앙 정부 보육사업별 비중

단위: %

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79.1	77.4	75.6	74.0	71.5	67.9
- 영유아 보육료 지원	78.9	75.4	75.4	73.8	71.3	67.6
-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0.2	0.3	0.2	0.2	0.2	0.3
•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1.7	0.9	0.7	1.7	1.7	1.9
- 어린이집 기능 보강	0.9	0.2	0.2	0.1	0.2	0.4
- 어린이집 확충	0.8	0.7	0.5	1.5	1.4	1.5
• 어린이집 관리	0.7	0.7	0.6	0.6	0.7	0.8
- 보육사업 관리	0.0	0.2	0.1	0.1	0.1	0.1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0.1	0.3	0.2	0.2	0.2	0.3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0.1	0.1	0.1	0.1	0.1	0.0
- 보육실태조사	0.0	-	-	0.0	-	-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0.0	0.0	0.0	0.0	0.0	0.0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0.0	0.0	0.0	0.0	0.0	0.0
-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0.2	0.2	0.2	0.2	0.2	0.3
-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	-	-	-	0.0	0.0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0.2	-	-	-	-	-
• 어린이집 지원	18.5	21.0	23.1	23.7	26.2	29.4
- 공공형 어린이집	1.1	1.2	1.3	1.4	1.3	1.2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17.4	19.8	21.7	22.4	24.8	2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II-3-2〉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영유아 보육료는 매해 인상되는 금액만큼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보조교사 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1인당 지원단가로 결정되는 보육료는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만큼 지원 단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업별 예산 비중을 살펴봤을 때, 교사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보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에 투입되는 재정은 매해 전체 예산 중 2% 미만 수준이며 금액 자체에서도 신규확충 예산이 아닌 기능보강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2015년 34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2016~2018년 동안에는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보육사업 항목별 예산 변화를 고려할 때, 보육 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책정이 여전히 낮아 향후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보육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지방비는 17개 시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
나 평균보조율을 근거로 추정하였을 때 다음 <표 II-3-3>과 같다. 2019년까지의
평균보조율을 참고하여 2020년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지방비는 약 2조 4천 억 원
으로 추산되는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3-4> 보건복지부 사업 부문 국고보조사업 매칭 지방비

단위: 억 원

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803	14,678	14,769	15,378	16,079	16,156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766	14,320	14,726	15,330	16,025	16,075
-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37	59	43	48	54	81
•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452	246	193	497	532	635
- 어린이집 기능 보강	228	43	43	39	71	133
- 어린이집 확충	224	203	150	459	462	502
• 어린이집 지원	3,635	4,279	4,734	5,184	6,182	7,361
- 공공형 어린이집	200	221	254	277	286	286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3,435	4,058	4,480	4,907	5,896	7,075
총계	18,890	19,203	19,696	21,059	22,793	24,152

주: 1) 지방비는 평균보조율을 근거로 추정.
2) 2020년 예산은 2019년까지의 자료의 국고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수치임.
자료: 1) 최성은(2019). 보육 및 자녀양육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재정포럼, 2019(7). p. 12~13.
2)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나. 지방 정부 사업 예산

지방 정부에서 특수보육시책으로 추진하는 보육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8년 보
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제시한 것이 현재 수집 가능한
자료로 시점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
는 보육사업과 전체 예산 규모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기준으로 지방 정부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천억 원
이며 이중 시·도 차원의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이 9천억 원, 시·군·구 특수보육
시책 사업 예산이 3천억 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지
원하고 있는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광역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
업 예산이 76% 수준이고 기초 단위에서 지원하는 사업 예산 규모는 24%로 나타났
다. 17개 시도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사업 예산 비중이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 부

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는 광역 단위의 사업 예산이 70% 이상인 반면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는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과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의 예산 비중이 시군구 단위에서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5〉 지방 정부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전체	
전체	918,177	(76.0)	290,539	(24.0)	1,208,716	(100.0)
서울	241,492	(77.1)	71,527	(22.9)	313,018	(100.0)
부산	25,558	(83.6)	5,008	(16.4)	30,566	(100.0)
대구	12,900	(76.3)	4,018	(23.7)	16,918	(100.0)
인천	53,328	(78.9)	14,280	(21.1)	67,608	(100.0)
광주	12,567	(88.8)	1,587	(11.2)	14,154	(100.0)
대전	29,269	(95.9)	1,244	(4.1)	30,513	(100.0)
울산	11,973	(66.7)	5,965	(33.3)	17,938	(100.0)
세종	11,591	(100.0)	-	-	11,591	(100.0)
경기	353,406	(80.5)	85,494	(19.5)	438,901	(100.0)
강원	14,413	(64.5)	7,915	(35.4)	22,329	(100.0)
충북	8,687	(25.2)	25,803	(74.8)	34,491	(100.0)
충남	41,800	(73.2)	15,340	(26.8)	57,140	(100.0)
전북	13,339	(68.8)	6,060	(31.2)	19,400	(100.0)
전남	8,150	(45.8)	9,639	(54.2)	17,789	(100.0)
경북	35,864	(65.3)	19,040	(34.7)	54,905	(100.0)
경남	20,839	(54.2)	17,618	(45.8)	38,457	(100.0)
제주	23,000	(100.0)	-	-	23,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8). 2018 지방 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p. 46.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사업 유형에 따른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교직원 처우개선과 인건비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50% 넘게 나타나 전체 중앙 정부 사업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15.7%, 보육비용 14.0% 순으로 나타났고 지방 정부의 특수보육시책 사업에서도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 미만으로 나타나 중앙 정부의 사업 예산 구조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즉,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을 위한 예산 보다는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6〉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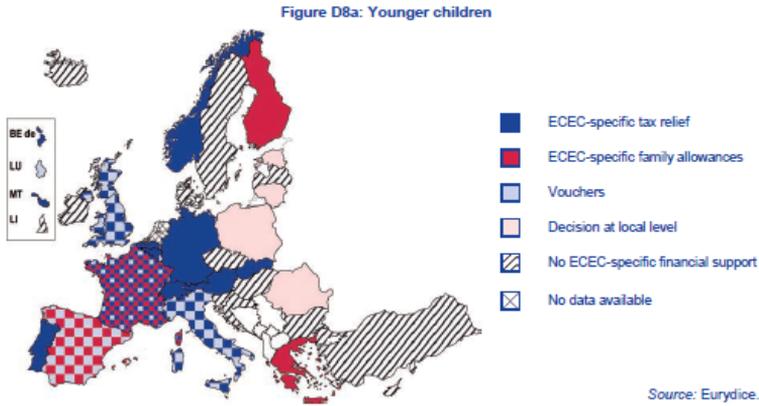
구분	보육비용	교직원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운영지원	공인시설 지원	환경개선 지원	취약보육 지원	교육·연수 등	전체
전체 (비율)	169,713 (14.0)	534,750 (44.2)	110,835 (9.2)	190,046 (15.7)	140,409 (11.6)	19,278 (1.6)	38,891 (3.2)	4,793 (0.4)	1,208,716 (100.0)
서울	39,756	108,879	11,316	49,232	94,938	1,650	6,681	569	313,019
부산	2,958	17,464	4,566	3,190	572	1,028	547	239	30,566
대구	1,407	11,679	924	1,346	28	730	546	258	16,918
인천	7,792	29,769	679	23,472	3,677	1,049	935	235	67,608
광주	1,859	7,101	1,803	3,034	261	0	26	70	14,154
대전	2,580	18,638	932	2,705	0	0	5,618	41	30,513
울산	632	9,419	1,802	1,470	0	1,081	3,282	253	17,938
세종	975	7,433	1,566	1,317	0	280	0	19	11,591
경기	84,410	193,370	45,655	54,795	38,242	8,150	13,871	409	438,900
강원	5,151	10,280	2,630	2,332	576	721	211	428	22,328
충북	6,833	15,401	1,270	8,824	24	588	1,393	157	34,490
충남	4,916	26,435	16,118	6,881	821	540	1,070	359	57,140
전북	1,387	12,567	2,027	2,720	0	178	287	234	19,399
전남	4,017	6,683	2,651	2,200	436	304	1,192	305	17,789
경북	1,341	25,339	9,948	15,475	2	1,124	1,248	427	54,904
경남	3,655	20,292	6,245	6,295	7	728	774	463	38,457
제주	46	14,004	700	4,759	824	1,128	1,212	328	23,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8). 2018 지방 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p. 50.

4. 해외 보육 비용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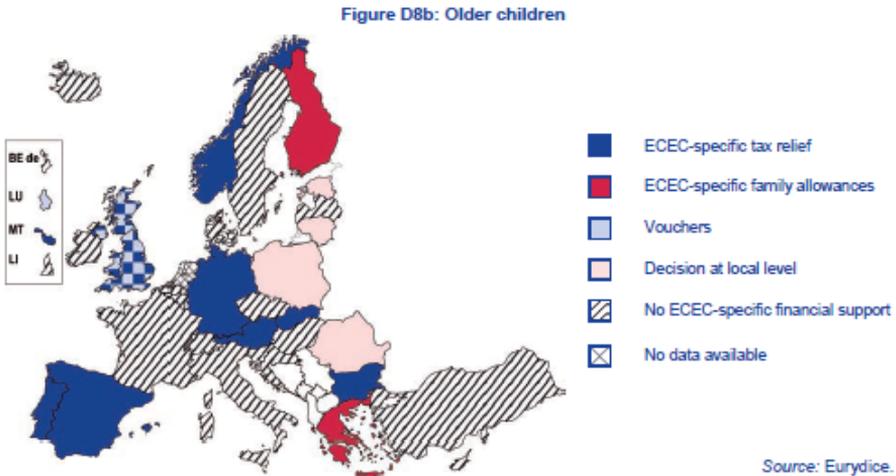
2012/13 기간 동안의 EU 국가의 ECEC 비용지원 설계는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유럽연합의 European Commission(2014: 90)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에게 제공되는 비용지원의 방식은 세금감면, 수당, 바우처 지급,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 ECEC 비용지원 없음으로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그림 II-4-1, 그림 II-4-2 참고).

[그림 II-4-1] 영아 부모에게 제공되는 ECEC 비용지원 방식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p.90.

[그림 II-4-2] 유아 부모에게 제공되는 ECEC 비용지원 방식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p.90.

2019년 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에 의하면 유럽의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ECEC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비용이 높은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표 II-4-1 참고)이며 스위스는 지방수준의 비용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비용 규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1〉 3세 미만 아동의 월평균 비용 및 규제

단위: 세, 시간

국가	구매 평준화 기준 (PPS)	국가 통화	비용 규제
벨기에-프랑스공동체	-	-	있음
벨기에-독일어공동체	-	-	있음
벨기에-플람어공동체	258	285	있음
불가리아	37	36	있음
체코	138	2443	없음
덴마크	213	2100	있음
독일	-	-	지방수준규제
에스토니아	54	41	있음
아일랜드	683	771	없음
그리스	-	-	없음
스페인	65~361	59~328	있음
프랑스	131~247	133~301	있음
헝가리	129	617	지방수준규제
이탈리아	-	-	지방수준규제
사이프러스	112~503	100~450	없음
라트비아	무상	무상	무상
리투아니아	무상	무상	지방수준규제
룩셈부르크	198	242	있음
헝가리	0~156	0~30000	있음
말타	무상	무상	무상
네덜란드	511	572	없음
오스트리아	90~398	100~440	있음
폴란드	-	-	지방수준규제
포르투갈	-	-	없음
루마니아	무상	무상	있음
슬로베니아	191	155	있음
슬로바키아	-	-	없음
핀란드	0~233	0~289	있음
스웨덴	0~110	0~1382	있음
영국-잉글랜드	1090	1067	없음
영국-웨일스	1032	1010	없음
영국-북아일랜드	-	-	없음
영국-스코틀랜드	715	700	없음
알바니아	44	2600	지방수준규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35	130	있음
스위스	0~1420	0~2400	지방수준규제
아이슬란드	-	-	지방수준규제
리히텐슈타인	-	-	없음
몬테네그로	40~79	20~40	있음
북마케도니아	67	1840	있음
노르웨이	0~204	0~2910	있음
세르비아	0~96	0~5590	있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p. 58.

EU 국가의 ECEC 비용지원은 3세를 기준으로 무료로 전환 국가들이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3세를 기준으로 비용지원이 시작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독일, 라트비아,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를 제외하면 주당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4-2〉 ECEC 무료 전환 시기와 주당 보장 시간

단위: 세, 시간

국가	연령 (세)	주당 시간 (시간)
벨기에-프랑스공동체	2.5	23
벨기에-독일어공동체	3	12
벨기에-플람어공동체	2.5	23
불가리아	5	15~24
체코	5	32.5~60
독일	no top-level regulation	상한선 없음
아일랜드	2.7	15
그리스	4	25~50
스페인	3	25
프랑스	3	24
이탈리아	3	25~50
사이프러스	4.7	26
라트비아	1.5	상한선 없음
리투아니아	0	20
룩셈부르크	1	20
헝가리	3	온종일
네덜란드	4	상한선 없음
오스트리아	5	20
폴란드	3	25
포르투갈	3	25
루마니아	0.3	40
슬로바키아	5	온종일
핀란드	6	20
스웨덴	3	(15)
영국-잉글랜드	3	15~32
영국-웨일스	3	10~32
영국-북아일랜드	3	12.5
영국-스코틀랜드	3	16
알바니아	3	20~3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6	(4~5)
스위스	4	10~20
리히텐슈타인	4	21
몬테네그로	0	30~45
세르비아	5.5	2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p. 55.

OECD 회원국의 평균 임금에서 보육료로 순수 지출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은 25% 수준이며 다음에 살펴볼 핀란드 16%, 스웨덴 7%, 노르웨이 11%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한국도 14%로 전체 OECD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임금에서 보육료 순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4-3〉 OECD 회원국의 평균 임금에서 보육료 순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18년)

단위: %

국가	총보육비	보육료지원/환급	조세감면	기타수혜	순보육비	순보육비(가구 순소득 대비 비중)	
						평균 임금의 67%	평균임금
호주	56	18	0	0	38	23	33
오스트리아	3	0	0	0	3	3	2
벨기에	19	0	3	0	16	9	14
캐나다	36	-6	8	2	32	13	24
체코	14	0	14	0	0	3	0
덴마크	13	2	0	0	11	12	9
에스토니아	6	0	0	0	6	4	3
핀란드	16	2	6	-14	22	15	18
프랑스	19	0	3	0	16	9	12
독일	10	3	1	0	6	6	4
그리스	8	2	0	0	6	5	5
헝가리	5	0	0	0	5	16	3
아이슬란드	6	1	0	0	5	6	4
아일랜드	39	11	0	0	28	24	22
이스라엘	11	0	0	0	11	9	7
이탈리아	8	3	0	0	5	1	4
일본	47	12	0	0	35	18	28
한국	14	14	2	-5	3	4	2
라트비아	13	0	0	0	13	11	9
리투아니아	17	2	0	0	15	12	9
룩셈부르크	42	10	4	0	28	2	21
네덜란드	59	35	0	0	24	14	21
뉴질랜드	51	14	0	0	37	25	30
노르웨이	11	2	2	0	7	7	6
폴란드	19	4	0	0	15	14	10
포르투갈	25	14	3	0	8	4	5
슬로바키아	9	5	0	-22	26	22	17
슬로베니아	48	35	0	-1	14	11	11
스페인	19	13	0	0	6	5	4
스웨덴	7	2	0	0	5	5	4
스위스	69	22	5	0	42	14	41
터키	0	0	0	0	0	0	0
영국	61	26	0	0	35	31	29
미국	35	0	2	0	33	20	26

국가	총보육비	보육료지원/환급	조세감면	기타수혜	순보육비	순보육비(가구 순소득 대비 비중) 평균 임금의 67%	평균임금
OECD 평균	25	9	1	-1	16	11	10
불가리아	10	3	0	0	7	8	5
크로아티아	15	9	0	0	6	3	4
사이프러스	4	0	0	0	4	3	2
말타	0	0	0	0	0	0	0
루마니아	0	0	0	0	0	15	0

주: 1. 순보육비는 2~3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종일제 맞벌이 부부(연령 40세)로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평균 임금, 1인의 소득은 평균 임금 수준의 67%에 달하는 가구의 총보육비에서 복지비용을 뺀 값임.
 2. 순보육비 평균 임금의 67%는 2~3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종일제 맞벌이 부부(연령 40세)로 부부의 소득이 평균 임금 수준의 67%에 달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임.
 3. 순보육비 평균임금은 2~3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종일제 맞벌이 부부(연령 40세)로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평균 임금, 1인의 소득은 평균 임금 수준의 67%에 달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임.
 자료: OECD.Stat, OECD Benefits, Taxes and Wages Database, Net childcare cost for parents using childcar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NCC#> (2020. 6. 19. 인출)

가. 스웨덴¹³⁾

스웨덴은 미취학 아동의 교육과 보육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는 국가로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부터 주어진다. 스웨덴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영유아 교육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대부분의 스웨덴 부모들은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16개월의 휴직 기간을 사용하고 바로 영유아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영유아 연령에 따라 ECEC 지원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4-4>와 같다. 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 있는 스웨덴에서는 교육연구부에서 ECEC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취학 전 6세는 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preschool class에서 의무 교육 과정에 이용하고 1-5세의 영유아는 preschool, pedagogical care, open preschool 중 선택하여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13) 박진아·김근진·이사라·김인경(2019). 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3장 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고 수치를 업데이트함.

〈표 II-4-4〉 스웨덴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보육·교육 지원

관할 부처	지원 방식	선택 사항	아이 연령	기관 이용 권리 및 의무	
				부모가 근로 및 학업 중, 아동 필요 시	부모가 실업중, 육아휴직 중
교육연구부	가구소득, 기관 이용 자녀 수,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 단 3세부터는 연 525시간이 무상으로 이후 시간은 파트타임 비용으로 납부	Preschool	1~5세	필요한 만큼 지자체가 preschool 혹은 pedagogical care 이용 권리 보장	최소 일 3시간, 주 15시간 지자체가 preschool 혹은 pedagogical care 이용 보장
	가구소득, 기관, 이용 자녀 수,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 단 3세부터는 연 525시간이 무상으로 이후 시간은 파트타임 비용으로 납부	Pedagogical care			
	무료	Open preschool			
	연 525시간 무료	Preschool class	6세	의무 교육	
	Preschool class 이후 시간대 이용하며, 지자체가 비용 결정	Leisure -time centre		Preschool class 하원 후 필요 시 이용	

자료: 박진아 외(2019). 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표 III-3-4, p.52. 교육부·세종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스웨덴 ECEC 기관의 비용지원 방식은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preschool과 pedagogical care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가구소득, 기관 이용 자녀 수, 이용 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다음 〈표 II-4-5〉에서와 같이 2020년 스웨덴의 부모 소득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2020년 기준 월 49,270SEK를 기준으로 이 액수보다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은 상승하지 않고 기준 금액 이하로 비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표 II-4-5〉 2020년 스웨덴 preschool 및 pedagogical care 이용 시 부모부담액

기관 이용 자녀 (어릴수록1)	Full time		Part time	
	가구소득 대비	부담 상한액 (SEK/월)	가구소득 대비	부담 상한액 (SEK/월)
1번째	3%	1,478	2%	986
2번째	2%	986	1%	493
3번째	1%	493	1%	493
4번째	무상	-	무상	-

자료: Stockholms Förskola(스톡홀름 시 preschool), <https://forskola.stockholm>. (2020. 11. 10. 인출)

스웨덴에서는 3세부터는 일 3시간 주 15시간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국가 지원 시간을 초과하여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파트타임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나. 핀란드¹⁴⁾

핀란드는 모든 아동에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들이 기관을 다님으로써 성장, 발달, 배움을 경험하고 사회적 성공에 이르기 위한 출발선이 동등하기를 지향하는 한편 ECEC 정책을 고용정책의 하나로써 남녀 모두 동등하게 학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누리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박진아 외, 2019: 42).

교육과 보육을 관리하는 행정체계는 교육문화부로 일원화되어 있고 설립 주체에 따라 지원 방식에는 차이는 보이고 있다. 핀란드의 ECEC 기관은 시설형(päiväko deissa(center-based)), 가정형(perhepäivähoidossa(family-based)), 개방형(open)으로 구분되고 운영 주체가 지자체인지 민간 기관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 혹은 모 중 1인 또는 고용된 돌보미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3세가 되는 시점까지 사회보험료로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3세가 넘더라도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아래 형제가 3세 미만으로 양육수당을 받는다면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이는 가정에서의 직접 돌봄 지원이나 돌보미 고용 비용 보조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가구에서 지자체에 보육·교육 기관 이용을 요청할 경우 자리를 마련해

14) 박진아 외(2019). 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3장 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고 수치를 업데이트함.

줄 의무를 지니고 있어 이용 수요를 낮추기 위해 지자체에 따라 양육수당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다.

〈표 II-4-6〉 핀란드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보육·교육 지원

관할 부처	부모 지원 방식		선택 사항	아이 연령	기관 이용 권리 및 의무	
					부모가 근로 및 학업 중 아동 필요 시	그 외
양육수당 → 사회보험청 개방형 기관 → 교육문화부	고정액에 가구소득과 지자체에 따라 추가금 지자체 개방형 기관은 무료, 민간 개방형 기관은 바우처로 이용		양육수당*+ 개방형 기관	출산휴가·육아 휴직 종료 후 (통상 9개월)-5세	시설형 및 가정형 기관 전일제 이용 보장	시설형 및 가정형 기관 최소 중 20시간 기관이용 보장
교육문화부	부모부담액은 1) 가구소득, 2) 자녀 출생 순위, 3) 이용 시간에 따라 상이	지원 방식이 두 유형 간 다름	지자체 기관			
	부모부담액은 기관이 결정하며, 1) 가구소득, 2) 지자체에 따라 부모지원액이 상이		민간 기관			
	무상으로 일 평균 4시간, 연 700시간 제공, 부모 및 가구여건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으며 추가 시간 이용 가능		시설형 및 가정형	6세	의무 교육	

주: *양육수당을 받는 3세 미만의 형제가 있으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3~5세는 양육수당 수령 가능
자료: 박진아 외(2019). 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표 III-3-3, p.47. 교육부·세종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핀란드에서는 부모가 근로 및 학업중이거나 기관 이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형 또는 가정형 기관 전일제 이용을 보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주 20시간의 기관 이용 시간을 보장하며 6세는 의무교육을 일평균 4시간 연 700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시설형과 가정형 기관을 다니는 영유아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구소득, 자녀 출생순위, 기관 이용 시간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비용이 높고,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이 더 낮아지게 된다. 또한 자녀의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부모 부담액이 높고

기관 이용시간이 길수록 부모 부담액이 높아지는데 부모 부담액 산출 방식은 1)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소득으로 막내아 기준 종일제 비용 산출하고 2) 자녀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일정 비율 비용이 낮아지고 3) 이용 시간에 따라 비율로 적용되어 부모 부담액을 산출할 수 있다.

〈표 II-4-7〉 2020년 핀란드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종일제 이용 시 부모 부담액 산출방식: 최연소 자녀 기준

가구원 수	최저 월 가구소득(유로)	조정 비율 %	최고 월 가구소득(유로)
2	2,136	10.7	4,823
3	2,756		5,443
4	3,129		5,816
5	3,502		6,189
6	3,874		6,561

주: 가구원수가 6명보다 많으면 1명 증가 시마다 144 유로를 더하면 된다. 만일 가구소득이 최저액보다 낮거나 혹은 (실제 월 가구소득-최저 월 가구소득)*0.107이 27보다 낮으면 부모부담액은 0유로가 됨.

자료: Helsingin Kaupunki(헬싱키 시), <http://www.hel.fi> (2020. 11. 10. 인출)

다. 노르웨이¹⁵⁾

노르웨이도 앞서 살펴본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보육이 교육연구부로 일원화되어 있다. 노르웨이 유치원은 0~5세를 대상으로 하고 6세부터는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노르웨이에서도 자녀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 기간과 연계하여 유치원 입소 권리가 정해지며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 20시간까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연구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노동복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유치원은 일반유치원(Ordinær barnehage(ordinary kindergarten)), 가정유치원(familie barnehage(family kindergarten)), 개방형 유치원(åpne barnehage(open kindergarten))으로 세 종류가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노르웨이 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지자체유치원과 민간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유치원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은 동일하게 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역의 아동수를 추계하여 유치원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유아학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이 수준은

15) 박진아 외(2019). 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3장 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고 수치를 업데이트함.

2020년 기준 3,135NOK이다. 부모가 부담하는 상한액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지원 방식은 가구소득과 기관 이용 자녀수, 이용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며 저소득 가구의 3~5세 아동에게는 매주 20시간씩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4-8〉 노르웨이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보육·교육 지원

관할 부처	부모 지원 방식	선택 사항	아이 연령	기관 이용 권리 및 의무
노동복지청	고정액 지급 주 20시까지 공적 자금 지원 기관 이용 시 50% 수급	양육수당	1살 이후 2살 전	
교육연구부	가구소득, 기관 이용 자녀 수,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 단 3~5세 저소득 가구는 주 20시간까지 무상	일반유치원	1~5세	기관 입소 신청 시 이용 권리 보장
	방문 시 10~40크로나 지급	가정유치원 개방형 유치원		Drop-in 방식으로 유치원 등록 대기 및 유치원 미등록 시 이용

자료: 박진아 외(2019). 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표 III-3-8, p. 59. 교육부·세종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III

재정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실태 분석

- 01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
- 02 어린이집 이용 행태 변화
- 03 소결 및 시사점

Ⅲ. 재정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실태 분석

본 장에서는 보육정책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률, 영유아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이용비용, 만족도 등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어린이집 공급률 등의 행정통계와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조사한 보육실태조사 가구용 자료이다.

1.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

어린이집은 2000년 1만 9,276개소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전면적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3년 4만4,770개소로 최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어린이집은 3만 7,371개소였다. 지난 20년 동안 어린이집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원인은 가정 어린이집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표 Ⅲ-1-1〉 연도별 어린이집 공급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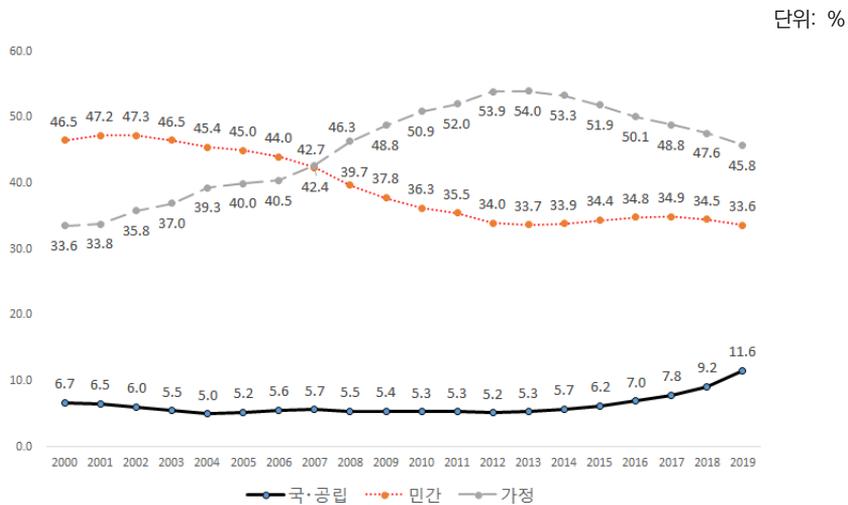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미분류	204
2001	20,097	1,306	1,991	313	9,490	6,801	미분류	196
2002	22,147	1,330	1,633	575	10,471	7,939	미분류	199
2003	24,142	1,329	1,632	787	11,225	8,933	미분류	236
2004	26,903	1,349	1,537	966	12,225	10,583	미분류	243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미분류	204
2001	20,097	1,306	1,991	313	9,490	6,801	미분류	196
2002	22,147	1,330	1,633	575	10,471	7,939	미분류	199
2003	24,142	1,329	1,632	787	11,225	8,933	미분류	236
2014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2015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2016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2017	40,238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2018	39,171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2019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p. 23.

가정 어린이집은 총 개소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가장 높다. 전체 어린이집 중 민간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6.5%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33.6%에 그쳤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5% 전후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재정 투자가 집중되면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9년 기준 11.6%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III-1-1] 연도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비중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p. 25 <표 2-2>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출.

한편, 전체 어린이집 중 가정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3.6%였으나 2007년에 민간 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3년 53.0%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가정 어린이집의 개소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전체 어린이집에서 가정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가정 어린이집의 비중은 45.8%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도 훨씬 빠른 속도로 가정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이용자 수는 2000년 68만 6,000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4년도에 149만 6,671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9년 기준 136만 5,085명이었다.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자 수는 2019년 기준 민간 어린이집이 66만 4,106명으로 가장 많으며, 가정 어린이집(27만 3,399명), 국공립 어린이집(23만 2,123명) 순이었다.

〈표 III-1-2〉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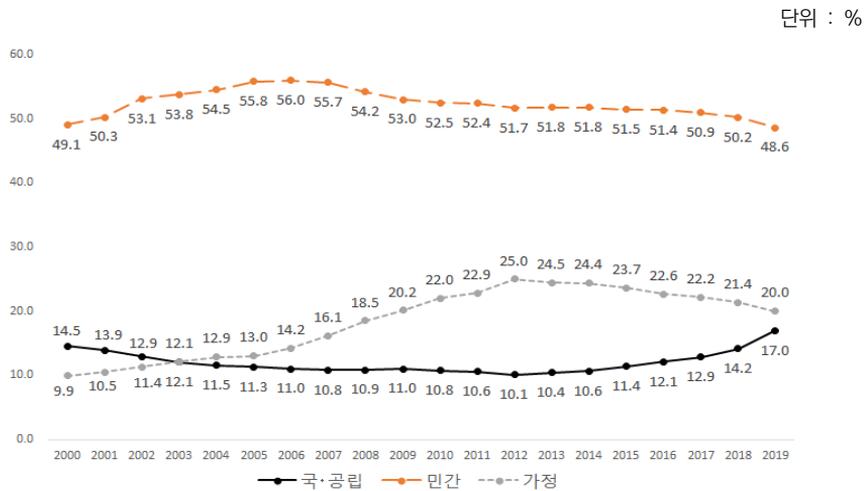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미분류	7,807
2001	734,192	102,118	161,419	16,483	369,044	77,247	미분류	7,881
2002	800,991	103,351	142,035	30,289	425,647	90,939	미분류	8,730
2003	858,345	103,474	140,994	37,911	461,640	103,935	미분류	10,391
2004	930,252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9,787	미분류	11,787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2008	1,135,50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2013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2014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2015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2016	1,451,215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2017	1,450,243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08	58,454
2018	1,415,742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2019	1,365,085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p. 25.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자 비중은 민간 어린이집이 50% 전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2년도 가장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후 감소세를 보이는데 반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자 비중은 2000년 이후 살짝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그림 III-1-2] 연도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이용자 비중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p. 23 <표 2-4>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출.

전체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는 어린이집 이용률은 2000년 14.7%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50.1%에 달하였다. 어린이집 이용률은 어린이집 공급이나 이용자 수와는 달리 감소세를 전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 이후 어린이집 이용자 수의 감소가 출산율 저하에 기인한 현상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설립유형별로는 민간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 2019년 기준 24.4%였으며, 다음으로 개소수가 가장 많은 가정 어린이집이 10.0%, 국공립 어린이집 8.5% 순이었다. 이때 민간 어린이집의 이용률은 2000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는 하나 무상 보육 실시 시기인 2012년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정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를 엿볼 수 있었다.

〈표 III-1-3〉 연도별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률

단위: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2000	14.7	2.1	3.4	0.3	7.2	1.5	미분류	0.2
2001	16.3	2.3	3.6	0.4	8.2	1.7	미분류	0.2
2002	18.7	2.4	3.3	0.7	9.9	2.1	미분류	0.2
2003	21.0	2.5	3.4	0.9	11.3	2.5	미분류	0.3
2004	23.9	2.8	3.5	1.2	13.0	3.1	미분류	0.3
2005	26.8	3.0	3.4	1.5	15.0	3.5	0.03	0.4
2006	29.6	3.3	3.4	1.7	16.6	4.2	0.04	0.4
2007	32.6	3.5	3.5	1.7	18.2	5.3	0.04	0.4
2008	34.6	3.8	3.5	1.6	18.8	6.4	0.05	0.5
2009	36.4	4.0	3.5	1.6	19.3	7.3	0.1	0.6
2010	39.9	4.3	3.6	1.6	20.9	8.8	0.1	0.7
2011	42.0	4.5	3.5	1.6	22.0	9.6	0.1	0.8
2012	45.6	4.6	3.5	1.6	23.5	11.4	0.1	0.9
2013	45.6	4.7	3.3	1.6	23.6	11.2	0.1	1.1
2014	46.6	5.0	3.3	1.5	24.2	11.4	0.1	1.2
2015	45.6	5.2	3.1	1.5	23.5	10.8	0.1	1.4
2016	46.0	5.6	3.1	1.4	23.6	10.4	0.1	1.7
2017	47.6	6.1	3.2	1.4	24.3	10.6	0.1	1.9
2018	48.7	6.9	3.2	1.4	24.5	10.4	0.2	2.2
2019	50.1	8.5	3.2	1.4	24.4	10.0	0.2	2.4

주: (어린이집 이용자 수/아동 수) *100으로 산출.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p. 29.

연령별로는 2019년 기준 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91.3%로 매우 높았으며, 1세 81.1%, 3세 54.1% 순이었다. 3세 이후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유치원으로의 분산 때문으로 사료되며, 0세아의 경우에는 보육기관 이용 자체가 많지 않은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이 집계되기 시작한 2002년에는 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도 22.2%에 그쳤으나,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2년 83.5%까지 증가하였고, 이후로도 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1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나, 3세 이상의 유아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기에는 하나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4〉 연도별 어린이집 연령별 이용률

구분	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02	18.7	1.1	8.9	22.2	30.9	28.9	23.2
2003	21.0	1.5	12.0	25.1	34.4	31.4	30.0
2004	23.9	2.3	14.9	30.0	36.1	34.5	34.8
2005	26.8	3.8	18.2	36.3	40.0	34.4	39.2
2006	29.6	5.4	21.7	40.8	44.8	39.3	38.9
2007	32.6	7.5	28.3	47.0	48.3	41.9	43.0
2008	34.6	10.6	35.9	55.8	48.5	39.1	35.4
2009	36.4	12.1	40.4	59.9	52.4	41.0	30.9
2010	39.9	14.0	49.3	67.2	54.3	41.5	31.5
2011	42.0	15.9	56.1	73.5	55.0	40.8	31.5
2012	45.6	19.0	68.3	83.5	55.4	39.3	33.3
2013	45.6	16.3	68.7	84.9	57.2	39.4	32.7
2014	46.6	16.1	70.1	86.3	56.1	39.6	33.2
2015	45.6	15.9	70.1	85.8	53.3	38.1	34.5
2016	46.0	16.9	72.5	87.8	53.9	37.9	34.1
2017	47.6	18.5	74.7	89.1	53.7	38.5	34.2
2018	48.7	18.7	77.6	89.7	53.0	38.4	34.6
2019	50.1	20.2	81.1	91.3	54.1	39.4	35.1

주: 1) 6세 이상 과연령은 5세에 포함함.
 2) (어린이집 이용자 수/아동 수) *100으로 산출.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p. 29.

2. 어린이집 이용 행태 변화

가. 어린이집 이용시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등하원 시각을 살펴보면, 등원시각은 8시31분~9시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9시1분~9시30분 등원하는 비중이 높았다. 등원 시각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4년 이후 영유아의 등원 시각이 점차 늦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9시1분~9시30분 등원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8시1분~8시30분 등원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1〉 어린이집 영유아 등원 시각

구분	단위: %(명)				
	2004	2009	2012	2015	2018
7:30까지	2.2	2.1	1.0	1.3	1.6
7:31~8:00	7.7	7.4	8.1	4.3	3.5

구분	2004	2009	2012	2015	2018
7:30까지	2.2	2.1	1.0	1.3	1.6
8:01~8:30	17.1	18.4	20.7	15.0	13.7
8:31~9:00	36.4	35.9	30.2	34.7	38.5
9:01~9:30	25.2	26.4	26.9	31.3	31.2
9:31~10:00	9.5	7.7	10.8	12.4	11.0
10:01~	1.8	2.1	2.5	1.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18)	(1,343)	(1,531)	(1,745)	(1,753)

자료: 1)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p. 98.
 2)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호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29.
 3)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호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11.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하원 시각은 2018년 기준 15시1분~16시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6시1분~17시가 34.0%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17시 이전에 하원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비중이 가장 높은 하원 시각은 2004년 17시~17시30분(23.6%), 2009년 16시1분~17시(22.4%), 2012년 16시1분~17시(30.0%), 2015년 15시1분~16시(37.6%), 2018년 15시1분~16시(39.6%)로 하원 시각 자체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등원시각이 늦어지고 하원시각은 빨라지는 양상이 발견되며, 이는 어린이집 이용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르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무상 보육 이전에는 맞벌이 가구 등 보육서비스 이용이 부득이한 경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보다 늦게 하원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무상 보육 이후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용시간이 낮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2-2〉 어린이집 영유아 하원 시각

구분	2004	2009	2012	2015	2018
14:00까지	10.3	3.6	3.1	1.8	1.5
14:01~15:00	21.4	15.7	8.8	8.0	5.5
15:01~16:00	16.4	17.1	27.5	37.6	39.6
16:01~17:00	15.1	22.4	30.0	31.9	34.0
17:01~17:30	23.6	11.9	10.2	6.9	7.3
17:31~18:00	11.3	10.8	10.3	6.7	5.6
18:01~19:00	1.5	13.1	8.1	5.3	5.7
19:01~	0.4	5.4	1.9	1.7	0.9

구분	2004	2009	2012	2015	2018
14:00까지	10.3	3.6	3.1	1.8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22)	(1342)	(1536)	(1745)	(1753)

자료: 1)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p. 98.
 2)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29.
 3)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11.

한편,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균은 매해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7시간~8시간 사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2004년에는 이용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 사이 고르게 분포하는데 반해, 2018년 7시간을 전후한 시간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6~9시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04년 46.6%였으나 2018년에는 전체의 78.2%에 달했다. 한편, 2015년은 8시간 이상 이용자 비중 22.9%로 직전 조사인 2012년 결과(31.0%)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6~7시간 이용자 비중이 36.0%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맞춤형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외벌이 가구의 영아 자녀 중심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2-3〉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변화

단위: %(명), 시간(개소)

구분	2004	2009	2012	2015	2018
5시간까지	14.6	7.3	5.7	3.3	1.1
5~6시간	19.1	15.3	10.5	16.1	4.1
6~7시간	15.1	17.6	26.3	36.0	26.8
7~8시간	15.7	18.9	26.5	21.8	32.2
8~9시간	15.8	18.0	14.9	12.2	19.2
9~10시간	11.2	12.5	10.0	6.5	10.3
10시간 이상	7.3	10.3	6.1	4.2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21)	(1,343)	(1,536)	(1,745)	(1,753)
평균	7시간 20분	7시간 45분	7시간 34분	7시간 20분	7시간 42분
표준편차	1시간 56분	1시간 59분	1시간 36분	1시간 26분	1시간 24분

자료: 1)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42-143.
 2)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191.
 3)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은영·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33.
 4)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15.

취업모 가구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미취업모 가구 아동에 비해 약 1시간 가량 이용시간이 길었다. 취업모 가구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2018년 기준 아동의 연령에 따라 7시간 30분에서 8시간 사이로, 4세아의 이용시간이 약간 길었다. 미취업모 가구 아동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6시 30분에서 7시간가량으로, 이 경우에도 4세아의 이용시간이 약간 길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최근으로 올수록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2-4〉 아동 연령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균

단위: 시간(개소)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수)
전체							
2004년도	7시간 50분	7시간 42분	7시간 7분	6시간 44분	6시간 27분	6시간 7분	(1,643)
2009년도	8시간 6분	7시간 51분	7시간 34분	7시간 44분	7시간 50분	7시간 51분	(1,396)
2012년도	7시간	7시간 16분	7시간 29분	7시간 43분	7시간 58분	7시간 47분	(1,536)
2015년도	7시간 5분	7시간 7분	7시간 15분	7시간 35분	7시간 31분	7시간 20분	(1,745)
2018년도	7시간 27분	7시간 8분	7시간 16분	7시간 26분	7시간 43분	7시간 25분	(1,753)
취업모 아동							
2004년도	8시간 39분	7시간 16분	7시간 59분	7시간 43분	7시간 5분	6시간 27분	(685)
2009년도	9시간 46분	9시간	8시간 19분	8시간 39분	8시간 35분	8시간 33분	(575)
2012년도	8시간 9분	8시간 21분	8시간 12분	8시간 31분	8시간 38분	8시간 29분	(613)
2015년도	8시간 9분	7시간 44분	8시간 5분	8시간 5분	8시간 2분	7시간 51분	(702)
2018년도	7시간 29분	7시간 28분	7시간 35분	7시간 49분	8시간 4분	7시간 50분	(985)
미취업모 아동							
2004년도	7시간 14분	6시간 23분	6시간 7분	6시간 5분	5시간 58분	5시간 53분	(885)
2009년도	6시간 41분	6시간 39분	6시간 51분	6시간 55분	7시간 2분	7시간 15분	(716)
2012년도	5시간 51분	6시간 33분	6시간 58분	7시간 10분	7시간 21분	7시간 12분	(862)
2015년도	6시간 30분	6시간 39분	6시간 42분	7시간 7분	7시간 5분	6시간 54분	(970)
2018년도	6시간 35분	6시간 40분	6시간 56분	6시간 55분	7시간 6분	6시간 56분	(751)

주: 1) 전체는 휴직중/모부재 인 모든 아동의 통계치임.
 2) 2015년과 2018년은 보육실태조사 데이터를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결과임.
 자료: 1)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5.
 2)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192.
 3)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35.

취업모 가구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최다 비중을 보이는 구간이 2004년 8~9시간(20.2%)였다가 2012년 이후 7~8시간이 최다 비중을 보였다. 어린이집 이용 평균 시간은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8시간 38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2015년 7시간 56분으로 가장 짧았다. 반면, 미취업모 가구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 2004년 5~6시간(24.3%)이 최다 비중이었으나, 2009년과 2012년, 2015년 조사에서는 6~7시간이 최다 비중이었다. 또 2018년에는 이용 시간이 더욱 길어져 7~8시간(34.7%)이 최다 비중을 보였다. 2018년 응답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취업모 가구 아동이 평균 8시간 6분, 미취업모 가구의 아동은 평균 7시간 6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을 1시간가량 길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5〉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변화

구분	취업						미취업					
	2004	2009	2012	2015	2018		2004	2009	2012	2015	2018	
	5시간까지	7.5	3.6	3.5	2.2	1.3		22.8	10.5	7.0	6.5	3.5
5~6시간	14.5	8.0	4.8	9.7	3.5		24.4	22.0	15.2	24.0	10.6	
6~7시간	10.4	9.9	12.2	23.5	18.0		21.2	24.3	38.2	35.9	30.4	
7~8시간	16.9	17.0	24.7	24.5	28.0		14.2	21.1	27.1	23.8	34.7	
8~9시간	20.2	21.8	22.3	19.4	24.5		10.4	14.9	8.6	8.3	17.2	
9~10시간	15.6	21.7	19.7	13.2	15.3		6.5	4.7	2.9	1.3	3.0	
10시간 이상	15.0	18.0	12.8	7.5	9.5		0.3	2.5	1.0	0.2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15)	(577)	(613)	(1,009)	(1,419)		(386)	(717)	(862)	(1,425)	(1,241)	
평균	8시간 4분	8시간 38분	8시간 23분	7시간 56분	8시간 16분		6시간 29분	6시간 57분	6시간 56분	6시간 48분	7시간 16분	
표준편차	1시간 54분	1시간 55분	1시간 36분	1시간 36분	1시간 24분		1시간 33분	1시간 31분	1시간 16분	1시간 11분	1시간 16분	

자료: 1) 서문희·조애자·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42-143.
 2) 서문희·김은설·최진·인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자(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기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190.
 3)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희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기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233-234.
 4)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기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215-216.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0세는 2012년도 7시간 57분에서 2015년 8시간 30분, 2018년 9시간 3분으로 지속적으로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세는 2012년에 8시간 11분에서 2015년 8시간 18분, 2018년 8시간 26분으로 약간 길어지기는 하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세는 2012년도 8시간 11분에서 소폭 감소하여 2015년에는 7시간 54분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8시간 21분으로 1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세의 경우 2012년 8시간 29분, 2015년 8시간 30분, 2018년 8시간 27분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4세는 2012년 8시간 54분, 2015년 8시간 18분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8년 8시간 52분으로 2012년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5세는 2012년도 8시간 22분, 2015년 8시간 42분, 8시간 45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즉, 전년도 전 연령에서 8~9시간 정도의 이용을 희망함을 알 수 있었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약 1~2시간 가량 어린이집을 더 길게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모 가구의 경우 전 연령에서 9시간을 전후한 시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취업모의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표 III-2-6〉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평균

단위: 시간(개소)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수)
2012년도	7시간 57분	8시간 11분	8시간 11분	8시간 29분	8시간 54분	8시간 22분	(1,536)
2015년도							
전체	8시간 30분	8시간 18분	7시간 54분	8시간 30분	8시간 18분	8시간 42분	(1,745)
취업	9시간 54분	9시간 9분	8시간 58분	9시간 5분	8시간 49분	9시간 16분	(702)
미취업	7시간 44분	7시간 41분	7시간 13분	7시간 50분	7시간 56분	8시간 11분	(970)
2018년도							
전체	9시간 3분	8시간 26분	8시간 21분	8시간 27분	8시간 52분	8시간 45분	(1,753)
취업	9시간 32분	8시간 54분	8시간 54분	8시간 55분	9시간 27분	9시간 18분	(985)
미취업	7시간 52분	7시간 50분	7시간 45분	7시간 49분	7시간 52분	8시간 3분	(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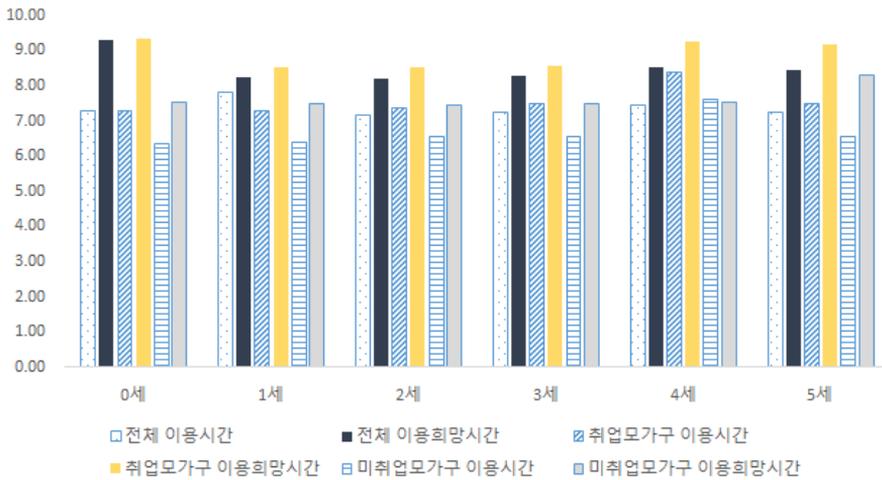
주: 1) 전체는 휴직중/모부재 인 모든 아동의 통계치임.
 2) 2015년과 2018년은 보육실태조사 데이터를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결과임.
 자료: 1)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41.
 2)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174-175.

앞서 살펴본 실제 이용시간과 이용 희망시간을 비교해보면, 영유아 부모들은 실제 이용시간보다 약 1시간가량 어린이집을 더 길게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0세가 그 간극이 가장 컸으며,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취업모 가구에서 그 간극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0세는 2시간 3분을 더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1세 1시간26분, 2세 1시간19분, 3세 1시간6분, 4세 47분, 5세 1시간28분을 더 길게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반면,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에는 5세의 경우 1시간 34분을 더 이용하기를 희망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을 뿐 다른 연령에서는 취업모 가구에 비해 차이가 적었다. 이를 통해 취업모 가구에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보다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즉, 취업모 가구의 경우 모의 근로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하나, 실제 그만큼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II-2-1] 모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희망이용시간(2018년)

단위 : 시간.분



주: 경상성만을 비교하기 위해 '7시간 27분'의 경우 7.27로 표기(7.45가 아님)되는 방식으로 작성된 그래프임.
 자료: <표 III-2-6>를 그림으로 제시함.

나. 어린이집 이용 이유와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04년 부모 대리보호가 40.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이 29.0%, 전인적 발달이 24.7%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유가 53.7%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부모의 대리보호와 사회성 발달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의 대리보호는 2004년에 비해

서 크게 감소한 반면, 발달에 대한 요구는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인적 발달과 함께 고려하였을 경우 아동 발달에 대한 수요가 5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2015년, 2018년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에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요구가 2012년 54.8%, 2015년 60.5%, 2018년 55.0%로 나타나 가장 주요한 이유가 아동의 전인적 및 사회성 발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대리보호는 2004년 이후 크게 감소하긴 하였으나 20%대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모의 취업여부나 가구 특성과 무관하게 영유아기 어린이집이 증가한 것과 연관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즉, 2004년의 경우 모의 취업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이 많았다면, 전면적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2년 이후 외벌이 가구의 아동들도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요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2-7〉 어린이집 이용 이유

구분	단위: %(명)				
	2004	2009	2012	2015	2018
전인적 발달	24.7	28.5	22.3	33.4	27.6
초등학교 준비	5.2	4.5	4.5	2.3	1.5
예체능 특기교육	0.4	0.9	0.5	1.1	1.0
부모 대리보호	40.2	29.0	18.0	20.3	23.1
사회성 발달	29.0	29.0	32.5	27.1	27.4
같이 놀 아이 없음	-	7.7	5.2	3.8	2.7
양육부담 덜려고	-	-	14.3	2.0	14.1
전액 지원되어서	-	-	2.5	2.4	2.6
기타	0.5	0.4	0.4	7.5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21)	(1,343)	(1,536)	(1,745)	(1,753)

자료: 1)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p. 101.
 2)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27.
 3)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엄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02.

한편, 어린이집 항목별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교사가 7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이 73.5점으로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참여가 66.8점, 부모교육 및 상담이 66점으로 하위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후로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 연도 내에서 항목별 만족도의 순서가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다.

교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 내용 등이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이라 볼 수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2004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로는 교사, 안전관리,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 투자의 증가가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내포된 결과로 보여진다.

〈표 III-2-8〉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단위: 점

구분	2004	2009	2012	2015	2018
교사	76.5	79.4	78.4	84.4	84.2
주변환경	70.3	70.0	72.8	79.8	79.0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69.3	72.2	73.8	79.6	80.2
교재교구 및 장비	70.8	72.6	74.0	79.4	-
내부 분위기	74.0	75.8	75.6	81.2	-
건강관리	72.3	74.0	74.8	80.6	80.4
급간식관리	73.5	76.0	75.0	80.4	80.4
안전관리	73.5	76.0	75.6	81.2	82.0
교육내용	73.5	75.4	76.0	81.0	82.2
부모참여	66.8	68.4	69.8	77.2	78.0
부모교육 및 상담	66.0	70.4	70.2	78.0	-
(수)	821	1,343	1,536	1,745	1,753

주: 2004년 자료는 4점 척도, 2009, 2012, 2015, 2018 자료는 5점 척도로 각 자료를 100점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1)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p. 101.
 2) 김은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49.
 3)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58.

반면, 어린이집 개선사항 요구는 2004년과 2009년에는 비용에 개선요구가 각 13.9%, 21.5%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과 2015년에는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에 대한 개선요구가 각 15.2%, 14.3%로 가장 높았다. 2012년과 2015년에는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다음으로는 주변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2012년 이후 비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개선 요구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2012년을 전후한 전면적 무상보육의 실시에 따른 변화로 여겨진다. 단, 2012년 이후 비용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비용에 대한 개선요구는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주변환경 다음 순위를 보이는 항목으로 여전히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가 높은 항목이기는 하다.

〈표 III-2-9〉 어린이집 개선사항

단위: %(명)

구분	2004	2009	2012	2015
교사	6.0	3.4	5.8	10.2
주변환경	11.9	17.0	13.2	11.5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13.2	14.4	15.2	14.3
교재교구 및 장비	6.7	8.2	9.6	8.8
내부분위기	2.6	3.0	3.4	3.0
비용	13.9	21.5	12.5	10.4
건강관리	3.3	4.6	6.7	5.3
급간식관리	4.8	5.3	6.4	6.1
안전관리	3.3	4.1	5.1	7.8
교육내용	3.2	4.4	4.0	5.3
부모참여	5.5	8.8	10.6	8.8
부모교육 및 상담	3.3	3.5	4.6	3.7
무응답	-	-	-	-
(수)	(821)	(1328)	(1482)	(1745)

자료: 1) 서문희·이옥·백화중·최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p. 98.
 2)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13.

설문의 구조가 변경되어 전년도 자료와 비교가 어려운 2018년 보육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가장 개선해야 하는 사항으로 1순위는 교육내용 다양화와 인력증원이 높았으며, 2순위로는 인력의 질 제고와 교육내용다양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최근 영유아 부모들은 부모의 교육 내용 다양화와 인력의 질제고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III-2-10〉 2018년 어린이집 개선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인력증원	24.5	12.1
인력의 질 제고	14.3	24.5
노후시설 정비	8.8	8.0
내부환경개선	7.1	10.3
비용절감	6.2	6.9
안전관리강화	11.8	14.2
교육내용다양화	25.2	23.9
모름/무응답	2.0	-
(수)	(1,753)	(1,658)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61.

다. 어린이집 월평균 보육비용 및 추가 부담 수준

월평균 보육비용을 살펴보면, 2015년 평균 6만 1,500원, 2018년 6만 1,000원이었으며, 이 비용의 대부분은 추가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어린이집 월 보육비용은 16만 4,700원이었으며, 2009년 16만 8,100원이었으나, 2012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영아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월평균 보육비용이 88만8천원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09년까지 월평균 보육비용 중 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던데 반해, 2012년 이후 평균 보육료가 크게 감소한 것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2년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전으로, 영유아기 전 연령에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인 2015년에는 월평균 보육비용이 더욱 감소하여 6만 1,500원까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때 보육료가 평균 4만 5천원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설립 유형에 따라서는 2018년 기준 법인·단체등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이 다른 유형에 비해 약간 더 높았는데, 2004년 가정 어린이집, 2009년 직장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이 가장 높았던 것과 대조를 보인다. 가정 어린이집은 영아 돌봄이라는 점에서 비용이 높았고, 직장의 경우 보육시간이 장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상 보육의 실시로 이들의 보육료 경감이 더욱 크게 이뤄졌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2012년 이전까지는 취업모 가구 아동의 월평균 보육비용이 미취업모 가구 아동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2018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미취업모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용이 300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2013년 이후 전면적 무상보육으로 인해 가구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비용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린이집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II-2-11〉 어린이집 유형 및 모취업 여부별 월평균 교육비용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비용 (A)				보육료 (B)				추가비용 (A-B)				기구조대비 비율								
	2004	2009	2012	2015	2018	2004	2009	2012	2015	2018	2004	2009	2012	2015	2018	2004	2009	2012	2015	2018	
전체	164.7	168.1	88.8	61.5	61.0	136.4	114.3	24.8	4.5	4.3	28.3	53.8	64.0	57.0	56.7	8.3	7.4	3.5	1.9	1.6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151.0	126.6	75.8	54.1	43.0	124.2	86.7	23.9	-	-	26.8	39.8	51.8	54.1	43.0	8.0	6.1	2.4	1.7	1.1	
법인	151.0	110.9	69.3	55.0	57.0	126.7	21.3	-	-	-	24.3	41.5	48.0	55.3	57.0	8.0	5.4	2.6	1.9	1.4	
법인·단체등	146.4	143.7	68.9	72.2	74.1	125.0	16.1	9.3	4.6	7.3	21.4	40.5	52.8	62.9	69.5	6.6	6.6	2.6	2.1	1.8	
민간	175.6	188.4	114.8	69.2	75.4	141.8	124.5	32.5	6.4	7.3	33.8	63.9	82.3	62.8	68.0	8.9	8.1	4.4	2.2	2.0	
가정	218.0	163.0	33.1	38.0	39.6	207.6	133.1	2.4	0.9	0.8	10.4	29.9	30.7	37.1	38.8	8.1	7.3	1.8	1.2	0.9	
직장	128.7	229.2	111.1	47.4	34.8	119.7	164.3	74.6	7.6	4.7	9.0	64.9	36.5	39.8	30.1	3.2	5.4	2.2	0.9	0.7	
합동	-	99.5	100.0	50.0	-	-	96.9	100.0	-	-	-	2.6	-	50.0	-	-	6.1	4.0	2.1	-	
F	-	13.8**	38.7***	13.6***	41.9***	-	8.4**	12.7***	12.0***	16.7***	-	18.6**	44.3***	9.7***	32.3***	-	6.2**	-	-	-	35.4***
모취업여부																					
취업	176.7	221.9	84.1	63.3	61.1	149.3	148.7	28.7	5.2	4.3	27.4	73.2	55.4	58.1	56.8	7.6	7.1	2.6	1.5	1.3	
휴직중	-	-	85.7	65.0	57.6	-	18.0	4.1	5.6	-	-	-	67.7	60.9	52.0	-	-	4.7	1.7	1.3	
미취업	152.5	185.4	92.2	60.2	61.4	122.8	124.6	22.3	4.0	4.0	29.7	60.7	69.8	56.2	57.3	8.9	8.3	4.0	2.2	1.9	
모부재 등	149.5	102.9	108.3	-	50.6	136.1	54.0	22.1	-	0.6	13.4	48.9	86.2	-	49.9	13.44	6.7	-	-	1.7	
F	-	27.2**	1.3	0.8	0.3	-	21.5**	1.6	1.2	0.5	-	12.7**	9.4***	0.4	0.5	-	11.0**	-	-	-	17.1***

주: 보육료는 2004-2009 조사에서는 순보육비, 2012 조사는 월 보육료, 2015-2018 조사는 차액보육료로 정책변화에 따라 용어가 변화됨.
 자료: 1) 서문화·조애자·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81-185.
 2) 서문화·김은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자(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p. 258-259.
 3) 서문화·양미선·김은실·최은영·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96.
 4) 이경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09-310.

이는 연령별 월평균 보육비용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관측되는데, 2012년 영아에 대한 전면적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2세 이하 영아의 월평균 보육비용이 크게 감소한데 반해, 3세 이상 유아의 보육료는 크게 줄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월평균 보육료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은 매해 발견되는 현상이다. 단, 2015년 이전까지 5세의 보육료가 4세에 비해 적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전면적 무상보육의 실시 이전 5세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 수준이 다른 연령에 비해 컸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최효미 외, 2017: 40~41).¹⁶⁾

16) 예컨대, 2008년 0~4세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을 고려하여 소득수준별로 지원액이 차등 지원됐으나, 5세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100%인 아동 전체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함(최효미 외, 2017: 40~41).

〈표 III-2-12〉 영유아 연령별 월평균 보육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비용 (A)				보육료 (B)				추가비용 (A-B)				(수)								
	2004	2009	2012	2015	2018	2004	2009	2012	2015	2018	2004	2009	2012	2015	2018						
전체	164.7	168.1	88.8	61.5	61.0	136.4	114.3	24.8	4.5	4.3	28.3	53.8	64.0	57.0	56.7	(818)	(1,342)	(1,536)	(1,497)	(1,753)	
보육연령																					
0세	311.1	116.5	3.7	7.3	9.9	311.1	101.9	-	-	-	-	14.6	3.7	7.3	9.9	(3)	(45)	(125)	(117)	(117)	
1세	200.0	157.3	31.2	35.1	35.3	195.5	132.6	-	-	-	4.5	24.7	31.2	35.1	35.3	(27)	(178)	(345)	(326)	(386)	
2세	187.8	175.5	67.7	61.9	62.7	176.0	129.3	-	-	-	11.8	46.2	67.7	61.9	62.7	(101)	(329)	(397)	(438)	(495)	
3세	170.7	180.9	163.0	87.0	82.4	143.6	120.5	73.1	12.5	13.7	27.1	60.4	89.9	74.5	68.7	(180)	(317)	(298)	(279)	(335)	
4세	165.9	179.2	131.2	78.0	78.5	132.8	110.3	55.4	8.8	6.3	33.1	68.9	75.8	69.2	72.2	(226)	(256)	(227)	(200)	(204)	
5세	155.0	144.9	111.1	73.3	82.1	118.3	75.0	14.2	8.2	7.9	36.7	69.9	96.9	65.1	74.2	(187)	(217)	(144)	(137)	(216)	

자료: 1) 서문희·조애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3.

2) 서문희·김은실·최진·안재진·최해신·김유경·조애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기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261.

3) 서문희·양미선·김은실·최유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기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97.

4)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기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10-311.

2018년 기준 어린이집 항목별 추가비용은 특별활동비가 3만 9,700원, 현장학습비 6,700원, 차량운행비 3,800원 등이었다. 추가비용의 대부분은 특별활동비로,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특별활동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외 현장학습비와 차량운행비 등은 1세이하의 영아와 2세이상 영유아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특별활동비의 경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무상보육이 실시되어 보육료가 크게 감소한 2012년에 3만 9천원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2-13〉 보육연령별 월평균 추가비용

단위: 천원

구분	특별 활동비	현장 학습비·행사비	(연장보육) 급간식비	차량 운행비	교재비	시도 특성화비	기타
2018년 전체	39.7	6.7	2.1	3.8	3.3	0.8	0.3
보육연령							
0세	5.3	1.4	1.0	1.9	0.3	-	-
1세	23.8	4.4	1.8	2.8	2.2	0.2	0.2
2세	43.9	7.4	2.2	4.2	4.2	0.8	0.1
3세	48.6	8.2	2.4	4.9	2.9	1.0	0.7
4세	51.4	9.3	2.6	3.6	3.5	1.2	0.4
5세	52.7	7.5	2.4	4.5	5.3	1.4	0.3
F	63.4***	14.1***	1.3	3.5***	4.7***	2.6***	2.3**
2015년 조사	36.0	7.5	1.9	5.1	2.2	3.6	0.8
2012년 조사	39.0	12.1	3.4	-	7.7	-	1.8
2009년 조사	24.0	7.1	6.6	1.6	9.5	-	0.8
2004년 조사	11.9	8.0	3.7	0.4	5.9	-	3.1

주: 보육연령별 결과는 2018년 조사 결과임.
 자료: 1)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7.
 2)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263.
 3)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호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12-313.

2018년 기준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 정도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의견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5%, 부담되는 편이 18.3% 순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 기준 비용 부담 정도는 2.7점으로 많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연령별로는 0세의 경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세, 2세, 3세, 4세, 5세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4년과 2009년 조사에서는 부담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각

47.5%, 46.1%로 가장 높는데 반해, 모든 연령에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 후¹⁷⁾인 2015년 조사결과에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46.8%로 최다 비중을 보여, 무상 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 경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14〉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 되는 편	적당	부담 되지 않음	전혀 부담 되지 않음	계(수)	평균
2018년 전체	2.3	18.3	44.7	16.2	18.5	100.0(1,753)	2.7
보육연령							
0세	0.5	4.1	33.1	19.9	42.3	100.0(117)	2.0
1세	1.1	13.3	48.4	14.6	22.7	100.0(386)	2.6
2세	2.3	16.2	44.1	18.1	19.2	100.0(495)	2.6
3세	2.6	26.2	46.6	14.6	10.0	100.0(335)	3.0
4세	6.5	19.5	44.4	15.9	13.6	100.0(204)	2.9
5세	1.3	26.7	43.4	15.3	13.3	100.0(216)	2.9
F			127.14(20)***				20.4***
2015년 조사	3.4	24.6	46.8	16.4	8.8	100.0(1,745)	3.0
2012년 조사	4.7	28.8	23.9	28.9	13.7	100.0(1,536)	3.2
2009년 조사	15.9	46.1	21.8	10.1	6.1	100.0(1,223)	-
2004년 조사	14.1	47.5	30.7	7.6	-	100.0(787)	-

주: 보육연령별 결과는 2018년 조사 결과임.

자료: 1)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98.

2)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273.

3)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16-317.

한편,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의사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3.7%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비용 미지원 시에도 이용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세가 72.2%로 가장 높았으며, 5세가 57.5%로 가장 적었다. 미지원 시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012년 29.4%, 2015년 24.4%, 2018년 17.6%로 최근으로 올 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모르겠다는 응답이 2015년 18.9%, 2018년 18.8%로, 이용 의사가 있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전면적인 무상보육 도입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2012년과 달리 2015년

17) 2013년을 의미함.

조사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은 무상 보육이 당연한 제도로 여겨져, 비용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 자체에 대해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2-15〉 비용 미지원 시 어린이집 이용 의사

단위: %(명), 점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름	계(수)
2018년 전체	63.7	17.6	18.8	100.0 (1,753)
보육연령				
0세	58.7	28.8	12.5	100.0(117)
1세	63.7	18.0	18.3	100.0(386)
2세	63.2	16.7	20.0	100.0(495)
3세	72.2	14.6	13.2	100.0(335)
4세	60.6	13.2	26.3	100.0(204)
5세	57.5	20.8	21.7	100.0(216)
F	34.3(10)***			
2015년 조사	56.7	24.4	18.9	100.0 (1,745)
2012년 조사	66.4	29.4	4.2	100.0 (1,536)

주: 보육연령별 결과는 2018년 조사 결과임.
 자료: 1)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98.
 2) 이정원·이정림·도남화·최호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16-317.

한편, 질이 높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8년 기준 42.5%,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7.5%로 나타났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2세가 3~5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및 휴직중인 어머니가 미취업모에 비해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중은 전면적인 무상보육 도입 전후인 2012년 25.0%, 2015년 30.8%에 비해 2018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지불 가능한 비용은 2018년 기준 평균 10만 6천5백 원으로 꽤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연령 별로는 0세가 12만 9천1백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세가 9만 6천3백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불할 의사가 있는 추가비용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혹은 휴직중인 어머니에 비해 미취업모의 경



우 추가비용 지출 의사가 적었다.

추가비용을 낼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중 자체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지만,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비용의 수준은 최근으로 올수록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추가 부담 있는 비용은 평균 16만 2,600원이며, 2015년 평균 11만 7,100원으로 2018년 10 만6,500원보다 높았다.

〈표 III-2-16〉 질 높은 기관 이용을 위한 비용 추가 의사 및 가능한 부담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2018년 전체	42.5	57.5	100.0 (1,753)	106.5	95.4	(755)
보육연령						
0세	45.4	54.6	100.0 (117)	129.1	116.8	(54)
1세	44.0	56.0	100.0 (386)	109.2	87.8	(172)
2세	48.2	51.8	100.0 (495)	107.4	98.3	(240)
3세	38.0	62.0	100.0 (335)	100.3	100.9	(132)
4세	39.6	60.4	100.0 (204)	101.9	85.1	(80)
5세	34.7	65.3	100.0 (216)	96.3	86.1	(77)
$\chi^2(d\hat{h})/F$	16.4(5)***					
모취업 여부						
취업	46.5	53.5	100.0 (888)	116.1	102.6	(413)
휴직중	48.3	51.7	100.0 (97)	122.2	92.9	(49)
미취업	37.3	62.7	100.0 (751)	89.5	81.8	(291)
모부재 등	8.7	91.3	100.0 (17)	71.9	-	(2)
$\chi^2(d\hat{h})/F$	20.0(3)***			4.9***		
2015년 조사	30.8	69.2	100.0 (1,745)	117.1	106.4	(508)
2012년 조사	25.0	75.0	100.0 (1,536)	162.6	115.8	(368)
2009년 조사	26.6	73.4	100.0 (2,050)	109.6	96.6	(546)
2004년 조사	29.0	71.0	100.0 (1,608)	-	-	-

주: 보육연령별과 모취업여부별 결과는 2018년 조사 결과임.
 자료: 1)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2.
 2)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276.
 3)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18-319.

3. 소결 및 시사점

이상의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정책적 변화라면 소득과 상관없는 전면적인 무상보육(보편적 보육)의 실시로, 2012년을 전후한 시기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어린이집의 개소수와 이용자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면적 무상보육 실시 시점인 2013년 최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어린이집 이용률 자체는 2019년까지도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9년 90%를 넘어서 포화 상태라 볼 수 있다. 이는 무상보육을 전후하여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하며, 어린이집 이용자 수의 감소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신생아 감소에 기인한 결과로 자연 감소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향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어린이집의 이용자 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원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생아 감소와 어린이집 폐원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이용자 수와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 바가 큰 상황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수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료된다.

셋째,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무상보육을 전후하여 약간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어린이집 이용이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서 보편적 보육 실시에 따라 외벌이 가구 등의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을 실제 이용시간보다 장시간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도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보장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영유아 가구들이 희망하는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보육지원 체계 개편 등으로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이용시간의 변화(연장보육)가 실제로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문제로 사료된다.

넷째,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를 전후하여 영유아 가구의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비용 부담 또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영유아 가구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보다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생아가 급격히 줄어들고 어린이집 이용률이 거의 포화상태에 달해 더 이상 이용자 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어린이집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앞으로의 정책적 지원의 방향 또한 비용지원의 확대보다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며, 안정적 보편 보육의 실시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IV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정책 요구

- 01 어린이집 이용 실태
- 02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 03 보육의 질 요구 수준
- 04 보육비용 대비 질적 수준 평가 및 보육료 부담 수준

IV.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정책 요구¹⁸⁾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의 변화와 어린이집의 만족도, 영유아 가구에서 인식하는 보육의 질에 대한 요구와 현재의 정책을 진단할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어린이집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그 인식, 비용 지출과 부담 정도,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이외에 개인대리양육의 이용실태를 함께 파악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1,513명으로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유형을 물어본 결과, 민간 41.2%, 국공립 25.9%, 가정 20.0%, 직장 5.7%, 사회복지법인 4.3%, 법인단체 2.7%, 부모협동 0.2%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이용중인 어린이집 유형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계(수)
전체	25.9	4.3	2.7	41.2	20.0	5.7	0.2	(1,513)
보육연령								
0세	14.6	0.5	2.9	30.2	48.8	2.4	0.5	(205)
1세	20.9	1.8	0.7	35.7	35.4	5.4	0.0	(277)
2세	20.4	4.4	2.7	40.8	27.8	3.6	0.3	(338)
3세	31.9	6.1	1.7	45.9	3.9	10.0	0.0	(229)
4세	36.2	6.5	5.2	45.7	0.4	6.0	0.0	(232)
5세	33.6	6.5	3.4	48.7	0.0	7.3	0.4	(232)

18) 본 장에서 제시하는 분석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영유아 부모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0	3.0	2.1	38.6	21.3	6.8	0.2	(844)
외벌이	23.3	6.0	3.4	44.4	18.2	4.3	0.1	(66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1.9	9.5	5.0	42.8	20.4	0.5	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5	3.3	2.2	46.5	19.5	3.9	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4.5	5.0	1.7	43.0	20.2	4.6	0.7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0.2	3.6	1.6	38.3	16.5	9.7	0.0	(248)
600만원 이상	27.5	2.5	3.5	36.0	22.1	8.2	0.2	(403)

가. 어린이집 이용 시간 및 요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 및 이용 시간과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연장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여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49.6%, 시간연장형 이용하는 경우가 3.4%로 나타났으며, 둘 다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48.8%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1-2〉 연장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여부

구분	연장보육이용	시간연장형이용	둘다이용하지않음	계(수)
전체	49.6	3.4	48.8	(1,513)
보육연령				
0세	44.9	4.9	52.7	(205)
1세	41.5	2.5	56.3	(277)
2세	52.4	3.3	46.4	(338)
3세	55.5	2.6	44.1	(229)
4세	50.4	4.7	47.8	(232)
5세	53.0	3.0	45.3	(232)
χ^2	34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2.1	4.6	36.0	(844)
외벌이	33.9	1.9	64.9	(669)
χ^2	23.4**			

단위: %(명)

구분	연장보육이용	시간연장형이용	돌다이용하지않음	계(수)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7.8	3.0	59.7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7.6	1.1	61.3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3	3.3	48.7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4.8	6.0	42.3	(248)
600만원 이상	62.5	4.2	36.2	(403)
χ^2	69.1***			

*** $p < 0.001$, ** $p < 0.01$.

이에 대해서는 연령별,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세가 55.5%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세가 4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간연장형의 경우 0세가 4.9%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1세가 2.5%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가 연장보육 이용률이 32.1%, 시간연장형 이용률이 4.6%로 외벌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에 있어서는 600만원 이상이 연장보육 이용률이 62.5%로 가장 높았고, 500~600만원 소득구간이 시간연장형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등원시각을 살펴보면 9시 1분~9시 30분 사이가 32.1%, 8시 31분에서 9시까지가 24.4%, 9시 31분~10시까지 23.2% 순으로 등원하였다. 따라서 약 80%의 아동이 8시 31분~10시에 등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등원시각은 연령별, 맞벌이여부별, 연장보육 이용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IV-1-3〉 어린이집 등원시각

구분	단위: %(명)						계(수)
	7:31~ 8:00	8:01~ 8:30	8:31~ 9:00	9:01~ 9:30	9:31~ 10:00	10:01~	
전체	4.2	12.2	24.1	32.1	23.2	4.2	100.0 (1,513)
보육연령							
0세	9.3	14.6	22.4	29.8	14.6	9.3	100.0 (205)
1세	4.3	13.7	24.2	30.3	22.7	4.7	100.0 (277)
2세	3.3	11.2	18.3	34.3	28.7	4.1	100.0 (338)
3세	3.9	12.2	22.7	32.3	27.1	1.8	100.0 (229)
4세	2.6	11.6	27.2	31.9	23.7	3.0	100.0 (232)
5세	3.0	10.3	31.9	32.8	19.0	3.0	100.0 (232)
χ^2	62.5***						

구분	7:31~ 8:00	8:01~ 8:30	8:31~ 9:00	9:01~ 9:30	9:31~ 10:00	10:01~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6.4	17.4	27.4	27.5	18.0	3.3	100.0 (844)
외벌이	1.5	5.7	19.9	37.8	29.8	5.4	100.0 (669)
χ^2	110.3***						
연장보육 이용여부							
이용	7.7	20.1	27.5	22.7	17.9	4.0	100.0 (775)
미이용	0.5	3.9	20.5	41.9	28.7	4.5	100.0 (738)
χ^2	197.7***						

*** $p < 0.001$.

어린이집 하원시각을 살펴보면, 15시 1분부터 16시까지가 가장 많았으며(32.7%), 다음으로는 16시 01분 ~ 16시 30분(14.9%). 16시 31분 ~ 17:00(14.7%) 순으로 나타났다. 16시 이전에 하원하는 아동은 40.9%, 16시에서 17시 사이에 하원하는 아동은 29.6%, 17시 이후에 하원 하는 아동은 21.2%로 나타나고 있어 16시~17시의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전환시간의 혼란이 예상된다. 9시~16시의 기본보육과 16시~17시±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 76). 어린이집 하원시각은 보육연령, 맞벌이 여부, 연장보육 이용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어린이집 하원시각

단위: %(명)

구분	14:00 까지	14:01 ~ 15:00	15:01 ~ 16:00	16:01 ~ 16:30	16:31 ~ 17:00	17:01 ~ 17:30	17:31 ~ 18:00	18:01 ~ 19:00	19:01 ~	계(수)
전체	4.0	4.2	32.7	14.9	14.7	8.5	8.3	10.8	1.9	100.0 (1,513)
보육연령										
0세	11.2	5.9	28.8	9.8	9.8	6.3	10.2	14.2	3.9	100.0 (205)
1세	6.1	3.3	41.2	7.6	13.4	6.5	6.9	13.0	2.2	100.0 (277)
2세	1.8	3.9	34.0	15.7	16.9	10.4	7.7	8.9	0.9	100.0 (338)
3세	3.1	4.8	27.1	19.7	17.0	9.6	6.6	10.0	2.2	100.0 (229)
4세	1.7	3.9	31.9	19.4	13.8	9.5	9.5	9.1	1.3	100.0 (232)
5세	1.3	4.3	30.6	18.1	16.0	8.2	9.5	10.8	1.3	100.0 (232)
χ^2	10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	3.1	23.1	14.9	15.5	10.4	11.3	15.3	2.5	100.0 (844)
외벌이	4.0	5.7	44.8	15.0	13.6	6.1	4.5	5.2	1.1	100.0 (669)
χ^2	128.6***									

구분	14:00 까지	14:01 ~ 15:00	15:01 ~ 16:00	16:01 ~ 16:30	16:31 ~ 17:00	17:01 ~ 17:30	17:31 ~ 18:00	18:01 ~ 19:00	19:01 ~	계(수)
연장보육 이용여부										
이용	0.0	0.0	0.0	19.0	24.9	16.1	15.6	20.8	3.6	100.0 (775)
미이용	8.1	8.7	67.1	10.7	3.9	0.5	0.5	0.4	0.0	100.0 (738)
χ^2	1163.6***									

*** $p < 0.001$.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4시간으로 기본보육 시간인 7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용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맞벌이는 평균 7.8시간, 외벌이는 6.9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기본보육시간인 7시간 이하로 이용하는 비율은 44.3%로 나타났으며, 7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55.6%로 나타났고, 연령별,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1-5>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단위: %, 시간(명)

구분	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8시간 미만	8~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계(수)
전체	14.2	30.1	21.7	15.3	18.6	7.4	100.0(1,513)
보육연령							
0세	22.9	24.4	15.1	11.2	26.3	7.3	100.0 (205)
1세	16.2	31.8	19.1	13.7	19.1	7.2	100.0 (277)
2세	14.2	32.8	21.0	16.3	15.7	7.3	100.0 (338)
3세	12.2	27.9	25.3	16.2	18.3	7.4	100.0 (229)
4세	9.9	32.8	25.0	15.5	16.8	7.4	100.0 (232)
5세	10.3	28.9	25.0	18.5	17.2	7.5	100.0 (232)
χ^2/F	44.4**					0.9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5	21.8	21.7	18.6	27.4	7.8	100.0 (844)
외벌이	18.8	40.7	21.8	11.2	7.5	6.9	100.0 (669)
χ^2/F	153.6***					126.9***	

*** $p < 0.001$, ** $p < 0.01$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이용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용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21.7%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별, 맞벌이 여부별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 이용시간에 대하여 적



절하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에 비해서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1-6〉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계(수)
전체	7.5	21.7	63.1	6.9	0.9	100.0 (1,513)
보육연령						
0세	9.8	24.4	53.2	10.2	2.4	100.0 (205)
1세	7.2	28.9	58.5	4.7	0.7	100.0 (277)
2세	10.1	23.1	60.1	5.9	0.9	100.0 (338)
3세	8.7	21.8	62.0	7.0	0.4	100.0 (229)
4세	6.0	18.1	68.5	6.5	0.9	100.0 (232)
5세	2.2	12.5	77.2	8.2	0.0	100.0 (232)
χ^2	6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7.5	21.3	60.8	9.4	1.1	100.0 (844)
외벌이	7.5	22.3	65.9	3.7	0.6	100.0 (669)
χ^2	19.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8.0	24.4	64.2	2.5	1.0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6	21.7	64.6	5.0	0.0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6	20.9	65.2	6.3	1.0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4	22.6	61.7	10.1	1.2	100.0 (248)
600만원 이상	8.7	20.6	60.3	9.2	1.2	100.0 (403)
χ^2	25.5#					

주: ①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②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③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 한다
 ④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⑤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p < .001$, # $p < 0.1$.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만큼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35.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가 20.6%, 더 이용하는 게 웬지 눈치가 보여서가 19.2%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6%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으며,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5.2% 다음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연령, 맞벌이, 소득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령에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이가 혼자 남게 되는 걸 싫어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며, 연령이 낮을수록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으로 인해서 현재시간만큼만 이용한다는 응답도 5세의 경우 11.8%로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7〉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지만 현재만큼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10.9	19.2	35.3	5.2	1.6	20.6	7.2	100.0 (442)
보육연령								
0세	4.3	15.7	25.7	10.0	0.0	35.7	8.6	100.0 (70)
1세	12.0	19.0	32.0	4.0	0.0	25.0	8.0	100.0 (100)
2세	15.2	23.2	33.9	3.6	0.9	17.9	5.4	100.0 (112)
3세	12.9	14.3	40.0	5.7	1.4	15.7	10.0	100.0 (70)
4세	8.9	19.6	41.1	5.4	1.8	14.3	8.9	100.0 (56)
5세	5.9	23.5	50.0	2.9	11.8	5.9	0.0	100.0 (34)
χ^2	6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	21.0	39.1	6.2	2.5	22.6	5.3	100.0 (243)
외벌이	20.1	17.1	30.7	4.0	0.5	18.1	9.5	100.0 (199)
χ^2	38.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1.5	20.0	26.2	7.7	0.0	13.8	10.8	100.0 (6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2.0	17.4	30.3	4.6	2.8	17.4	5.5	100.0 (10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8	21.7	31.3	6.0	1.2	24.1	10.8	100.0 (83)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0	17.9	41.8	4.5	0.0	25.4	7.5	100.0 (67)
600만원 이상	3.4	19.5	44.1	4.2	2.5	22.0	4.2	100.0 (118)
χ^2	51.9***							

- 주: ①이용 자격 때문에
 ②더 이용하는 게 왠지 눈치가 보여서
 ③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④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⑤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⑥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⑦기타

*** $p < .001$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현재만큼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5.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위인 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가 8.5%와 큰 격차를 보였다. 가장 낮은 비율은 양육자가 개인시간을 가지고 싶어서라는 응답으로 0.9%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령별, 맞벌이 여부별,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외벌이의 경우 맞벌이에 비해서 어린이집 운영 방침 상 일정 시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시간을 줄이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의 경우 돌봄인력의 부족과 돌봄인력의 부담으로 인해 줄이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1-8〉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지만 현재만큼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4.3	6.8	65.0	8.5	6.8	2.6	0.9	5.1	100.0 (117)
보육연령									
0세	0.0	0.0	88.5	11.5	0.0	0.0	0.0	0.0	100.0 (26)
1세	13.3	13.3	46.7	20.0	0.0	0.0	6.7	0.0	100.0 (15)
2세	0.0	13.0	82.6	0.0	4.3	0.0	0.0	0.0	100.0 (23)
3세	0.0	5.9	47.1	17.6	11.8	0.0	0.0	17.6	100.0 (17)
4세	11.8	5.9	47.1	0.0	17.6	11.8	0.0	5.9	100.0 (17)
5세	5.3	5.3	57.9	5.3	10.5	5.3	0.0	10.5	100.0 (19)
χ^2	5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	6.8	73.9	10.2	2.3	3.4	0.0	1.1	100.0 (88)
외벌이	10.3	6.9	37.9	3.4	20.7	0.0	3.4	17.2	100.0 (29)
χ^2	34.7***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8.6	0.0	28.6	0.0	14.3	0.0	14.3	14.3	100.0 (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6	0.0	55.6	16.7	11.1	0.0	0.0	11.1	100.0 (1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1	4.5	54.5	9.1	13.6	4.5	0.0	4.5	100.0 (2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0.0	14.3	71.4	3.6	3.6	0.0	0.0	7.1	100.0 (28)
600만원 이상	0.0	7.1	76.2	9.5	2.4	4.8	0.0	0.0	100.0 (42)
χ^2	51.2**								

- 주: ①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상 일정 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해서
 ②줄여든 시간만큼 다른 기관이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이 부담되어서
 ③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④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⑤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싶어서
 ⑥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⑦내 개인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⑧기타

*** $p < .001$, ** $p < .01$.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을 물어보았다. 평균 희망 이용시간은 8.2시간으로 기본보육시간인 7시간과 현재 평균 이용시간인 7.4시간(표 IV-1-5 참조)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 희망 이용시간을 맞벌이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외벌이는 8.4시간, 맞벌이는 7.8시간을 희망하고 있어 외벌이가 현저히 긴 시간의 이용시간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9〉 어린이집 평균 희망 이용시간

단위: %, 시간(명)

구분	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8시간 미만	8~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계(수)
전체	8.8	17.7	25.4	17.0	31.1	8.2	100.0 (1,513)
보육연령							
0세	9.4	21.9	18.8	14.6	35.4	8.3	100.0 (205)
1세	9.6	16.5	25.2	17.4	31.3	8.2	100.0 (277)
2세	4.4	20.0	27.4	18.5	29.6	8.2	100.0 (338)
3세	12.6	10.3	23.0	20.7	33.3	8.2	100.0 (229)
4세	11.0	17.8	30.1	12.3	28.8	8.2	100.0 (232)
5세	7.5	18.9	30.2	17.0	26.4	8.0	100.0 (232)
<i>t</i>						0.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8.8	16.3	20.5	14.2	40.2	8.4	100.0 (844)
외벌이	8.8	19.7	32.5	21.1	18.0	7.8	100.0 (669)
<i>F</i>						3.56***	

*** $p < .001$.

나. 어린이집 이용 비용 지출 및 부담 정도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전반적인 어린이집 이용 비용의 지출 및 부담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어린이집 월 평균 이용 비용을 총비용과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이용 시 총비용은 89,934원이었으며 이 중 특별활동비가 45,653원 특별활동을 제외한 필요경비가 26,108원, 추가보육료가 14,789원, 시간연장비용이 13,02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별,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0〉 어린이집 이용 비용

단위: 원

구분	추가 보육료	특별활동 을 제외한 필요경비	시간연장 비용	특별활동	총비용	(수)
전체	14,789	26,108	13,020	45,653	89,934	(1,513)
보육연령						
0세	14,415	21,621	34,100	17,543	58,100	(205)
1세	10,486	23,603	6,429	25,826	65,887	(277)
2세	14,189	27,810	6,000	46,752	91,644	(338)
3세	16,943	26,938	5,000	59,100	105,530	(229)
4세	17,287	28,688	16,500	64,694	114,143	(232)
5세	16,499	27,132	1,429	59,535	104,301	(232)
F	1.11	0.89	0.53	0.96	0.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085	23,448	15,947	44,288	86,121	(844)
외벌이	15,676	29,480	3,750	47,366	94,754	(669)
F	0.0	0.25	0.65	0.77	0.35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4,404	27,854	9,000	43,162	87,888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4,976	30,366	-	42,854	89,642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640	27,031	9,444	49,116	94,718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3,611	22,683	9,333	41,639	84,520	(248)
600만원 이상	14,894	22,825	22,412	49,261	90,892	(403)
F	0.1	0.92	1.28	1.08	2.34#	

$p < 0.1$.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는 평균 3.7개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활동 과목은 체육활동이 61.0%, 미술/음악이 56.1%, 영어 45.2%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11〉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실태

단위: %(명)

구분	영어	미술/음악	체육	언어	수/과학	기타	계(수)
전체	45.2	56.1	61.0	31.5	24.7	22.2	(1,513)
보육연령							
0세	8.8	23.9	26.3	9.3	5.9	10.7	(205)
1세	14.8	38.6	43.7	12.6	8.7	14.8	(277)
2세	35.2	59.8	63.0	19.8	10.9	24.0	(338)
3세	68.1	67.7	72.9	42.8	36.2	23.1	(229)
4세	78.0	72.4	78.9	55.6	45.7	34.9	(232)
5세	72.8	72.4	79.7	55.6	48.3	25.0	(232)

〈표 IV-1-1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

단위: 개(명)

구분	영어	미술/음악	체육	언어	수/과학	기타	총계
전체	1.0	1.2	1.0	1.1	1.1	1.1	3.7
보육연령							
0세	1.0	1.2	1.1	1.1	1.0	1.3	3.0
1세	1.0	1.2	1.0	1.0	1.0	1.1	2.7
2세	1.0	1.2	1.0	1.0	1.1	1.1	3.1
3세	1.1	1.1	1.0	1.1	1.1	1.1	4.0
4세	1.0	1.2	1.1	1.0	1.1	1.1	4.5
5세	1.0	1.2	1.0	1.1	1.1	1.0	4.5
F	1.48	1.25	1.4	1.17	0.59	2.06#	41.03***

*** $p < .001$, # $p < 0.1$.

어린이집 이용 비용에 대하여 부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평균 2.6점으로 평균적으로 보통에서 별로 부담 안 된다는 정도의 응답을 보였다. 비용의 부담 정도는 외벌이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 부담을 더 느끼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세부터 비용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특별활동비와 관련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V-1-13〉 가구소득 대비 어린이집 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부담 안 됨	별로 부담 안 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수)	평균
전체	20.8	24.1	28.7	22.8	3.6	100.0 (1,513)	2.6
보육연령							
0세	32.2	26.3	22.4	16.1	2.9	100.0 (205)	2.3
1세	26.7	22.7	26.0	20.6	4.0	100.0 (277)	2.5
2세	18.3	21.6	33.4	23.4	3.3	100.0 (338)	2.7
3세	15.7	29.7	24.9	25.3	4.4	100.0 (229)	2.7
4세	14.7	23.3	32.8	25.4	3.9	100.0 (232)	2.8
5세	18.1	22.8	30.2	25.4	3.4	100.0 (232)	2.7
χ^2	47.5***						5.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4	25.4	29.3	20.6	2.4	100.0 (844)	2.6
외벌이	18.7	22.6	28.0	25.6	5.2	100.0 (669)	2.8
χ^2	16.3**						12.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4.4	22.9	24.4	30.8	7.5	100.0 (201)	2.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2	20.1	31.2	27.9	4.7	100.0 (359)	2.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2	25.5	32.8	22.8	3.6	100.0 (302)	2.7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5.4	24.6	29.8	18.5	1.6	100.0 (248)	2.5
600만원 이상	29.3	27.0	24.8	16.9	2.0	100.0 (403)	2.4
χ^2	72.0***						15.4***

주: 전혀 부담 안 됨 = 1점, 별로 부담 안 됨 = 2점, 보통 = 3점, 조금 부담됨 = 4점, 매우 부담됨 =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 $p < .01$.

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3.2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4.6%,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26.1%로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14〉 어린이집 이용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하는 편	불만족 하는 편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26.1	64.6	8.5	0.8	100.0 (1,513)	3.2
보육연령						
0세	25.9	63.4	9.8	1.0	100.0 (205)	3.1
1세	24.5	66.4	9.0	0.0	100.0 (277)	3.2
2세	23.1	67.5	8.9	0.6	100.0 (338)	3.1
3세	28.8	61.6	7.4	2.2	100.0 (229)	3.2
4세	23.3	65.1	10.3	1.3	100.0 (232)	3.1
5세	32.8	62.1	5.2	0.0	100.0 (232)	3.3
χ^2/F	23.3#					2.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2	63.7	9.7	0.4	100.0 (844)	3.2
외벌이	26.0	65.8	6.9	1.3	100.0 (669)	3.2
χ^2/F	8.4*					0.05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3.9	69.2	5.5	1.5	100.0 (201)	3.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5.1	66.9	7.5	0.6	100.0 (359)	3.2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2.8	65.6	10.3	1.3	100.0 (302)	3.1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9.0	63.7	6.9	0.4	100.0 (248)	3.2
600만원 이상	28.8	60.3	10.4	0.5	100.0 (403)	3.2
χ^2/F	15.6					1.4

주: 매우만족 = 4점, 만족하는 편 = 3점, 불만족하는 편 = 2점, 매우 불만족 = 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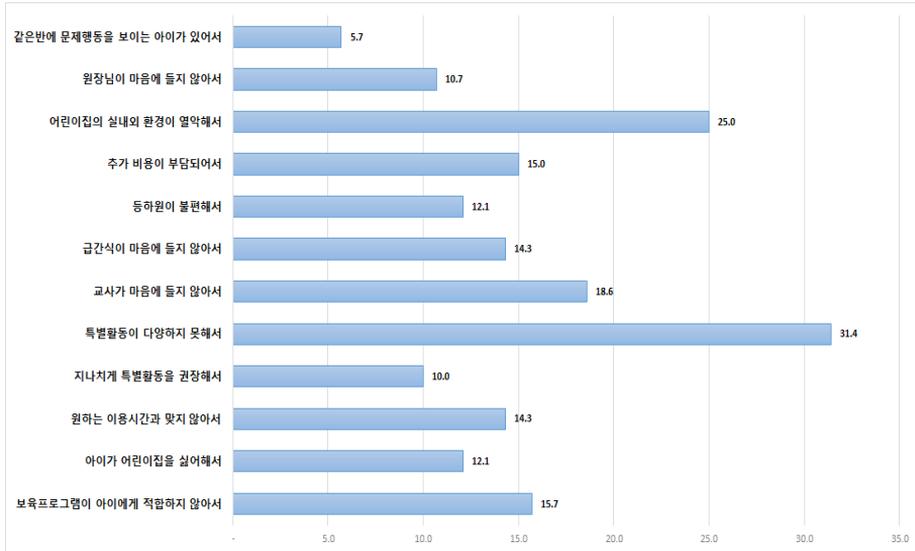
** $p < .01$. # $p < 0.1$.

어린이집 전반적인 이용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를 물어보았다. 이에 따르면 특별활동이 다양하지 못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의 열악함,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보육프로그램의 비적절성, 추가비용 부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1] 어린이집 불만족 이유(1+2순위)

단위: %



어린이집 개선 사항을 1순위, 2순위로 물어본 결과 51.3%가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직원 역량 강화가 30.7%, 내부환경개선이 29.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요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로 20.4%로 나타났다.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외하고는 20~30% 사이의 비슷한 수준의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IV-1-15> 어린이집 개선 사항(1+2순위)

단위: %(명)

구분	교직원 증원	교직원 역량 강화	실외 시설 정비	내부 환경 개선	안전 관리 강화	보육프로 그램의 다양화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	(수)
전체	20.8	30.7	20.6	29.3	26.8	51.3	20.4	(1,513)
보육연령								
0세	33.2	31.2	13.2	29.8	34.1	37.1	21.5	(205)
1세	19.9	27.4	17.0	32.9	28.5	49.8	24.5	(277)
2세	19.5	26.6	23.7	31.4	23.1	52.7	23.1	(338)
3세	17.9	33.2	20.5	30.1	22.7	54.1	21.4	(229)
4세	19.0	37.5	21.1	22.8	29.3	56.9	13.4	(232)
5세	17.2	31.0	26.7	27.6	25.4	55.2	16.8	(232)

구분	교직원 증원	교직원 역량 강화	실외 시설 정비	내부 환경 개선	안전 관리 강화	보육프로 그램의 다양화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	(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6	29.6	20.1	29.3	27.5	49.9	20.0	(844)
외벌이	17.2	32.1	21.2	29.4	26.0	53.1	20.9	(66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4	29.4	25.4	24.9	23.9	53.7	25.4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8	28.4	18.9	33.4	25.6	53.5	22.3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1.5	30.5	19.9	27.5	29.1	52.3	19.2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2.2	33.9	20.6	25.8	30.2	49.6	17.7	(248)
600만원 이상	23.6	31.8	20.3	31.5	25.6	48.4	18.9	(403)

라.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에 개인대리양육 이용 실태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에 개인대리양육 이용 실태 조사결과, 개인대리양육 이용을 하는 경우는 14.3%,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85.7%로 나타났다. 외벌이의 경우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6.0%인 반면, 맞벌이의 경우 21.0%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대리양육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16〉 개인대리양육 이용 여부

구분	개인대리양육 이용	개인대리양육 이용 안함	단위: %(명) 계(수)
전체	14.3	85.7	100.0 (1,513)
보육연령			
0세	16.1	83.9	100.0 (205)
1세	16.2	83.8	100.0 (277)
2세	12.7	87.3	100.0 (338)
3세	15.7	84.3	100.0 (229)
4세	14.7	85.3	100.0 (232)
5세	11.2	88.8	100.0 (232)
χ^2	4.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0	79.0	100.0 (844)
외벌이	6.0	94.0	100.0 (669)
χ^2	68.3***		

구분	개인대리양육 이용	개인대리양육 이용 안함	계(수)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5	94.5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7	93.3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1.6	88.4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1	89.9	100.0 (248)
600만원 이상	30.3	69.7	100.0 (403)
χ^2	118.8***		

*** $p < .001$.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대리양육 제공자를 물어본 결과, 조부모 돌봄이 75.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는 16.1%, 민간육아돌보미가 12.9%,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이 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7〉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제공자

단위: %(명)

구분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육아돌 보미	조부모 돌봄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기타	수
전체	16.1	12.9	75.6	6.5	2.3	(217)
보육연령						
0세	15.2	6.1	81.8	6.1	0.0	(33)
1세	15.6	13.3	75.6	6.7	0.0	(45)
2세	23.3	23.3	69.8	0.0	0.0	(43)
3세	19.4	13.9	66.7	8.3	5.6	(36)
4세	11.8	5.9	88.2	8.8	2.9	(34)
5세	7.7	11.5	73.1	11.5	7.7	(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5	11.9	75.7	5.6	2.3	(177)
외벌이	10.0	17.5	75.0	10.0	2.5	(40)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8.2	18.2	63.6	9.1	9.1	(1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3	8.3	87.5	4.2	0.0	(2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8.6	8.6	62.9	5.7	8.6	(35)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0	16.0	68.0	8.0	0.0	(25)
600만원 이상	13.9	13.9	79.5	6.6	0.8	(122)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이용 시간은 주로 하원 후부터 퇴근 전까지가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후~등원 전, 하원 후~퇴근 전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조부모와 친인척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의 경우 두 시간대를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다른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IV-1-18〉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이용 시간대

단위: %(명)

구분	부모 출근 후 ~ 등원 전	하원 후 ~ 부모 퇴근 전	부모 출근 후~ 등원 전, 하원 필요할 때마다		주말	기타	수
			후, 부모 퇴근 전	전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31.4	48.6	17.1	25.7	8.6	2.9	(35)
민간육아돌보미	25.0	57.1	28.6	28.6	7.1	7.1	(28)
조부모	14.0	43.9	39.0	34.1	7.3	2.4	(164)
조부모 외 친인척	21.4	50.0	50.0	57.1	14.3		(14)
기타		20.0	20.0			60.0	(5)

주당 평균시간은 조부모를 개인대리양육 제공자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14.0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민간육아돌보미 12.4시간,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가 6.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민간육아돌보미가 617,32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부모 외 친인척이 495,357원, 조부모가 484,390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9〉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 및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시간, 원(명)

구분	이용시간	이용비용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6.7	209,543	(35)
민간육아돌보미	12.4	617,321	(28)
조부모	14.0	484,390	(164)
조부모 외 친인척	5.7	495,357	(14)
기타	3.2	50,000	(5)

어린이집과 대리양육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시간 이외에 추가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아이연령이 어려서 가정교육과 병행하고 싶다는 응답이 21.2%, 사교육을 위해서가 6.0% 순으로 나타났다. 동시 이용 사유는 연령,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1-20〉 어린이집과 개인대리양육 동시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수)
전체	65.0	21.2	0.5	6.0	7.4	100.0 (217)
보육연령						
0세	60.6	33.3	0.0	0.0	6.1	100.0 (33)
1세	64.4	31.1	0.0	2.2	2.2	100.0 (45)
2세	65.1	14.0	2.3	14.0	4.7	100.0 (43)
3세	75.0	25.0	0.0	0.0	0.0	100.0 (36)
4세	67.6	2.9	0.0	14.7	14.7	100.0 (34)
5세	53.8	19.2	0.0	3.8	23.1	100.0 (26)
χ^2	46.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7.2	22.6	0.0	4.0	6.2	100.0 (177)
외벌이	55.0	15.0	2.5	15.0	12.5	100.0 (40)
χ^2	14.5**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5	9.1	0.0	9.1	27.3	100.0 (1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2.5	16.7	0.0	8.3	12.5	100.0 (2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4.3	22.9	2.9	8.6	11.4	100.0 (35)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2.0	36.0	0.0	4.0	8.0	100.0 (25)
600만원 이상	72.1	19.7	0.0	4.9	3.3	100.0 (122)
χ^2	22.9					

주: ①어린이집 이용시간 이외에 추가 돌봄이 필요해서, ②아이연령이 어려서 가정보육의 형태로 병행하길 위해서

③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④개별돌봄 시간 동안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⑤기타

*** $p < .001$, ** $p < .01$.

2.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2020년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현장에 도입되었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영유아 부모의 인지와 제도 이용 및 제도 설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보육지원체계개편 제도 인지 및 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2020년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제도 인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68.6%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과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변인에서 전체 수준과 같이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잘 알고 있음	대충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모름	계(수)
전체	27.6	41.0	26.0	5.4	100.0 (1,513)
보육연령					
0세	25.9	42.9	25.4	5.9	100.0(205)
1세	25.6	40.1	28.9	5.4	100.0(277)
2세	32.8	40.8	21.6	4.7	100.0(338)
3세	24.0	43.7	27.5	4.8	100.0(229)
4세	29.3	38.8	27.6	4.3	100.0(232)
5세	25.4	40.5	26.3	7.8	100.0(232)
χ^2	13.9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2	38.9	27.0	5.9	100.0(844)
외벌이	26.8	43.8	24.7	4.8	100.0(669)
χ^2	4.2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7.9	43.3	23.4	5.5	100.0(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7.9	43.5	22.8	5.8	100.0(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5.5	39.7	30.5	4.3	100.0(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7.0	41.1	25.8	6.0	100.0(248)
600만원 이상	29.0	38.7	26.8	5.5	100.0(403)
χ^2	7.6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기존의 12시간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여 연장반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연장보육 이용을 갖춘 가구의 영유아에게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영유아 가구가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1%가 연장보육 이용 자격조건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변인에 따라서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인지하고 있는 비율에서 맞벌이 가구(91.2%)와 외벌이 가구(88.8%)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2-2〉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조건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잘 알고 있음	대충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모름	계(수)
전체	36.6	53.5	7.6	2.3	100.0 (1,038)
보육연령					
0세	35.5	53.9	8.5	2.1	100.0 (141)
1세	34.1	56.6	7.7	1.6	100.0 (182)
2세	39.0	53.0	4.8	3.2	100.0 (249)
3세	33.5	53.5	11.0	1.9	100.0 (155)
4세	38.6	51.9	6.3	3.2	100.0 (158)
5세	37.9	51.6	9.2	1.3	100.0 (153)
χ^2	1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0	50.2	7.1	1.8	100.0 (566)
외벌이	31.4	57.4	8.3	3.0	100.0 (472)
χ^2	11.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5.0	56.6	7.0	1.4	100.0 (14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4.8	57.4	5.5	2.3	100.0 (256)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1.5	56.3	11.2	1.0	100.0 (197)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6.1	50.9	9.5	3.6	100.0 (169)
600만원 이상	43.2	47.6	6.2	2.9	100.0 (273)
χ^2	18.2				

* $p < .05$.

연장보육 이용 자격 중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8%가 취업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다자녀 가구 23.3%, 구직 및 취업준비 14.9%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0세반일수록 취업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4.4%로 높게 나타났고 1세 55.2%, 2세 43.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취업과 다자녀가구, 구직 및 취업준비, 임신·유산을 제외하고 다른 연장보육 이용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비율은 5% 이내로 나타났다.

〈표 IV-2-3〉 연장보육에 해당되는 자격여부

구분	전체	보육연령		
		0세	1세	2세
취업	52.8	64.4	55.2	43.8
구직 및 취업준비	14.9	14.6	11.9	17.5
장애	2.3	2.9	2.2	2.1
다자녀가구	23.3	17.6	24.5	25.7
임신·유산	9.4	11.2	11.6	6.5
한부모/조손가구	2.8	4.4	2.2	2.4
입원·간병	2.8	2.9	3.6	2.1
학업	3.9	4.9	3.6	3.6
장기부재	1.2	2.4	1.4	0.3
저소득층/다문화가정	3.2	2.9	3.6	3
기타	0.6	0.5	0	1.2
(수)	(820)	(205)	(277)	(338)

연장보육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유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의 54.3%가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29.8%는 “아이 연령이 어려서 가정보육의 형태로 병행하길 원해서”를 선택하였다.

〈표 IV-2-4〉 자격이 있음에도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수)
	전체	29.8	5.0	3.3	54.3	
보육연령						
0세	52.1	1.1	2.1	36.2	8.5	100.0 (94)
1세	36.5	0.0	2.9	53.8	6.7	100.0 (104)
2세	36.5	4.2	8.3	43.8	7.3	100.0 (96)
3세	26.2	4.7	0.9	57.9	10.3	100.0 (107)
4세	19.7	7.4	2.5	64.8	5.7	100.0 (122)
5세	13.4	11.6	3.6	64.3	7.1	100.0 (112)
χ^2	77.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1	4.2	4.9	53.6	7.2	100.0 (306)
외벌이	29.5	5.8	1.8	55.0	7.9	100.0 (329)
χ^2	5.5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수)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5.8	4.3	3.2	54.8	11.8	100.0 (9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7	3.2	1.3	63.9	7.0	100.0 (15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2.4	5.1	1.5	55.9	5.1	100.0 (13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4.0	7.8	5.8	39.8	12.6	100.0 (103)
600만원 이상	32.4	5.5	5.5	52.4	4.1	100.0 (145)
χ^2	29.4*					

주: ①아이 연령이 어려서 가정보육의 형태로 병행하길 원해서

②하원시간 이후에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③교사가 바뀌는 것에 아이가 적응하지 못해서

④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⑤기타

*** $p < 0.001$, * $p < .05$.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충분한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84.1%가 이용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5.9%의 응답자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부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변인에 따라서는 보육연령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5〉 어린이집 이용시간 충분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충분하다	충분한 편이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	계(수)
전체	9.7	74.4	15.5	0.4	100.0 (1,513)
보육연령					
0세	8.8	75.1	16.1	0.0	100.0 (205)
1세	5.8	73.6	20.6	0.0	100.0 (277)
2세	10.9	71.3	17.2	0.6	100.0 (338)
3세	10.9	74.2	14.4	0.4	100.0 (229)
4세	9.9	74.6	14.2	1.3	100.0 (232)
5세	12.1	79.3	8.6	0.0	100.0 (232)
χ^2	28.7*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1	74.4	15.2	0.4	100.0 (844)
외벌이	9.3	74.4	15.8	0.4	100.0 (669)
χ^2	0.4				

구분	매우 충분하다	충분한 편이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	계(수)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6.5	73.6	18.9	1.0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9.5	74.7	15.6	0.3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6	77.8	12.6	0.0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5	77.4	12.1	0.0	100.0 (248)
600만원 이상	11.2	70.2	17.9	0.7	100.0 (403)
χ^2	16.8				

* $p < .05$.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기본보육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8.9%는 기본보육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25.2%는 월 1회 이하로 이용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기본보육시간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5.8%의 응답자는 주 1회 이상 기본보육시간을 초과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6〉 기본보육 이용시간 초과 실태

단위: %(명)

구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1회	주 2~4회	매일	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계(수)
전체	25.2	10.0	3.5	1.3	1.0	58.9	100.0(762)
보육연령							
0세	25.7	14.2	6.2	0.9	0.9	52.2	100.0(113)
1세	21.6	7.4	3.7	1.2	2.5	63.6	100.0(162)
2세	26.7	7.5	1.9	1.2	0.0	62.7	100.0(161)
3세	24.5	12.7	2.0	2.9	1.0	56.9	100.0(102)
4세	25.2	13.0	2.6	0.9	0.9	57.4	100.0(115)
5세	28.4	7.3	5.5	0.9	0.9	56.9	100.0(109)
χ^2	23.4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으로 변화한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80.4%는 제도 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9.6%는 제도 변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변인에 따라서는 맞벌이 여

부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기본보육시간 변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외별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7〉 기본보육시간의 변화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계(수)
전체	9.1	71.3	17.3	2.2	100.0 (1,513)
보육연령					
0세	12.7	62.9	21.5	2.9	100.0 (205)
1세	8.7	71.1	18.4	1.8	100.0 (277)
2세	8.3	71.6	18.0	2.1	100.0 (338)
3세	9.2	72.9	13.5	4.4	100.0 (229)
4세	7.8	73.7	16.4	2.2	100.0 (232)
5세	8.6	74.6	15.5	1.3	100.0 (232)
χ^2	1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9.5	67.3	20.7	2.5	100.0 (844)
외별이	8.5	76.4	12.9	2.2	100.0 (669)
χ^2	18.2***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8.5	76.6	12.9	2.0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7.8	76.3	13.9	1.9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9	69.2	19.5	2.3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1.7	69.4	17.3	1.6	100.0 (248)
600만원 이상	8.9	67.0	20.6	3.5	100.0 (403)
χ^2	17.1				

*** $p < 0.001$.

기본보육시간 변화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37.5%가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장시간 보육이 줄어들어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20.4%, “어차피 16시 이후로는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이 많지 않았으므로” 19.3% 순으로 조사되었다. 분석변인에 따라서는 보육연령과 맞벌이 여부가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구 특성에 따라 기본보육시간 변화에 찬성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8〉 기본보육시간 변화에 찬성하는 이유

구분	단위: %(명)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20.4	19.3	37.5	17.3	4.9	0.7	100.0(1,216)
보육연령							
0세	21.3	14.2	31.0	27.1	5.2	1.3	100.0(155)
1세	21.7	15.8	35.7	21.3	4.5	0.9	100.0(221)
2세	16.3	20.4	35.6	20.0	7.0	0.7	100.0(270)
3세	20.7	20.7	39.4	12.8	5.9	0.5	100.0(188)
4세	24.9	23.3	40.7	7.9	3.2	0.0	100.0(189)
5세	19.2	20.7	42.5	14.5	2.6	0.5	100.0(193)
χ^2	4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8	14.5	39.2	20.2	4.0	0.3	100.0(648)
외벌이	18.8	24.8	35.6	13.9	5.8	1.1	100.0(568)
χ^2	30.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0.5	21.6	43.9	16.4	5.3	2.3	100.0(17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1.9	22.2	35.4	15.9	4.3	0.3	100.0(302)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2.0	17.8	36.9	15.7	6.8	0.8	100.0(23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0.9	16.9	41.3	17.9	2.5	0.5	100.0(201)
600만원 이상	22.9	18.0	34.0	19.9	5.2	0.0	100.0(306)
χ^2	33.2*						

주: ①장시간 보육이 줄어들어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②여차피 16시 이후로는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이 많지 않았으므로

③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예전보다 더 당당하게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어서

⑤예전보다 지원수준이 더 확대되었다고 느껴져서

⑥기타

*** $p < 0.001$, ** $p < 0.01$, * $p < .05$.

기본보육시간 변화에 반대하는 응답자에게 반대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39.4%가 기본보육시간 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연장보육이 어려워져 돌봄 공백이 발생할까봐”를 반대 이유로 선택하였고 그다음으로는 24.6%가 “연장보육에 남게 되는 아이가 적어서, 아이가 싫어할까봐”를 선택하였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연장보육에 남게 되는 아이가 적어서, 아이가 싫어할까봐”를 반대의 주된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30.1%로 나타났다.

〈표 IV-2-9〉 기본보육시간 변화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39.4	24.6	16.2	8.4	4.4	2.0	5.1	100.0(297)
보육연령								
0세	44.0	16.0	14.0	16.0	2.0	2.0	6.0	100.0(50)
1세	39.3	28.6	12.5	7.1	5.4	1.8	5.4	100.0(56)
2세	44.1	25.0	13.2	5.9	4.4	1.5	5.9	100.0(68)
3세	26.8	31.7	26.8	2.4	0.0	4.9	7.3	100.0(41)
4세	41.9	30.2	16.3	2.3	7.0	0.0	2.3	100.0(43)
5세	35.9	15.4	17.9	17.9	7.7	2.6	2.6	100.0(39)
χ^2	3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8	30.1	13.8	7.1	4.1	1.0	5.1	100.0(196)
외벌이	40.6	13.9	20.8	10.9	5.0	4.0	5.0	100.0(101)
χ^2	13.3*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6.7	23.3	10.0	13.3	6.7	0.0	10.0	100.0(3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1.6	17.5	33.3	5.3	3.5	3.5	5.3	100.0(5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6.4	28.8	16.7	4.5	6.1	1.5	6.1	100.0(6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4.0	36.2	10.6	12.8	0.0	2.1	4.3	100.0(47)
600만원 이상	49.5	20.6	10.3	9.3	5.2	2.1	3.1	100.0(97)
χ^2	33.5#							

주: ①실질적으로 연장보육 이용이 어려워져 돌봄 공백이 발생할까봐
 ②연장보육에 남게 되는 아이가 적어서, 아이가 싫어할까봐
 ③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④추가적인 다른 육아서비스 이용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서
 ⑤어린이집에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⑥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까봐
 ⑦기타

* $p < .05$, # $p < 0.1$.

나. 연장보육 자격 및 비용의 적절성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연장보육 이용 자격은 개편 이전의 맞춤형 보육 이용 자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확대한 측면이 있다. 각각의 연장보육 이용 자격의 적절성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질문한 결과 다음 〈표 IV-2-10〉과 같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연장보육 자격의 적절성에 대해 모든 자격 조건에서 60%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임금근로자 97.7%, 아동의 부모가 장

애인 경우 96.5%, 입원·간병 96.5% 등 전반적으로 연장보육 자격 조건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중 구직급여수급자와 구직등록의 경우는 각각 69.1%, 68.6%로 다른 자격조건에 비해 다소 낮은 응답을 보였다.

〈표 IV-2-10〉 연장보육 자격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매우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부적절	계(수)	평균
임금근로자	45.1	52.6	2.0	0.3	100.0 (1,513)	3.4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37.3	56.4	5.6	0.7	100.0 (1,513)	3.3
농어업인	31.5	58.9	8.3	1.3	100.0 (1,513)	3.2
예술인	22.7	55.8	18.8	2.6	100.0 (1,513)	3.0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에 한정)	22.8	54.5	18.5	4.2	100.0 (1,513)	3.0
구직급여수급자	17.7	51.4	27.0	4.0	100.0 (1,513)	2.8
직업훈련	21.9	62.3	14.1	1.7	100.0 (1,513)	3.0
구직등록	17.1	51.5	27.8	3.6	100.0 (1,513)	2.8
구직자	18.9	53.6	24.0	3.5	100.0 (1,513)	2.9
장애(아동의 부모)	59.4	37.1	3.0	0.5	100.0 (1,513)	3.6
장애(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57.8	38.3	3.6	0.3	100.0 (1,513)	3.5
다자녀	48.6	44.5	5.9	0.9	100.0 (1,513)	3.4
임신·유산	49.0	45.7	4.7	0.7	100.0 (1,513)	3.4
한부모가정	57.4	38.2	3.8	0.6	100.0 (1,513)	3.5
조손가정	54.9	40.3	4.0	0.8	100.0 (1,513)	3.5
입원·간병(아동의 형제 자매)	58.8	37.7	3.0	0.5	100.0 (1,513)	3.5
입원·간병(조부모)	53.1	40.3	6.0	0.6	100.0 (1,513)	3.5
입원·간병(부모)	58.2	37.9	3.3	0.6	100.0 (1,513)	3.5
재학	34.1	51.6	12.8	1.5	100.0 (1,513)	3.2
학위과정	32.3	50.8	15.6	1.3	100.0 (1,513)	3.1
장기부재	45.1	43.9	9.3	1.8	100.0 (1,513)	3.3
저소득층	43.1	44.7	10.5	1.7	100.0 (1,513)	3.3
다문화가정	29.6	43.8	19.9	6.7	100.0 (1,513)	3.0
기타(연장보육 신청사유서)	30.6	57.5	9.8	2.1	100.0 (1,513)	3.2

17:00 이후의 연장보육 이용은 전담교사 인건비와 아동의 시간당 이용시간 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간당 보육료는 0세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이처럼 시간당 지원하고 있는 연장보육 시간당 보육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31.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변인에 따라서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시간당 보육료 수준이 적절하지 않아도 체감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11〉 연장보육을 지원하는 시간당 지원 보육료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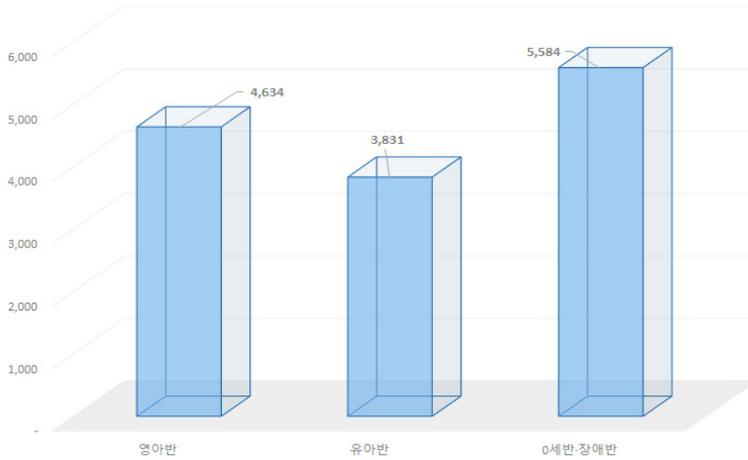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계(수)
전체	4.4	64.2	27.0	4.4	100.0 (1,513)
보육연령					
0세	5.9	60.0	28.8	5.4	100.0 (205)
1세	4.0	67.9	25.3	2.9	100.0 (277)
2세	3.6	67.5	24.3	4.7	100.0 (338)
3세	3.5	64.6	28.4	3.5	100.0 (229)
4세	5.6	60.3	28.9	5.2	100.0 (232)
5세	4.7	62.5	28.4	4.3	100.0 (232)
χ^2	1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4.0	62.6	28.1	5.3	100.0 (844)
외벌이	4.9	66.4	25.7	3.0	100.0 (669)
χ^2	7.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0	67.2	25.4	2.5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	64.9	27.6	3.6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	67.2	26.5	3.3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	61.7	27.4	4.8	100.0 (248)
600만원 이상	4.7	61.5	27.5	6.2	100.0 (403)
χ^2	11.3				

$p < 0.1$.

연장보육의 시간당 보육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질 높은 연장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시간당 지원 단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0세반과 장애아반은 시간당 5,584원, 영아반 4,634원, 유아반 3,831원 정도 되어야 질 높은 연장보육 활동 지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1] 질 높은 연장보육을 위한 시간당 지원 단가

단위: 원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기존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인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아동에게 연장보육 시간에는 쉬과 놀이 중심의 활동을 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쉬과 놀이 중심의 연장보육활동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응답자가 쉬과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육활동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2> 쉬과 놀이 중심의 연장보육활동의 적절성

구분	단위: %, 천원(명)				계(수)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전체	24.3	68.2	6.9	0.6	100.0 (1,513)
보육연령					
0세	24.4	68.8	6.3	0.5	100.0 (205)
1세	21.7	71.5	6.9	0.0	100.0 (277)
2세	22.5	70.1	6.8	0.6	100.0 (338)
3세	22.7	67.7	7.9	1.7	100.0 (229)
4세	29.3	62.9	6.9	0.9	100.0 (232)
5세	26.7	66.8	6.5	0.0	100.0 (232)
χ^2	15.0				



구분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1	66.7	7.6	0.6	100.0 (844)
외벌이	23.3	70.1	6.0	0.6	100.0 (669)
χ^2	2.5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2.4	71.1	6.5	0.0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2.6	70.5	6.1	0.8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4.5	67.5	7.3	0.7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3.4	70.2	6.5	0.0	100.0 (248)
600만원 이상	27.3	64.0	7.7	1.0	100.0 (403)
χ^2	9.0				

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이용시간 및 만족도 변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시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 결과,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14.4%, 이용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응답이 15.5%로 나타났고 70.1%는 이용시간에 변화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3〉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영향

단위: %(명)

구분	이용시간을 이용시간을			이용시간을 이용시간을		계(수)
	많이 단축하였음	조금 단축하였음	변화없음	조금 연장하였음	많이 연장하였음	
전체	3.2	11.2	70.1	13.8	1.7	100.0 (1,513)
보육연령						
0세	2.4	11.7	72.7	9.3	3.9	100.0 (205)
1세	2.9	9.0	71.8	14.8	1.4	100.0 (277)
2세	2.1	9.8	69.2	17.5	1.5	100.0 (338)
3세	4.8	10.0	66.4	16.6	2.2	100.0 (229)
4세	3.0	14.7	69.4	12.1	0.9	100.0 (232)
5세	4.3	13.4	71.1	10.3	0.9	100.0 (232)
χ^2	29.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	10.5	70.1	13.6	2.1	100.0 (844)
외벌이	2.7	12.1	70.0	14.1	1.2	100.0 (669)
χ^2	3.6					

구분	이용시간을 이용시간을 많이 조금		변화없음	이용시간을 이용시간을 조금 많이		계(수)
	단축하였음	단축하였음		연장하였음	연장하였음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5	12.9	71.6	12.9	1.0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1	12.8	68.5	14.5	1.1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6	10.6	69.5	16.2	1.0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	12.5	70.6	11.3	2.8	100.0 (248)
600만원 이상	4.7	8.7	70.7	13.4	2.5	100.0 (403)
χ^2	17.6					

$p < 0.1$.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4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보육시간은 오후 4시로 정하였으나 아이들의 하원을 고려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간은 오후 5시까지 설정하여 연장보육을 시작하는 시간과 한 시간 겹치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보육의 보육료 지원 시간을 한 시간으로 설정하여 연장보육 시작 시간과 겹쳐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질문한 결과, 전체의 58.3%는 타당하다고 응답하였고 41.7%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4〉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겹쳐지는 것에 대한 타당성

구분	단위: %(명)		
	네	아니오	계(수)
전체	58.3	41.7	100.0 (1,513)
보육연령			
0세	54.6	45.4	100.0 (205)
1세	52.0	48.0	100.0 (277)
2세	59.2	40.8	100.0 (338)
3세	59.0	41.0	100.0 (229)
4세	60.8	39.2	100.0 (232)
5세	64.7	35.3	100.0 (232)
χ^2	1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57.7	42.3	100.0 (844)
외벌이	59.0	41.0	100.0 (669)
χ^2	0.3		

구분	네	아니오	계(수)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7	45.3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8.2	41.8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6.6	43.4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2.1	37.9	100.0 (248)
600만원 이상	59.1	40.9	100.0 (403)
χ^2	3.0		

$p < 0.1$.

연장보육 시작시간과 기본보육의 종료 이후 하원시간으로 설정되어 한 시간씩 겹쳐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장보육의 시작시간과 겹쳐지는 기본보육의 종료 시간을 최소화한다면 얼마나 적당한지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6.1%가 21-30분 사이로 두 개로 구분이 보육시간이 겹쳐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응답하였고 평균적으로는 29.9분 정도 겹쳐지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5>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겹쳐질 시 적당한 시간

단위: %, 분(명)

구분	10분 이하	11~20분	21~30분	31~40분	41~50분	51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3.0	7.3	66.1	1.3	1.4	10.9	100.0(631)	29.9
보육연령								
0세	14.0	8.6	61.3	2.2	1.1	12.9	100.0(93)	30.1
1세	13.5	4.5	67.7	0.8	2.3	11.3	100.0(133)	30.4
2세	10.9	8.7	72.5	0.0	0.7	7.2	100.0(138)	28.9
3세	11.7	8.5	66.0	2.1	0.0	11.7	100.0(94)	30.1
4세	14.3	5.5	59.3	2.2	3.3	15.4	100.0(91)	31.6
5세	14.6	8.5	65.9	1.2	1.2	8.5	100.0(82)	28.2
χ^2/F	20.4							0.7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4	7.6	65.8	1.7	1.7	9.8	100.0(357)	29.4
외벌이	12.4	6.9	66.4	0.7	1.1	12.4	100.0(274)	30.5
χ^2/F	2.8							0.9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8.8	8.8	72.5	0.0	1.1	8.8	100.0(91)	29.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3	4.7	67.3	0.7	2.0	12.0	100.0(150)	30.4

구분	10분 이하	11~20 분	21~30 분	31~40 분	41~50 분	51분 이상	계(수)	평균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4.5	10.7	56.5	2.3	0.0	16.0	100.0(131)	30.8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6	4.3	74.5	1.1	1.1	8.5	100.0(94)	30.2
600만원 이상	15.2	7.9	64.2	1.8	2.4	8.5	100.0(165)	28.6
χ^2/F	20.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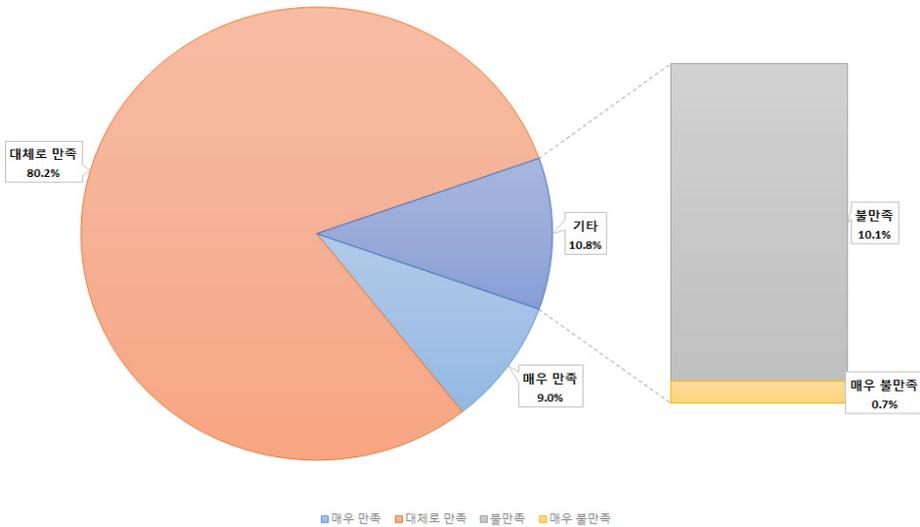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시작한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변화 정도를 2020년 이전에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9.1%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8.3%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에 비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0세반을 이용하는 부모의 24.2%는 전년에 비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2-16〉 기본보육시간 도입 후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변화 정도

구분	질적 수준이 좋아짐	변화 없음	질적 수준이 나빠짐	계(수)
전체	18.3	79.1	2.5	100.0(1,194)
보육연령				
0세	24.2	71.0	4.8	100.0(62)
1세	22.9	75.9	1.2	100.0(170)
2세	19.3	78.7	2.0	100.0(301)
3세	15.2	81.0	3.8	100.0(210)
4세	15.2	82.1	2.7	100.0(224)
5세	18.1	79.7	2.2	100.0(227)
χ^2	1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5	78.3	2.2	100.0(640)
외벌이	17.0	80.1	2.9	100.0(554)
χ^2	1.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9.1	79.0	1.9	100.0(15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9	79.2	2.9	100.0(27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6	82.0	2.5	100.0(24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8.8	77.7	3.6	100.0(197)
600만원 이상	20.2	77.9	1.9	100.0(317)
χ^2	3.8			



[그림 IV-2-2]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 대비 어린이집 만족 수준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만족 수준을 비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2019년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에게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어떠한지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89.2%가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과 비교하여 어린이집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1.8%의 응답자만이 이전과 비교하여 어린이집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3. 보육의 질 요구 수준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들을 통한 보육의 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측면의 판단 기준, 질적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았다.

가. 어린이집 선택에서 고려하는 보육의 질

어린이집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해서 1, 2순위를 함께 물어본 결과 보육의 질이 55.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8.9%로 접근성, 인지도 등 주위의 평판이 3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어린이집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1+2순위)

단위: %(명)

구분	운영 시간	접근성	보육의 질	보육 프로 그램	비용	운영 주체	인지도 주위의 평판	기타	(수)
전체	16.3	48.9	55.5	22.7	8.7	14.2	32.2	1.5	(1,513)
보육연령									
0세	22.0	60.5	51.7	14.1	2.4	9.3	38.5	1.5	(205)
1세	19.1	54.9	48.7	15.5	7.2	15.5	38.3	0.7	(277)
2세	17.8	51.8	54.4	21.6	7.7	12.7	31.4	2.7	(338)
3세	11.4	41.0	63.8	24.9	8.7	17.0	32.3	0.9	(229)
4세	10.8	41.8	61.2	30.6	13.8	15.1	25.4	1.3	(232)
5세	16.4	42.2	54.3	30.6	12.5	15.5	27.2	1.3	(2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9	48.5	55.9	19.3	6.4	14.3	31.4	1.3	(844)
외벌이	8.1	49.5	54.9	27.1	11.7	14.1	33.2	1.6	(66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8.5	45.3	53.7	23.4	16.9	13.4	36.8	2.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0.6	52.1	56.5	23.7	11.4	12.8	32.0	0.8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2	49.3	54.6	22.5	8.6	13.9	34.1	1.7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1.0	52.0	53.2	22.6	4.8	16.5	27.4	2.4	(248)
600만원 이상	23.3	45.7	57.3	21.8	4.7	14.6	31.5	1.0	(403)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사항으로는 19:30까지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연장보육)가 5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등원시간이 24.7%, 시간 연장 이용 14.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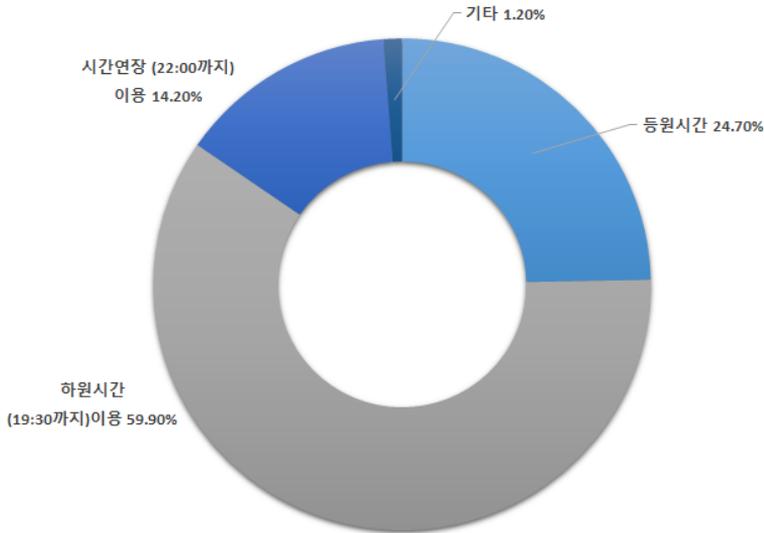
〈표 IV-3-2〉 어린이집 운영시간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등원시간	하원시간 (19:30까지) 이용	시간연장 (22:00까지) 이용	기타	계(수)
전체	24.7	59.9	14.2	1.2	100.0(247)
보육연령					
0세	24.4	51.1	22.2	2.2	100.0(45)
1세	18.9	71.7	7.5	1.9	100.0(53)
2세	21.7	61.7	16.7	0.0	100.0(60)
3세	30.8	50.0	15.4	3.8	100.0(26)
4세	36.0	60.0	4.0	0.0	100.0(25)
5세	26.3	57.9	15.8	0.0	100.0(38)
χ^2	14.4				

구분	등원시간	하원시간 (19:30까지) 이용	시간연장 (22:00까지) 이용	기타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4	61.1	14.0	0.5	100.0(193)
외벌이	25.9	55.6	14.8	3.7	100.0(54)
χ^2	3.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5.3	47.1	17.6	0.0	100.0(1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2	68.4	15.8	2.6	100.0(3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2.6	50.0	15.2	2.2	100.0(4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1.2	71.2	5.8	1.9	100.0(52)
600만원 이상	25.5	57.4	17.0	0.0	100.0(94)
χ^2	13.1				

[그림 IV-3-1] 어린이집 운영시간 고려사항



자료: <표 IV-3-2>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냄.

다음으로 접근성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는 집과의 거리가 8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차량운행여부가 8.0%, 형제제원 여부가 1.8%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IV-3-3〉 어린이집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집과의 거리	차량운행 여부	형제자원 여부	기타	계(수)
전체	89.5	8.0	1.8	0.8	100.0(740)
보육연령					
0세	90.3	8.1	1.6	0.0	100.0(124)
1세	90.8	5.9	1.3	2.0	100.0(152)
2세	92.0	6.3	1.7	0.0	100.0(175)
3세	89.4	8.5	1.1	1.1	100.0(94)
4세	82.5	12.4	3.1	2.1	100.0(97)
5세	88.8	9.2	2.0	0.0	100.0(98)
χ^2	13.9				
맞벌이 여부					
맞벌이	91.0	6.6	1.5	1.0	100.0(409)
외벌이	87.6	9.7	2.1	0.6	100.0(331)
χ^2	3.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90.1	9.9	0.0	0.0	100.0(9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6.1	10.7	2.7	0.5	100.0(18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1.3	4.7	2.0	2.0	100.0(149)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90.7	9.3	0.0	0.0	100.0(129)
600만원 이상	90.2	6.0	2.7	1.1	100.0(184)
χ^2	16.3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는 보육과정의 체계성이 40.7%,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34.9%, 교재교구의 다양성이 12.8%, 보육활동의 차별성이 1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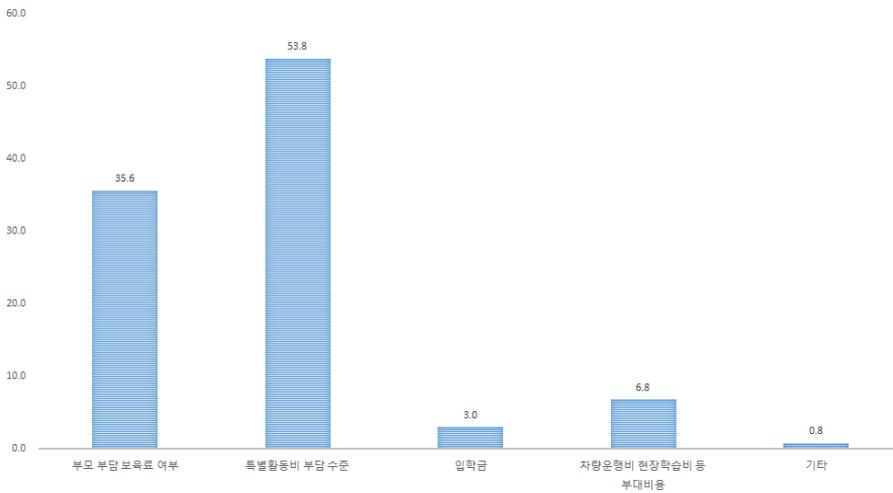
구분	보육활동의 차별성	보육과정의 체계성	교재교구의 다양성	특별활동 프로그램	계(수)
전체	11.6	40.7	12.8	34.9	100.0(344)
보육연령					
0세	13.8	41.4	24.1	20.7	100.0 (29)
1세	11.6	34.9	18.6	34.9	100.0 (43)
2세	11.0	37.0	15.1	37.0	100.0 (73)
3세	7.0	50.9	3.5	38.6	100.0 (57)

구분	보육활동의 차별성	보육과정의 체계성	교재교구의 다양성	특별활동 프로그램	계(수)
4세	5.6	39.4	8.5	46.5	100.0 (71)
5세	21.1	40.8	14.1	23.9	100.0 (71)
χ^2	2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1	43.6	9.8	32.5	100.0 (163)
외벌이	9.4	38.1	15.5	37.0	100.0 (181)
χ^2	4.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0	29.8	19.1	34.0	100.0 (4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0.6	40.0	15.3	34.1	100.0 (8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8	41.2	14.7	35.3	100.0 (68)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7	46.4	8.9	33.9	100.0 (56)
600만원 이상	12.5	43.2	8.0	36.4	100.0 (88)
χ^2	8.2				

* $p < .05$.

[그림 IV-3-2] 어린이집 비용 고려사항

단위: %



자료: <표 IV-3-5>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냄.

〈표 IV-3-5〉 어린이집 비용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부모 부담 보육료 여부	특별활동비 부담 수준	입학금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등 부대비용	기타	계(수)
전체	35.6	53.8	3.0	6.8	0.8	100.0(132)
보육연령						
0세	60.0	20.0	0.0	0.0	20.0	100.0(5)
1세	30.0	55.0	5.0	10.0	0.0	100.0(20)
2세	38.5	42.3	7.7	11.5	0.0	100.0(26)
3세	35.0	65.0	0.0	0.0	0.0	100.0(20)
4세	31.3	59.4	0.0	9.4	0.0	100.0(32)
5세	37.9	55.2	3.4	3.4	0.0	100.0(29)
χ^2	36.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9	46.3	5.6	9.3	0.0	100.0(54)
외벌이	33.3	59.0	1.3	5.1	1.3	100.0(78)
χ^2	4.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3.5	61.8	2.9	8.8	2.9	100.0(3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0	53.7	0.0	7.3	0.0	100.0(41)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2.3	46.2	7.7	3.8	0.0	100.0(2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1.7	58.3	0.0	0.0	0.0	100.0(12)
600만원 이상	36.8	47.4	5.3	10.5	0.0	100.0(19)
χ^2	11.3					

* $p < .05$.

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요인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건강과 안전이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 19.0%, 교사의 자격과 원장의 자질이 18.1%, 18.0% 순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 맞벌이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6〉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18.0	18.1	2.1	27.4	6.7	19.0	7.6	1.1	100.0(839)
보육연령									
0세	17.0	24.5	0.9	27.4	10.4	12.3	7.5	0.0	100.0(106)
1세	11.9	20.7	2.2	26.7	6.7	20.0	10.4	1.5	100.0(135)
2세	21.2	13.6	3.3	29.9	4.9	17.9	7.1	2.2	100.0(184)
3세	22.6	15.1	2.7	21.9	7.5	19.9	9.6	0.7	100.0(146)
4세	14.1	19.0	2.1	28.9	7.0	22.5	5.6	0.7	100.0(142)
5세	19.8	19.0	0.8	29.4	4.8	19.8	5.6	0.8	100.0(126)
χ^2	3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3	17.4	2.1	27.8	7.4	20.3	7.8	0.8	100.0(472)
외벌이	20.2	19.1	2.2	27.0	5.7	17.2	7.4	1.4	100.0(367)
χ^2	4.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0.4	16.7	1.9	33.3	5.6	16.7	4.6	0.9	100.0(10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2	16.3	3.4	27.1	8.4	14.8	11.3	1.5	100.0(20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8.8	21.8	1.2	19.4	7.3	23.0	6.7	1.8	100.0(165)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9.7	18.2	2.3	27.3	4.5	20.5	7.6	0.0	100.0(132)
600만원 이상	16.0	17.7	1.7	30.7	6.5	19.9	6.5	0.9	100.0(231)
χ^2	25.8								

주: ①원장의 자질, ②교사 자격, ③교사 경력, ④건강과 안전, ⑤급간식의 질, ⑥어린이집 실내·외 환경, ⑦교사 대 아동 비율, ⑧기타

또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대해서 교사 자격 강화가 29.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23.1%, 보육프로그램의 충실화 15.6%, 어린이집 안전 강화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IV-3-6〉에서 건강과 안전이 보육의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로, 건강과 안전은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질 판단 시 18.1%가 고려했던 교사의 자격 개선과 7.6%이 고려했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나 교사 자격 개선과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V-3-7〉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29.0	15.6	8.4	4.6	12.2	6.8	23.1	0.3	100.0 (1,513)
보육연령									
0세	30.2	6.3	8.3	7.8	14.1	5.4	27.3	0.5	100.0 (205)
1세	28.5	14.8	8.7	5.8	12.6	9.7	19.9	0.0	100.0 (277)
2세	30.5	16.0	8.6	4.1	12.7	7.1	20.7	0.3	100.0 (338)
3세	30.6	16.2	7.0	4.4	12.2	5.7	23.6	0.4	100.0 (229)
4세	28.0	19.0	8.2	2.2	10.8	5.6	26.3	0.0	100.0 (232)
5세	25.9	20.3	9.5	3.9	10.3	6.5	22.8	0.9	100.0 (232)
χ^2	4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2	16.0	7.5	6.0	12.8	6.4	24.6	0.5	100.0 (844)
외벌이	32.6	15.1	9.6	2.8	11.4	7.3	21.1	0.1	100.0 (669)
χ^2	20.0**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5.9	13.9	10.0	4.0	12.4	7.5	26.4	0.0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6	15.6	8.4	3.1	16.2	6.4	19.2	0.6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9.5	14.2	6.6	3.6	12.9	6.3	26.5	0.3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9	13.7	8.1	6.0	10.5	6.9	22.6	0.4	100.0 (248)
600만원 이상	27.0	18.6	9.2	6.2	8.9	7.2	22.6	0.2	100.0 (403)
χ^2	29.4								

주: ①교사 자격 강화, ②보육프로그램 충실화, ③평가인증을 통한 관리 강화, ④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 ⑤어린이집 안전 강화, ⑥어린이집 실내외 환경 개선, ⑦교사 대 아동 비율, ⑧기타

** $p < .01$.

다음으로는 담임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72.5%의 응답자들이 아동과 상호작용을 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18.1%가 온정적이고 인내심이 많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5% 미만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사의 상호작용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사의 온정성과 인내심을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3-8〉 담임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0.2	2.5	4.2	18.1	72.5	1.0	1.3	0.2	100.0 (1,513)
보육연령									
0세	0.0	3.4	2.0	22.4	66.3	2.4	3.4	0.0	100.0 (205)
1세	0.4	2.2	5.4	22.7	67.5	1.1	0.7	0.0	100.0 (277)
2세	0.3	1.5	5.3	18.3	72.8	0.6	0.9	0.3	100.0 (338)
3세	0.0	3.9	2.2	16.2	76.0	0.4	0.9	0.4	100.0 (229)
4세	0.4	2.2	6.5	10.3	78.0	1.3	1.3	0.0	100.0 (232)
5세	0.0	2.6	2.6	18.1	74.6	0.4	1.3	0.4	100.0 (232)
χ^2	5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0.4	2.7	4.1	20.0	70.1	1.1	1.4	0.1	100.0 (844)
외벌이	0.0	2.2	4.2	15.7	75.5	0.9	1.2	0.3	100.0 (669)
χ^2	8.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0.0	1.5	3.5	16.4	75.6	0.5	2.5	0.0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0.0	2.8	5.8	15.3	73.3	1.4	0.8	0.6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0.0	2.0	3.3	18.5	74.2	0.7	1.0	0.3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0.0	3.6	4.8	19.0	70.2	1.6	0.8	0.0	100.0 (248)
600만원 이상	0.7	2.5	3.2	20.6	70.5	0.7	1.7	0.0	100.0 (403)
χ^2	30.2								

주: ①학력이 높은 교사, ②경력이 많은 교사, ③자녀를 키워본 경험 있는 교사, ④온정적, 인내심이 많은 교사, ⑤아동과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⑥보육 지식이 높은 교사, ⑦부모와 소통이 원활한 교사, ⑧기타

* $p < .05$.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교사 1명 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5세 20명(보건복지부, 2020:204))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0세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6.3%로 과반 이상이었으나, 1세는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43.5%, 2세는 49.9%, 3세는 60.2%, 4세 이상은 63.0%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9〉 교사 대 아동 수에 대한 적절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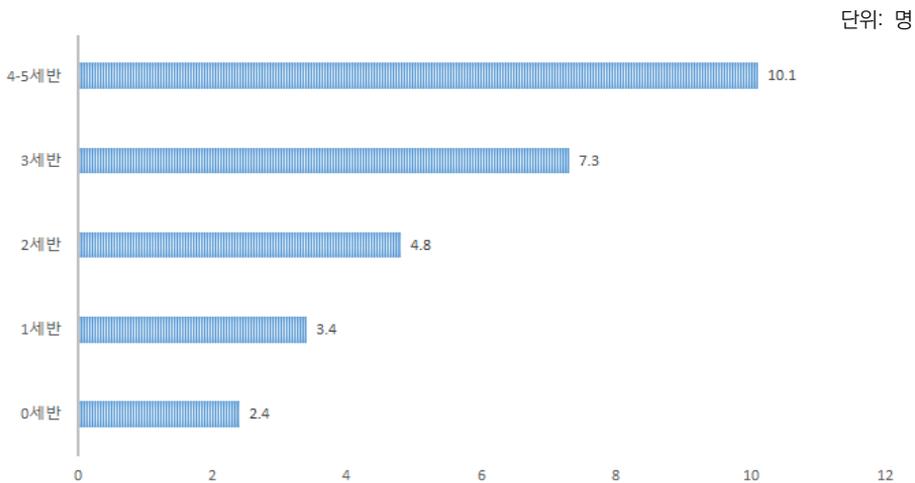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매우 많다	많은편이다	적절하다	적은편이다	매우적다	계(수)
0세	4.0	28.7	56.3	9.2	1.9	100.0 (1,513)
1세	4.8	38.7	42.0	12.5	2.0	100.0 (1,513)

구분	매우 많다	많은편이다	적절하다	적은편이다	매우적다	계(수)
2세	7.7	42.2	34.7	12.9	2.5	100.0 (1,513)
3세	17.7	42.5	22.3	12.6	4.8	100.0 (1,513)
4세 이상	24.3	38.7	19.0	12.6	5.4	100.0 (1,513)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0세반은 2.4명, 1세반은 3.4명, 2세반은 4.8명, 3세반 7.3명, 4~5세반 10.1명으로 전 연령에서 현재 수준보다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낮아져야 보육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세 이상에서는 현재 수준보다 절반 정도로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가 줄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3-3]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적정 교사 대 아동 수



교사 대 아동 수 감소를 위해 추가비용 부담 의사를 확인한 결과, 74.2%의 응답자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0세가 80.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4~5세가 약 77~7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세가 65.0%로 가장 적은 응답자 비율을 보였다.

〈표 IV-3-10〉 교사 대 아동 수 감소를 위한 추가비용 부담 의사

단위: %(명)

구분	네	아니오	계(수)
전체	74.2	25.8	100.0 (1,513)
보육연령			
0세	80.6	19.4	100.0 (205)
1세	76.8	23.2	100.0 (277)
2세	65.0	35.0	100.0 (338)
3세	72.4	27.6	100.0 (229)
4세	78.3	21.7	100.0 (232)
5세	77.3	22.7	100.0 (232)
χ^2	16.5**		
맞벌이 여부			
맞벌이	74.9	25.1	100.0 (844)
외벌이	73.3	26.7	100.0 (669)
χ^2	0.3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67.7	32.3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70.2	29.8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2.8	27.2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6.1	23.9	100.0 (248)
600만원 이상	80.7	19.3	100.0 (403)
χ^2	11.6*		

** $p < .01$, * $p < .05$.

4. 보육비용 대비 질적 수준 평가 및 보육료 부담 수준

2020년 보육료 지원단가는 인건비 미지원 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를 합쳐 0세 970천원, 1세 686천원, 2세 527천원이다. 2020년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비교하여 보육서비스와 환경의 질적 수준이 적절한지 세부항목에 따라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조사결과, 8개 세부항목에서 보육비용 대비 적절하다는 응답이 60% 이상 높게 나타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육료 지원에 비해 질적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다소 높은 항목은 교사 수(35.4%), 어린이집 보조인력 수(34.6%)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에 비해 어린이집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1〉 정부 보육비용지원 대비 질적 수준 평가

단위: %(명)

구분	매우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부적절	계(수)	평균
교사수	4.0	60.5	32.8	2.6	100.0 (1,513)	2.7
교사의 자격 및 자질	6.1	75.8	17.0	1.1	100.0 (1,513)	2.9
보육활동	6.7	80.5	12.0	0.8	100.0 (1,513)	2.9
교재교구 및 장비	6.9	73.6	18.5	0.9	100.0 (1,513)	2.9
급간식	10.2	72.6	15.8	1.5	100.0 (1,513)	2.9
어린이집 보조인력 수	5.8	59.7	32.8	1.8	100.0 (1,513)	2.7
건강 및 안전관리	9.3	76.5	13.5	0.8	100.0 (1,513)	2.9
실내외 환경	7.9	71.2	19.8	1.1	100.0 (1,513)	2.9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2012년 0~2세 무상 보육이 도입되고 2013년 3~5세 누리과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어린이집 비용을 차등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미지원 기관의 차액보육료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로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무상보육 수준은 다를 수 있으나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인건비 미지원 기관의 차액보육료 또한 전액 지원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기타 필요경비 수준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일부 시도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어린이집 비용 부담 수준이 현저히 낮은 곳도 있다.

〈표 IV-4-2〉 차등조건 없는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0-2세				3-5세				계(수)
	매우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부적절	매우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부적절	
전체	19.1	62.8	16.8	1.3	17.8	67.9	13.4	0.9	100.0(1,513)
보육연령									
0세	26.3	57.6	14.6	1.5	22.0	62.4	14.6	1.0	100.0 (205)
1세	20.2	62.8	16.2	0.7	17.0	70.8	11.9	0.4	100.0 (277)
2세	18.0	66.3	14.5	1.2	18.0	68.0	12.7	1.2	100.0 (338)
3세	17.5	63.8	17.0	1.7	16.2	68.1	14.4	1.3	100.0 (229)
4세	16.4	65.5	17.2	0.9	17.7	72.4	9.5	0.4	100.0 (232)
5세	17.2	58.6	22.0	2.2	16.8	64.2	18.1	0.9	100.0 (232)
χ^2	18.3				14.7				

구분	0~2세				3~5세				계(수)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5	60.9	18.5	1.1	17.9	66.5	15.0	0.6	100.0 (844)
외벌이	18.5	65.2	14.6	1.6	17.8	69.7	11.4	1.2	100.0 (669)
χ^2	5.5				5.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5.4	60.2	12.9	1.5	22.4	64.2	11.9	1.5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2	64.9	18.1	0.8	15.6	71.0	12.8	0.6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5	60.3	17.2	2.0	19.9	67.9	10.9	1.3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4.9	66.9	16.9	1.2	13.3	70.6	15.3	0.8	100.0 (248)
600만원 이상	20.1	61.5	17.1	1.2	18.9	65.3	15.4	0.5	100.0 (403)
χ^2	14.1				15.1				

0~2세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 차등조건 없는 12시간 무상보육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비용지원과 이에 대한 분담을 제안해야 하는 측면에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차등조건 없는 보육료 지원 정책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0~2세와 3~5세 모두 차등조건 없는 보육료 지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분석변인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 없이 보육연령, 맞벌이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모든 그룹에서도 차등조건 없는 보육료 지원 정책을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3〉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부담 의향 및 부담 수준

단위: %, 만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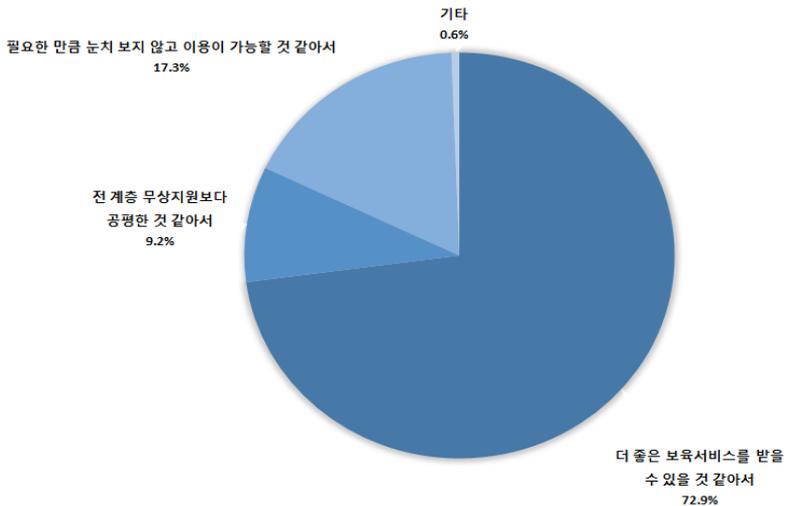
구분	부담 의향 (수)	1~4만원	5~8만원	9~12만원	13만원 이상	(수)	평균
전체	61.2 (1,513)	21.3	40.7	28.2	9.8	(926)	7.8
보육연령							
0세	64.4 (205)	11.4	38.6	37.1	12.9	(132)	8.9
1세	62.1 (277)	12.8	47.1	31.4	8.7	(172)	8.1
2세	58.6 (338)	18.7	42.4	28.3	10.6	(198)	8.0
3세	57.6 (229)	18.2	40.2	30.3	11.4	(132)	7.6
4세	59.1 (232)	35.8	35.8	18.2	10.2	(137)	8.0
5세	66.8 (232)	32.3	38.1	23.9	5.8	(155)	6.3
χ^2/F		53.4***					1.2

구분	부담 의향	(수)	1~4만원	5~8만원	9~12 만원	13만원 이상	(수)	평균
맞벌이 여부								
맞벌이	63.6	(844)	18.2	39.5	30.0	12.3	(537)	8.6
외벌이	58.1	(669)	25.4	42.4	25.7	6.4	(389)	6.7
χ^2/F			15.3**				8.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1.7	(201)	29.8	37.5	28.8	3.8	(104)	7.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8.2	(359)	25.4	45.0	23.4	6.2	(209)	6.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7.6	(302)	23.0	40.8	27.0	9.2	(174)	7.1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6.1	(248)	22.0	43.3	26.8	7.9	(164)	8.1
600만원 이상	68.2	(403)	13.5	37.1	33.1	16.4	(275)	9.3
χ^2/F			39.1***				3.1*	

*** $p < 0.001$, ** $p < 0.01$, * $p < .05$.

이처럼 차등조건 없는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 다수의 응답자가 적절한 정책 임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보육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하였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2%가 추가로 보육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을 조사되었고 평균적으로 월 최고 7만 8천 원까지는 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1] 보육료 부담 의향이 있는 이유



차등조건 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보육료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3%는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소득계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가구 소득 구간에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가장 적절한 보육료 부담 기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절한 보육료 부담 기준이란 응답이 증가하였고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이용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4-4〉 가장 적절한 보육료 부담 기준

단위: %(명)

구분	가구소득	어린이집 이용 시간	취약계층 여부	기타	계(수)
전체	21.7	63.3	13.7	1.3	100.0 (1,513)
보육연령					
0세	24.4	61.5	13.7	0.5	100.0 (205)
1세	25.6	63.2	9.7	1.4	100.0 (277)
2세	21.3	64.2	12.4	2.1	100.0 (338)
3세	19.7	66.8	12.7	0.9	100.0 (229)
4세	19.4	62.5	17.2	0.9	100.0 (232)
5세	19.8	61.2	17.7	1.3	100.0 (232)
χ^2	16.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4	63.9	13.2	1.5	100.0 (844)
외벌이	22.1	62.6	14.3	0.9	100.0 (669)
χ^2	1.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1.3	51.7	14.4	2.5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3.7	65.2	10.3	0.8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5	60.3	15.2	1.0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1.4	63.7	13.7	1.2	100.0 (248)
600만원 이상	14.1	69.5	15.1	1.2	100.0 (403)
χ^2	34.9***				

*** $p < 0.001$.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 부담액을 정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7시간의 보육시간(09:00~16:00)이 적절한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7시간의 무상지원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69.3%로 나타났고 무상지원시간이 짧다는 응답은 26%로

조사되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무상지원시간에 대해 모든 분석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육연령이 어릴수록 무상지원시간이 짧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맞벌이일수록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질문에서 결정한 7시간의 무상지원시간이 짧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IV-4-5〉 무상지원되는 기본보육시간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무상 지원 시간이 길다	무상 지원 시간이 적절하다	무상 지원 시간이 짧다	계(수)
전체	4.7	69.3	26.0	100.0 (1,513)
보육연령				
0세	5.9	65.9	28.3	100.0 (205)
1세	4.7	63.5	31.8	100.0 (277)
2세	4.4	68.0	27.5	100.0 (338)
3세	6.6	70.3	23.1	100.0 (229)
4세	3.4	73.7	22.8	100.0 (232)
5세	3.4	75.9	20.7	100.0 (232)
χ^2	1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5.3	64.8	29.9	100.0 (844)
외벌이	3.9	75.0	21.1	100.0 (669)
χ^2	18.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5	66.2	30.3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3	73.5	23.1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	68.5	26.5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	72.6	25.8	100.0 (248)
600만원 이상	8.2	65.8	26.1	100.0 (403)
χ^2	22.6**			

*** $p < 0.001$, ** $p < 0.01$, # $p < 0.1$.

7시간으로 설정한 무상지원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시간으로 적절한 수준을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평균 8.2시간으로 현재 보육지원체계 개편에서 설정한 보육료 지원시간과 동일한 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변인에 따라서는 평균 시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소득구간이 3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적정시간은 평균 8.7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4-6〉 무상지원되는 기본보육의 하루 평균 적정한 시간

단위: 시간

구분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5.2	12.7	64.0	16.8	1.3	100.0(464)	8.2
보육연령							
0세	5.7	11.4	60.0	22.9	0.0	100.0(70)	8.2
1세	5.0	13.9	64.4	15.8	1.0	100.0(101)	8.2
2세	3.7	13.0	64.8	14.8	3.7	100.0(108)	8.4
3세	5.9	16.2	57.4	20.6	0.0	100.0(68)	8.0
4세	6.6	9.8	70.5	11.5	1.6	100.0(61)	8.2
5세	5.4	10.7	67.9	16.1	0.0	100.0(56)	8.0
χ^2/F	14.4						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4	13.1	61.6	17.8	1.0	100.0(297)	8.1
외벌이	3.0	12.0	68.3	15.0	1.8	100.0(167)	8.3
χ^2/F	4.3						1.0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9	10.3	66.2	17.6	2.9	100.0(68)	8.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3	8.4	68.4	15.8	1.1	100.0(95)	8.1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3	15.8	62.1	16.8	0.0	100.0(95)	8.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	4.4	82.4	11.8	0.0	100.0(68)	8.4
600만원 이상	7.2	18.8	52.2	19.6	2.2	100.0(138)	8.0
χ^2/F	27.1*						1.3

* $p < .05$.

어린이집에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이 제한되어 연장보육 이용 금액이 부모 자부담으로 전환되더라도 연장보육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53.6%는 연장보육의 이용금액이 자부담으로 전환되더라도 연장보육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46.4%는 연장보육 미이용으로 응답하였다.

〈표 IV-4-7〉 연장보육 이용금액 자부담 전환 시 이용 여부 및 부담 의향 평균 비용

단위: %, 천원(명)

구분	연장보육 이용	연장보육 미이용	계(수)	평균 부담 비용	(수)
전체	53.6	46.4	100.0 (1,513)	86	(811)
보육연령					
0세	68.3	31.7	100.0 (205)	109	(140)
1세	55.2	44.8	100.0 (277)	91	(153)

구분	연장보육 이용	연장보육 미이용	계(수)	평균 부담 비용	(수)
2세	54.7	45.3	100.0 (338)	83	(185)
3세	48.0	52.0	100.0 (229)	77	(110)
4세	43.1	56.9	100.0 (232)	78	(100)
5세	53.0	47.0	100.0 (232)	75	(123)
χ^2/F	31.4***			6.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2.3	37.7	100.0 (844)	89	(526)
외벌이	42.6	57.4	100.0 (669)	81	(285)
χ^2/F	58.4***			2.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42.3	57.7	100.0 (201)	66	(8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3.7	56.3	100.0 (359)	81	(15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4.0	46.0	100.0 (302)	81	(163)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2.5	37.5	100.0 (248)	85	(155)
600만원 이상	62.3	37.7	100.0 (403)	101	(251)
χ^2/F	44.5***			6.7***	

*** $p < 0.001$, # $p < 0.1$.

분석변인에 따라서는 보육연령, 맞벌이 여부, 소득구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부담을 해서라도 연장보육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외벌이 가구보다는 맞벌이 가구에서 소득구간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부담으로 전환되더라도 연장보육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장보육이 자부담으로 전환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부담 가능한지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8만 6천원까지 부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변인에 따라 평균 부담비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연장보육을 이용자 부담으로 전환하더라도 연장보육을 이용 의사가 높을수록 부담할 수 있는 금액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4-8〉 기본보육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할 때의 이용 여부와 평균 희망 이용 시간

단위: %, 시간(명)

구분	비용을 내고 추가 이용	무상지원시 간만큼 이용	어린이집 미이용	자부담 가능 평균 이용시간	계(수)
전체	39.0	56.4	4.6	1.7	100.0 (1,513)
보육연령					
0세	49.3	47.8	2.9	1.5	100.0 (205)
1세	35.7	60.3	4.0	1.7	100.0 (277)
2세	36.7	57.7	5.6	1.7	100.0 (338)
3세	38.9	54.6	6.6	1.7	100.0 (229)
4세	37.1	58.2	4.7	1.7	100.0 (232)
5세	39.2	57.8	3.0	1.6	100.0 (232)
χ^2	16.3#			2.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7.4	48.5	4.2	1.6	100.0 (844)
외벌이	28.4	66.5	5.1	1.8	100.0 (669)
χ^2	56.8***			48.2***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4.9	69.7	5.5	1.8	100.0 (20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3.2	61.3	5.6	1.7	100.0 (35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6.8	58.9	4.3	1.7	100.0 (30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3.2	52.4	4.4	1.6	100.0 (248)
600만원 이상	50.4	46.2	3.5	1.5	100.0 (403)
χ^2	16.3#			10.6***	

*** $p < 0.001$, * $p < .05$, # $p < 0.1$.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고 이후 시간에 이용 자격 제한 없이 이용하는 시간만큼 현재 시간당 연장보육료 수준으로 부모가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린이집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전체의 56.4%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39.0%는 비용을 부담하고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매우 소수이긴 하나 4.6%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나타났다. 앞서 연장보육의 자부담 전환할 때의 이용 여부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어린이집 이용 여부는 보육연령, 맞벌이 여부,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연령이 낮고 맞벌이 가구이며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무상지원 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용을 내고 추가 이용할 의사

가 있는 경우 하루 몇 시간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 1.7시간까지 비용을 부담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변인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것에 비해 자부담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은 소득이 낮을수록 길게 나타났다.

V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 체계 개선방안

- 01 기본방향
- 02 모형 및 비용 추정
- 03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 개편
- 04 어린이집 비용 분담 체계 개편

V.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 체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도입되었으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육시간의 구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그동안 12시간 운영시간 안에서 모호했던 이용시간의 구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도입되는 첫해에 정책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과 이에 대한 분담 체계를 논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인 0.92명¹⁹⁾으로 떨어졌고 2020년 출생아 수는 3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국민 삶의 질에 맞추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회 통합적 접근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보육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비용지원 정책을 확대하였고 2012년 소득계층과 이용시간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지원이 도입됨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은 크게 증가하여 운영자 입장에서는 단시간 이용하는 아동을 선호하는 실수요자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후 제도 보완을 위해 2016년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였고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까지 12시간 무상보육의 틀 안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현재 어린이집의 비용지원은 인건비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 간에 차이가 있는 구조로 인건비 지원 시설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3~5세의 추가보육료가 발생

19) 통계청 보도자료(2020. 2. 26).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하지 않지만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시도마다 보육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차액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부모의 추가비용 부담은 거의 없고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영유아 부모 수요 조사 결과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이용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희망이용시간 또한 8시간 수준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보육료를 차등하는 기준으로는 60% 이상의 응답자가 이용시간을 선택하였다. 2012년 0-2세 무상보육이 도입된 이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장시간 필요한 부모를 위해 이후 제도 개편이 진행되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이런 맥락에서 장시간 이용을 원하는 아동에게는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고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고 8시간을 기본보육으로 지원하고 이후 시간에 대한 교사배치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나 외벌이 가구 특성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등지원 없이 12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일하는 부모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이 비용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부모는 8시간의 보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수요는 있으나 부모들은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50%가 넘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육 시간을 5시간으로 줄이는 상황에 대해서 약 2시간 정도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수요는 39%인 반면 5시간만 이용하겠다는 수요는 56.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보육과정 다양화에 대한 수요가 높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격 강화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선택하였다.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성과 측정이 어려운 시점으로 보육시간과 비용지원 등 현재의 체계 내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선행연구와 이용자 요구 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지원과 분담 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모형 및 비용 추정

비용지원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2020년 시작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방식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요소로 교사를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변화시켰을 때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누리과정과 오후 방과 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유치원의 운영 체계를 반영하여 보육비용을 추정하였다.

가. 단기

2018년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에서는 기존 12시간 운영시간에서 교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 30분으로 산정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8시간 운영시간에도 교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 30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이는 보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근무시간을 최대한 맞추고자 한 첫 시도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지원체계를 기준으로 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이후 중장기(안)에서 교사 배치 변화에 따른 비용 차이를 파악하고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원방식의 일부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V-2-1〉 2020년 인건비 기준 8시간 표준보육비용

단위: 원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950,000	1,043,600	1,001,200	1001,200	1,004,600	1,009,200	994,800
1세	637,500	731,100	688,600	688,700	692,100	696,700	682,300
2세	500,200	593,800	551,400	551,400	554,800	559,400	545,000
3세		439,900	397,400	397,500	400,900	405,500	391,100
4~5세		403,300	360,900	360,900	364,300	368,900	354,500

주: 박진아·유해미·최효미·김동훈·김태우·위세아·김송이·유영준(2019). 표준보육비용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산출된 항목 별 보육비용을 기준으로 2020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출함.

2019년 공표된 8시간 표준보육비용의 산출 방식을 준용하여 인건비 항목만 2020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변화를 주었고 그 외에 보육활동경비는 그대로 고정하였다. 인건비 변화로 인해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만원~2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기본보육시간을 이용하는 가구는 8시간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이후 연장보육 이용 자격 여부에 따라 연장보육 이용 시간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체계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을 산출하면 다음 <표 V-2-2>와 같다. 2020년 보육료 지원 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의 지원체계에서는 기본보육 이용 아동과 연장보육까지 이용하는 아동에게 투입되는 보육비용은 50인 정원을 기준으로 대략 0세 35만원, 1세-2세 22만원, 3~5세 9만원 차이가 있다.

<표 V-2-2> 2020년 인건비 기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12시간 표준보육비용

단위: 원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1,310,300	1,400,390	1,357,360	1,356,160	1,358,750	1,363,360	1,348,750
1세	864,100	954,190	911,060	909,960	912,550	917,160	902,550
2세	727,700	817,790	774,760	773,560	776,150	780,760	766,150
3세		530,890	487,760	486,660	489,250	493,860	479,250
4~5세		493,990	450,960	449,760	452,350	456,960	442,350

주: 박진아·유해미·최효미·김동훈·김태우·위세아·김송이·유영준(2019). 표준보육비용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산출된 항목별 보육비용을 기준으로 2020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출함.

나. 중장기

중장기적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였을 때와 유치원과 같이 4~5시간의 누리과정 담당교사와 오후 방과 후 과정 교사를 배치하는 12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담임교사 2인을 배치하는 안을 고려하였다.

1)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기본보육시간 8시간 동안 교사 1인이 보육하는 현행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의 영유아 수를 0세 1:2, 1세 1:3, 2세 1:5, 3세 1:10,

4~5세 1:15로 조정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표 V-2-3 참고).

OECD에서 발간한 Starting Strong 2017에 따르면 OECD 국가의 ECEC 기관 교직원 1인당 담당 평균 영유아는 11명, 교사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41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OECD에 보고한 교직원 1인당 평균 영유아 수는 14명이고 교사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520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근로시간이 포함된 수치로 보육교사만 집계하면 이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보다 교사의 근로시간이 긴 나라들은 교직원 1인당 영유아 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고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교직원 1인이 영유아를 담당할 경우 교사의 근무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교사 대 아동 비율보다 교사의 근로시간과 어린이집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감소하는 것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표 V-2-3〉 2020년 인건비 기준 교사대 아동비를 조정한 8시간 표준보육비용

단위: 원

	20인 (13인)	50인 (35인)	77인 (55인)	97인 (68인)	124인 (88인)	142인 (100인)	169인 (120인)
0세	1,341,900	1,478,600	1,419,200	1,424,600	1,429,100	1,436,600	1,415,700
1세	951,000	1,087,700	1,028,300	1,033,700	1,038,200	1,045,700	1,024,800
2세	634,600	771,300	711,900	717,300	721,800	729,300	708,400
3세		561,400	502,000	507,400	511,900	519,400	498,500
4~5세		485,600	426,200	431,600	436,100	443,600	422,700

주: 박진아·유해미·최효미·김동훈·김태우·위세아·김송이·유영준(2019). 표준보육비용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산출된 항목별 보육비용을 기준으로 2020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출함.

2) 유보통합을 고려한 교사 배치

마지막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적인 운영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에 각각 담임교사 1인을 배치하는 유치원의 운영체계를 가정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다음 [그림V-2-1]에서와 같이 어린이집은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

기존 07:30~19:30까지의 12시간 운영시간 안에서 교사의 휴게시간과 8시간 근로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보육시간을 9:00~16:00까지 설정하고 이후 시간

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는 것으로 개편하였으나 여전히 07:30~9:00 까지는 당번교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기본보육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간을 17:00까지로 설정함에 따라 기본보육활동을 준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 확보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의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고 재정지원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행정체계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정책 목표로 정부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있는 방식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정규담임교사 2인이 배치되는 장기(안)를 가정하여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림 V-2-1]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시간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pp. 76-77과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2020 서울 유아교육계획, p. 6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V-2-4〉 2020년 인건비 기준 담임교사 2인 배치한 12시간 표준보육비용

단위: 원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1,700,000	1,790,090	1,747,060	1,745,960	1,748,550	1,753,160	1,738,550
1세	1,097,900	1,187,990	1,144,960	1,143,860	1,146,450	1,150,960	1,136,350
2세	837,500	927,590	884,560	883,360	885,950	890,560	875,950
3세		608,790	565,760	564,560	567,150	571,760	557,150
4~5세		535,690	492,660	491,560	494,150	498,760	484,150

주: 박진아·유해미·최호미·김동훈·김태우·위세아·김송이·유영준(2019). 표준보육비용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산출된 항목별 보육비용을 기준으로 2020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출함.

3.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 개편

현재 어린이집의 비용지원 방식은 인건비 지원 기관과 미지원 기관을 구분하여 1차적으로는 인건비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미지원 기관에는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인건비와 기관보육료를 제외하고 부모 보육료 부분은 인건비 지원기관은 부모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미지원 기관의 경우 3~5세 유아는 보육료 상한액에 따라 차액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하였으나 지방 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거의 무상보육이 이루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해 8시간 기본보육시간에 대한 부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장보육시간은 이용 자격을 설정하여 연장반 전담교사와 시간당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9년 보육지원체계 시범 사업에서 연장보육시간의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부모 부담 없이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부모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절에 분담 체계 논의로 미뤄두고 현재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던 방향에서 차등 없이 비용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용 자격 여부에 따른 비용지원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영유아 부모들은 최소 8시간의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국가지원시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간만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비용지원 시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개편하기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수요자인 부모들의 반발을 감안하였을 때 현재의 지원 방식에서 장시간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취업여부와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지원 방식을 다르게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조사 결과 기본보육시간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40% 정도 기본보육시간을 지나서 하원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제 연장보육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보육이 아동의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걱정하여 기본보육시간만큼 이용하는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맞춤형보육부터 연계하여 보육지원체계 개편까지 적용되고 있는 종일제 보육의 이용 자격 여부를 이용시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와 2004년 이후의 보육실태조사 결과,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004~2009년 비용지원이 확대되기 이전에는 부모의 요구가 비용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후 전 계층 비용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는 보육의 질적 수준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의 기능을 자녀의 보호에 한정하였던 수요자의 인식이 점차 교육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과정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 배치가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선시되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과 담임교사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을 확보하고 교사 중심의 지원 방식, 기관 중심의 지원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보육사업 예산 항목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보육료 지원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교직원 지원과 특히,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배분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교사 지원 사업은 특수시책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또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점차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시점에 아동 중심의 보육료 지원 방식으로는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이루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 방식을 가구 단위의 보육료 지원 방식에서 기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4. 어린이집 비용 분담 체계 개편

중앙 정부의 보육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67% 가량 분담하고 지방정부에서 33% 분담하는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3~5세 유아의 차액보육료 지원이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기타 필요경비 또한 지역에 따라 강력한 가격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담체계 개편이라 하면 중앙과 지방의 분담체계를 예상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비용지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 배치를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교사 대 아동비율과 2명의 담임교사에 따른 보육과정 운영에 따라 2020년 인건비 기준으로 연령별 추가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이 부분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비용지원 방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무상보육 시행 이후 수요자의 요구 변화를 살펴봤을 때, 비용지원 방식을 이용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이용하는 시간만큼 부모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부모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현재 수준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보장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부에서는 지금의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기관 지원을 하고 부모에게는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 부담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보육지원체계에서의 8시간 기본보육시간을 확보해주고 이후 연장보육 이용은 자격 조건이 아닌 이용 시간으로 전환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설계한다. 현재의 보육지원체계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용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연장반 담임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구조이나 안정적인 운영과 역량 있는 교사 수급을 위해 연장반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의 연장반 교사 인건비를 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는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같은 방식의 보육과정 운영 체계로 개편하여 유아학비 지원 방식에 따른 분담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은 4~5시간의 누리과정 교육과정과 2시 이후의 방과후 과정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물론 유치원의 3~5세에게 적용되는 운영 방식을 그대로 0-2세 영아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따라 두 명의 담임교사가 배치되는 부분은 0~2세 영아의 보육과정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치원은 교육과정 시간은 누리과정 지원금 24만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7만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책정하는 원비에서 추가부담금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누리과정 지원금은 부모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나 방과후 과정 지원은 기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용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 지원에 따라 유치원 원비가 과도하게 인상되어 부모 부담금이 늘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의 지원 방식을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간을 5시간으로 설정하여 추가 배치되는 교사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부담은 부모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비용 분담에 부모 자부담을 도입하고 비용지원의 기준을 이용시간에 따라 설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보편적 지원 체계 안에서 이용시간에 따른 부모 자부담 설계가 도입된다면 정부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강원도 자체 보육사업).
- 경기도(2020). 2020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 경상남도(2020). 2020년 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경상남도).
- 경상북도(2020). 2020년 도 보육사업 안내(경상북도). 내부자료.
- 광주광역시(2020).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2020년도 市 자체 보육사업 추진계획(광주광역시).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현숙(2006).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 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 재정포럼, 119, 한국조세연구원.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숭실대학교.
- 김혜금(2010). 보육시설의 질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시설장의 인식 비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2), 135-154.
- 대구광역시(2020). 2020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대구광역시). 내부자료.
- 대전광역시(2020). 대전광역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문영경·정지나·이영(2008). 민간보육시설 이용자의 영아보육 만족도 및 요구도. 한국영유아보육학, 54, 163-187.
- 박경일·이은희·정수진(2009). 영아전담보육시설의 부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질 구성차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56, 139-168.
- 박진아(2019). 육아정책 Brief-보육교사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정책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박진아·김근진·이사라·김인경(2019). 유치원 월비 제도 개선방안. 교육부·세종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박진아·유해미·최효미·김동훈·김태우·위세아·김송이·유영준(2019).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12. 27).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7. 3).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9. 19).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b).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b).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8). 2018 지방 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 부산광역시(2020). 2020 보육사업 시행계획(부산광역시). 내부자료.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옥·백화중·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특별시(2020). 202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2020 서울 유아교육계획
- 세종특별자치시(2020). 2020년도 보육시행 계획안(세종특별자치시). 내부자료.
- 신윤정·오신휘(2017). 보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현미·박소영(2010).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울산광역시(2020). 울산광역시 2020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사항. 내부자료.

- 울산광역시(2020). 2020년도 울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내부자료.
- 유해미·강은진·권미경·박진아·김동훈·김근진·김태우·이유진·이민경(2018).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 이미화(2013). 유아교육·보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 의견 및 요구. 육아정책포럼, 38, 6-12.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인천광역시(2020). 인천광역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전라남도(2020). 2020년 어린이집 운영 도비 자체지원사업 추진계획(전라남도). 내부자료.
- 전라북도(2020). 2020년 전라북도 보육사업 지원계획.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0).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사업 예산집행 기준(도비). 내부자료.
- 최성은(2019). 보육 및 자녀양육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재정포럼, 2019(7), 10~27.
-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조미라·예한나(2018). 보육교사 휴게시간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경제인문 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2019).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충청남도(2020). 2020년 충청남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 안내. 내부자료.
- 충청북도(2020). 2020년 자체 보육사업(도비) 추진 지침.
- 통계청 보도자료(2020. 2. 26).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 Bogat, A. G., & Gensheimer, L. K.(1986). Discrepancies between the attitudes and actions of parents choosing day care, *Child Care Quarterly*, 15, 159-169.
- Ceglowski, D., Bacigalupa, C.(2002). Four Perspectives on Child Care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0, 87-92.

- European Commission(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 European Commission(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 Fuqua, R. W., & Labensohn, D.(1986). Parents as consumers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35, 295-303.
- Katz, L. (1993). Multiple perspectives on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programs. ERIC.
- Larner, M., & Phillips, D(1994). Defining and valuing quality as a parent, in P. Moss and A. Pence (Eds.), *Valu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Service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NAEYC(1982). Early childhood teacher guideline four and five years program.
- Robins, PK(1991). Childcare Policy and Research: An Economist's Perspective, In *The Economics of Childcare*, (ed.) DM Blau, NY: Russell Sage Foundation.
- Turner, P. H., & Smith, R. M.(1983). Single parents and day care. *Family Relations*, 32, 215-226.

[인터넷 자료]

- 네이버 포스트, 보건복지부, 눈치보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2019.04.09.).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045707&memberNo=31572221&vType=VERTICAL> (2020. 2. 28 인출)
- 뉴스핌, '특례업종 제외'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더 뽑는다(2018. 6. 2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21000226> (2020. 2. 28 인출)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보육료 지원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154> (2020. 10. 31 인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2016.04.25.).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014> (2020. 2. 28 인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어린이집, 어떻게 바뀌었나(2020.06.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3447> (2020. 10. 30 인출)
- 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종합)(2012. 12. 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14722> (2020. 2. 28 인출)
-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노동시간 단축,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270> (2019. 11. 25 인출)
- Helsingin Kaupunki(헬싱키 시), <http://www.hel.fi>; (2020. 11. 10 인출)
- OECD.Stat, OECD Benefits, Taxes and Wages Database, Net childcare cost for parents using childcar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NCC#> (2020. 6. 19. 인출)
- Stockholms Förskola(스톡홀름 시 preschool), <https://forskola.stockholm> (2020. 11. 10 인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정책,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EB%B3%B4%EC%9C%A1%EC%A7%80%EC%9B%90%EC%B2%B4%EA%B3%84%20%EA%B0%9C%ED%8E%B8#hong (2020. 6. 13 인출)
- 쿠키뉴스,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맞춤반/종일반 운영(2015.12.15.),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333289> (2020. 6. 21 인출)
- 한국경제, 만 0~2세 양육수당 모든 계층에 지급…보육료는 맞벌이 등 선별 지원 (2012.7.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2072244051> (2020. 6. 21 인출)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20-300호) 2020년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0-188호) 2020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결정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20-286호)2020년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20-210호)2020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91호) 2020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195호) 2020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370호) 2020년 부산광역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0-279호) 2020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0-207호) 2020년도 전라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공고.

(전라북도 공고 제2020-184호) 2020년 전라북도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충청남도 공고 제2020-138호) '20년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충청북도 공고 제2020-159호) 2020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문(안).

[법령자료]

영유아보육법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Childcare Centers' Cost Support and Sharing System

Jinah Park · Hyo Mi Choi · Yoonkyung Choi

As the reorganization of childcare support system is fully implemented in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ies related to childcare support since free childcare in 2012 and to suggest support methods and reorganization of sharing system, The study examined ways to share the burden of additional cost among the government, society, and users by reviewing childcare centers' cost support methods and considering the quality maintenance for optimal childcare activities.

To this e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hildcare cost support policies were examined along with cases of major countries. The study also analyzed changes in behaviors of parents using childcare centers and the effect of cost support methods on service use hours and satisfaction with centers based on the data from the National Childcare Survey, which was conducted 5 times from 2004 to 2018.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d a plan for reorganization of childcare centers' cost support and sharing system, collecting opinions on changes in cost support methods of childcare centers from parents who use childcare centers in 2020.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s of childcare centers and users

both have increased since 2000 and have decreased after reaching the highest point in 2013, whereas the rate of using childcare centers has constantly increased. While childcare service hours became somewhat shorter after free childcare in 2012, dual income families have wanted longer service hours, which indicates the need to continually monitor the outcome of the time extended childcare system that was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i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centers has generally improved since 2004. While the cost burden has decreased significantly, parents' deman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has increased recently.

The survey of this study also showed similar levels of the current service hours and the desired service hours, and satisfaction with childcare centers were rated above 3 out of 4-point scale. Whereas parents rated high levels of satisfaction with childcare centers, they chose diversification of childcare programs, competency enhancement of faculty, and renovation of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as areas of improvement. In addition, 61.2% of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were willing to pay additional cost up to ₩ 78,000 on average.

Incorporat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literature review, the study proposed a quality improvement model for childcare centers and estimated its cost. Based on the estimated cost, reorganization of childcare centers' cost support methods and sharing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cost support methods, the study suggested to set the government-funded service hours solely based on the hours of use without any other qualification or condition and to adopt end-user payment method for additional hours. For the sharing system, the study suggested that some expenses should be covered by parents.

Keyword: Childcare center cost support, Sharing System



어린이집 비용지원에 관한 부모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20년 기본과제로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실태와 정책 지원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보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

선문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시·도
2. ()구·군
3. ()읍면동

선문2. 귀댁에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학 전 영유아 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선문3. 귀하와 영유아 자녀와의 관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부
2. 모
3. 기타

선문4.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선문5. 귀하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4. 구직 중
5. 미취업

선문6. 귀댁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1. 미취학 자녀(2020년~2014년생) ()명
2. 취학 자녀(2013년생 이상) ()명

선문7. 귀댁의 만 0~5세 취학 전 자녀의 생년을 기입해주세요.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부터 응답해주시시오. 자녀가 하루 중 반일 이상(주5일 이용, 점심시간 포함 일 4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는 기관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생년	이용 기관 유형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4. 기관 미이용
1) 첫째 자녀	()년				
2) 둘째 자녀	()년				
3) 셋째 자녀	()년				
4) 넷째 자녀	()년				

I. 어린이집 이용 실태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자녀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문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모를 경우, 어린이집 이름 기입)

- | | | |
|---------|---------------------------------|----------|
| 1. 국공립 | 2. 사회복지법인 | 3. 법인·단체 |
| 4. 민간 | 5. 가정 | 6. 직장 |
| 7. 부모협동 | 8. 모름(기관명:) | |

문2. 귀하의 자녀는 연장보육(16:00~19:30)이나 시간연장형(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1. 연장보육(16:00~19:30) 이용
2. 시간연장형(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이용
3. 둘 다 이용하지 않음

문3. 평상시에 이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코로나 상황 이전의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각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각, 나오는 시각, 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 어린이집에서 학원 등 다른 기관으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가지 않고 집으로 하원할 때의 도착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집)출발시각	등원시각 (어린이집 도착 시각)	하원시각 (어린이집 출발 시각)	(집)도착시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문3-1. 현재 이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3-1-1로)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3-1-1로)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 한다 (→ 문4로)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3-1-2로)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3-1-2로)

문3-1-1.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용 자격 때문에
2. 더 이용하는 게 웬지 눈치가 보여서
3.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4.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5.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6.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7. 기타()

문3-1-2.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 상 일정 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해서
2. 줄어드는 시간만큼 다른 기관이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이 부담되어서
3.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4. 아이를 봐주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싶어서
6.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7. 내 개인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8. 기타()

문3-2.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기관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코로나 상황 이전의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각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각, 나오는 시각, 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출발시각	등원시각 (어린이집 도착 시각)	하원시각 (어린이집 출발 시각)	(집)도착시각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문3-2-1.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등·하원 시간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하원시간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하원()

등원()

- | | |
|------------------|-----------------------|
| 1. 부모의 출·퇴근 시간 | 2. 자녀의 생활패턴 |
| 3. 다른 자녀의 등·하원시간 | 4.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가능한 시간 |
| 5. 사교육기관 이용시간 | 6. 기타() |

문4. 어린이집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등)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이용여부		비용지불여부	
	이용	이용하지 않음	지불	지불하지 않음
1. 영어	①	②	①	②
2. 미술, 음악 등	①	②	①	②
3. 체육(동작활동)	①	②	①	②
4. 언어(한글, 한자, 제2외국어 등)	①	②	①	②
5. 수학/과학 관련	①	②	①	②
6. 기타	①	②	①	②

문5. 어린이집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등)을 하고 있다면 이용하는 특별활동 과목별로 개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항목	개수
1. 영어	()개
2. 미술, 음악 등	()개
3. 체육(동작활동)	()개
4. 언어(한글, 한자, 제2외국어 등)	()개
5. 수학/과학 관련	()개
6. 기타	()개
총 개수	()개

문6. 어린이집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등)을 하고 있다면 월평균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각 과목별로 지출하는 재료비도 포함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비용
1. 영어	월()원
2. 미술, 음악 등	월()원
3. 체육(동작활동)	월()원
4. 언어(한글, 한자, 제2외국어 등)	월()원
5. 수학/과학 관련	월()원
6. 기타	월()원
총 비용	월()원

문7. 다음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0년 기준으로 기입.

※ 정부지원금은 제외하고, 부모가 직접 지출한 비용만 기입해 주세요.

항목	비용
1.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	월()원
2. 그 밖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입학금 등)	월()원
3.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월()원
4. 어린이집 특별활동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등)	월()원
5.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비용으로 기입해 주세요)	월()원

문8.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추가비용이 가구소득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

1. 전혀 부담 안 됨
2. 별로 부담 안 됨
3. 보통
4. 조금 부담됨
5. 매우 부담됨

문9. 자녀의 어린이집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 문9-2로)
2. 만족 하는 편 (→ 문9-2로)
3. 불만족 하는 편
4. 매우 불만족

문9-1. 자녀의 어린이집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1. 보육프로그램이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2. 아이가 어린이집을 싫어해서
 3. 원하는 이용시간과 맞지 않아서
 4. 지나치게 특별활동을 권장해서
 5. 특별활동이 다양하지 못해서
 6.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7. 급간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8. 등하원이 불편해서
 9. 추가비용이 부담되어서
 10. 어린이집의 실내외 환경이 열악해서
 11. 원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2. 같은 반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있어서
 13. 특별활동이 너무 많아서
 14. 기타()

문9-2.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교직원 증원 | 2. 교직원 역량 강화 |
| 3. 실외 시설 정비 | 4. 내부 환경 개선 |
| 5. 안전관리 강화 | 6.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 7.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 | |

II 어린이집 하원 이후 개인대리양육 이용 현황

문10. 어린이집 이용시간 이외에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십니까?

1. 개인대리양육 이용
2. 개인대리양육 이용 안 함(부모 직접 돌봄) (→ 문14로)

문11.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한 명 이상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 2. 민간 육아돌보미 |
| 3. 조부모 돌봄 | 4.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
| 5. 기타() | |

문11-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이용하는 시간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부모 출근 후 ~ 등원 전
2. 하원 후 ~ 부모 퇴근 전
3. 부모 출근 후~ 등원 전, 하원 후 ~ 부모 퇴근 전
4. 필요할 때마다
5. 주말
6. 기타()

문11-2. 민간 육아돌보미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이용하는 시간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부모 출근 후 ~ 등원 전
2. 하원 후 ~ 부모 퇴근 전
3. 부모 출근 후~ 등원 전, 하원 후 ~ 부모 퇴근 전
4. 필요할 때마다
5. 주말
6. 기타()

문11-3. 조부모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이용하는 시간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부모 출근 후 ~ 등원 전
2. 하원 후 ~ 부모 퇴근 전
3. 부모 출근 후~ 등원 전, 하원 후 ~ 부모 퇴근 전
4. 필요할 때마다
5. 주말
6. 기타()

문11-4. 조부모 외 친인척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이용하는 시간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부모 출근 후 ~ 등원 전
2. 하원 후 ~ 부모 퇴근 전
3. 부모 출근 후~ 등원 전, 하원 후 ~ 부모 퇴근 전
4. 필요할 때마다
5. 주말
6. 기타()

문11-5. 기타 인력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이용하는 시간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부모 출근 후 ~ 등원 전
2. 하원 후 ~ 부모 퇴근 전
3. 부모 출근 후~ 등원 전, 하원 후 ~ 부모 퇴근 전
4. 필요할 때마다
5. 주말
6. 기타()

문12. 개인대리양육의 1주일 기준 이용횟수와 주당 총 이용시간은 어떠한가요? 개인대리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주당 ()회	주당 평균()시간	월 평균()원
2. 민간 육아돌보미	주당 ()회	주당 평균()시간	월 평균()원
3. 조부모 돌봄	주당 ()회	주당 평균()시간	월 평균()원
4.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주당 ()회	주당 평균()시간	월 평균()원
5. 기타()	주당 ()회	주당 평균()시간	월 평균()원

문13. 어린이집과 개인대리양육을 함께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린이집 이용시간 이외에 추가 돌봄이 필요해서
2. 아이연령이 어려서 가정보육의 형태로 병행하길 원해서
3.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4. 형제와 함께 돌보는 것이 어려워서
5. 기타()

Ⅲ. 보육의 질

문14.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1. 운영시간 (→ 문 14-1로)
2. 접근성 (→ 문 14-2로)
3. 보육의 질 (→ 문 14-3로)
4. 보육프로그램 (→ 문 14-4로)
5. 비용 (→ 문 14-5로)
6. 운영주체(국공립 여부)
7. 인지도 및 주위의 평판
8. 기타()

문14-1.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주로 어떤 사항을 고려하십니까?

1. 등원시간
2. 하원시간(19:30)까지 이용
3. 시간연장(22:00)까지 이용
4. 기타()

문14-2.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집과의 거리
2. 차량운행 여부
3. 형제재원 여부
4. 기타()

문14-3.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사항을 가장 고려하십니까?

1. 원장의 자질
2. 교사 자격
3. 교사 경력
4. 건강과 안전
5. 급간식의 질
6.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
7. 교사 대 아동비율
8. 기타()

문14-4.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 보육활동의 차별성
2. 보육과정의 체계성
3. 교재교구의 다양성
4.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5. 기타()

문14-5. 비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 부모 부담 기본보육료 여부
2. 특별활동비 부담 수준
3. 입학금
4.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등 부대비용
5. 기타()

문15.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사 자격 강화
2. 보육프로그램 충실화
3. 평가인증을 통한 관리 강화
4.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
5. 어린이집 안전 강화
6.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 개선
7. 교사 대 아동 비율
8. 기타()

문16. 담임교사가 갖추어야하는 사항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학력이 높은 교사
2. 경력이 많은 교사
3. 자녀를 키워본 경험 있는 교사
4. 온정적, 인내심이 많은 교사
5. 아동과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6. 보육 지식이 높은 교사
7. 부모와 소통이 원활한 교사
8. 기타()

[교사 대 아동 규정]

교사 1명 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5세 20명

문17.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의 교사 1명당 아동 수에 대한 현재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 대 아동 수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절하다	④ 적은 편이다	⑤ 매우 적다
0세					
1세					
2세					
3세					
4-5세					

문18.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 자녀의 담임교사가 연령에 따라 최대 몇 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5세반
교사 : 아동	1 : ()	1 : ()	1 : ()	1 : ()	1 : ()

문19. 담임교사가 현행 규정보다 적은 수의 아동을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담임교사가 적은 수의 아동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IV. 보육지원체계 이용 및 인식

문20.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12시간(07:30~19:30) 운영 원칙은 유지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0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 2개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각 보육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하는 것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잘 알고 있음
2. 대충 알고 있음
3. 들어본 적 있음 (→ 문21로)
4. 전혀 모름 (→ 문21로)

문20-1. 연장보육(16:00~19:30)을 이용하려면, 다음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 |
|---------------------|--------------|
| ① 취업 | ② 구직 및 취업준비 |
| ③ 장애 | ④ 다자녀 가구 |
| ⑤ 임신·유산 | ⑥ 한부모/조손가구 |
| ⑦ 입원·간병 | ⑧ 학업 |
| ⑨ 장기부채 | ⑩ 저소득층/다문화가정 |
| ⑪ 기타사유(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 |

1. 잘 알고 있음
2. 대략 알고 있음
3. 들어본 적 있음
4. 전혀 모름

문21. 귀하의 자녀는 다음의 연장보육 이용 자격 중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취업 | 2. 구직 및 취업준비 |
| 3. 장애 | 4. 다자녀 가구 |
| 5. 임신·유산 | 6. 한부모/조손가구 |
| 7. 입원·간병 | 8. 학업 |
| 9. 장기부재 | 10. 저소득층/다문화가정 |
| 11 기타() | 12. 해당하는 자격 없음 (→ 문23로) |

문22. 귀하께서는 연장보육 이용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아이연령이 어려서 가정보육의 형태로 병행하길 원해서
2. 하원시간 이후에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3. 교사가 바뀌는 것에 아이가 적응하지 못해서
4.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5. 기타()

문23.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충분하십니까?

1. 매우 충분하다
2. 충분한 편이다
3. 부족한 편이다
4. 매우 부족하다

문23-1. (기본보육 이용자) 부모님의 사정으로 자녀가 평소 어린이집 이용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1. 월 1회 이하
2. 월 2~4회
3. 주 1회
4. 주 2~4회
5. 매일
6. 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문24.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9:00~16:00)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
2. 찬성하는 편
3. 반대하는 편 (→ 문24-2로)
4. 매우 반대 (→ 문24-2로)

문24-1. 찬성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장시간 보육이 줄어들어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2. 어차피 16시 이후로는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이 많지 않았으므로
3.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 예전보다 더 당당하게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어져서
5. 예전보다 지원수준이 더 확대되었다고 느껴져서
6. 기타 ()

문24-2. 반대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실질적으로 연장보육 이용이 어려워져 돌봄 공백이 발생할까봐
2. 연장보육에 남게 되는 아이가 적어서, 아이가 싫어할까봐
3. 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4. 추가적인 다른 육아서비스 이용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서
5. 어린이집에 과다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6.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까봐
7. 기타 ()

연장보육 지원 사항

○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반이 구성되고,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갖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장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수당포함 1,112천원) 지원

○ 연장보육료

구분	0세반·장애반	영아반	유아반
시간당 지원 단가	3,000원	2,000원	1,000원

문25. 연장보육을 지원하는 시간당 지원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절
2. 적절
3. 부적절 (→ 문 25-1로)
4. 매우 부적절 (→ 문 25-1로)

문25-1. 질 높은 연장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시간당 지원 단가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0세반·장애반	영아반	유아반
시간당 지원 단가	()원	()원	()원

문26. 0-2세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각의 연장보육 자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장보육 필요 사유			①매우적절	② 적절	③부적절	④ 매우부적절	
대분류	중분류	세부구분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에 한정)						
구직/취업준비	구직/취업준비	구직급여수급자					
		직업훈련					
		구직등록					
		구직자					
돌봄필요	장애	아동의 부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다자녀						
	임신·유산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입원·간병	아동의 형제 자매	조부모				
			부모				
			재학				
	학업	학위과정					
장기부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타(연장보육 신청사유서)							

문27. 연장보육 시간에는 장시간 기관에 머무르는 영유아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놀이와 쉬 중심으로 보육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처럼 연장보육 시간에 쉬와 놀이 위주의 보육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절
2. 적절
3. 부적절 (→ 문27-1로)
4. 매우 부적절 (→ 문27-1로)

문27-1. 귀하께서는 연장보육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28. 연장보육을 한 달의 20일 기준으로 매일 19:30까지 이용하면 지원되는 보육료는 0세 15만원, 영아반 10만원, 유아반 5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투입되어야하는 재정이 제한되어 연장보육 이용 금액이 부모 자부담으로 전환되더라도 연장보육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연장보육 이용 (→ 문28-1로)
2.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겠다.

문28-1. 연장보육 이용 금액이 부모 자부담으로 전환되면 얼마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연장보육을 한 달의 20일 기준으로 매일 19:30까지 이용하면, 지원되는 보육료는 0세 15만원, 영아반 10만원, 유아반 5만원입니다.

연장보육 이용 부모 부담 보육료 월 ()만원까지 부담

문29.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고 이후 시간에 이용 자격의 제한 없이 이용하는 시간만큼 현재 시간당 연장보육료 수준으로 부모가 부담한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현재 연장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0세반 및 장애아 3천원, 영아(1~2세) 2천원, 유아(3~5세) 1천원입니다.

1. 비용을 내고 추가로 이용하겠다.
2. 무상지원시간만큼 이용 하겠다 (→ 문30로)
3.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겠다 (→ 문30로)

문29-1.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고 이후 시간에 이용 자격의 제한 없이 이용하는 시간만큼 현재 시간당 연장보육료 수준으로 부모가 부담한다면 몇 시간 이용하고 싶습니까?

※ 현재 연장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0세반 및 장애아 3천원, 영아(1~2세) 2천원, 유아(3~5세) 1천원입니다.

1일 추가 ()시간까지 부담하여 어린이집을 이용

문30. 기본보육시간은 7시간으로 설정되어있지만 보육료는 전이시간을 고려하여 17:00까지 지급하고 연장보육시간은 16:00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이 현재와 같이 한 시간 겹쳐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네 (→ 문31로)
2. 아니오

문30-1. 연장보육반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어린이집을 고려하여 현재 한 시간 겹쳐지는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을 최소화한다면 얼마나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

문31. 2020년 이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셨습니까?

1. 네 (→ 문32로)
2. 아니오

문32.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9:00~16:00)과 연장보육시간(16:00~19:30)이 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1. 이용시간을 많이 단축하였음
2. 이용시간을 조금 단축하였음
3. 변화없음
4. 이용시간을 조금 연장하였음
5. 이용시간을 많이 연장하였음

문33.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 도입 이후, 보육의 질적 수준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질적 수준이 좋아짐
2. 변화없음
3. 질적 수준이 나빠짐

문34.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과 비교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V. 보육비용 정책 평가 및 요구

2020년 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계	970,000	686,000	527,000	240,000
부모보육료	470,000	414,000	343,000	240,000
기관보육료	500,000	272,000	184,000	-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시 지원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문35. 귀하는 2020년 정부에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비하여 보육서비스와 환경의 질적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적절	② 적절	③ 부적절	④ 매우부적절
1. 교사 수				
2. 교사의 자격 및 자질				
3. 보육활동				
4. 교재교구 및 장비				
5. 급간식				
6. 어린이집 보조인력 수				
7. 건강 및 안전관리				
8. 실내·외 환경				

문36. 정부는 2013년부터 0~5세 보육료 지원 단가 전액을 차등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조건 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적절	② 적절	③ 부적절	④ 매우부적절
1. 0~2세 영아				
2. 3~5세 유아				

문37. 귀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질 제고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보육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 문37-3으로)

문37-1. 질 높은 보육을 위해 보육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면 월 최고 얼마까지 추가로 부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현재보다 추가로 월 최고()만원까지 부담 가능

문37-2. 보육료를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 전 계층 무상지원보다 공평한 것 같아서
3. 필요한 만큼 눈치 보지 않고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4. 기타()

문37-3. 보육료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다음 중 어떤 기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구소득
2. 어린이집 이용 시간
3. 취약계층 여부
4. 기타()

문37-4.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 부담액을 정한다면 국가에서 모두에게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시간으로 기본보육시간(09:00~16:00)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무상 지원 시간이 길다
2. 무상 지원 시간이 적절하다(→ 문38로)
3. 무상 지원 시간이 짧다

문37-5.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시간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취학 전까지 10~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38.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취학 전 아동의 어느 연령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1세(만0세) 까지 | 2. 2세(만1세) 까지 |
| 3. 3세(만2세) 까지 | 4. 4세(만3세) 까지 |
| 5. 5세(만4세) 까지 | 6. 6세(만5세) 까지 |

문39. 귀하는 양육수당이 현재보다 늘어날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0세 (~11개월) - 현재 20만원		
1세 (12~23개월) - 현재 15만원		
2세 (24~35개월) - 현재 10만원		
3~5세 (36~72개월) - 현재 10만원		

문40. 의향이 있으신 경우 양육수당으로 받으실 월 최소 금액에 대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시기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양육수당으로 수령할 월 최소 금액
0세 (~11개월) - 현재 20만원	월()만원
1세 (12~23개월) - 현재 15만원	월()만원
2세 (24~35개월) - 현재 10만원	월()만원
3~5세 (36~72개월) - 현재 10만원	월()만원

VI. 가구 특성 및 경제활동

배문1. 귀댁의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 등에 관해 응답해주시시오.

	본인	배우자
1.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2. 최종학력 ※ 수료, 중퇴, 재학/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분류해주시시오.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3. 취업여부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본인	배우자
	4. 구직 중 5. 미취업	4. 구직 중 5. 미취업
4. 직업군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5. 근로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6. 평일 출근시간 ※ 24시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교대제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다른 경우, 가장 최근의 평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출퇴근을 하지 않는 경우, 일을 시작하는 시각과 마치는 시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시 분	시 분
7. 평일 퇴근시간 ※ 24시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교대제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다른 경우, 가장 최근의 평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출퇴근을 하지 않는 경우, 일을 시작하는 시각과 마치는 시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당일) 시 분 (익일) 시 분	(당일) 시 분 (익일) 시 분
8. 1주일 당 평균 근로시간 ※ 출퇴근, 휴식시간 제외하고 기록	주당 평균 () 시간	주당 평균 () 시간

배문2. 귀댁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세후소득)을 기입해주시시오.

구분	가구 전체 소득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1. 가구 소득	만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사적 이전 소득, 기타 소득 등
2. 양육 관련 공적이전소득	만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료, 출산장려금 등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90 485678
ISBN 979-11-90485-67-8